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서울역사편찬원 공동학술대회

수도와 지역의 상호인식

-중심과 지역의 길항-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 27일(토)

장소 전남대 김남주기념홀

주최 전남대 역사문화연구센터·서울역사편찬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동의없이 가공 및 전재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1일차

13:30~13:40	개회사: 박상철(역사문화연구센터 센터장)
13:40~13:50	인사말: 이상배(서울역사편찬원 원장)
제1부 사회: 김봉국(전남대)	
13:50~14:30	1주제: 조선후기 各道の 薦新進上과 그 禮獻의 의미 발표: 신진혜(광주과학기술원) / 토론: 김웅호(서울역사편찬원)
14:30~15:10	2주제: 대한제국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본 서울과 전남 발표: 윤선자(전남대) / 토론: 이정선(조선대)
15:10~15:50	3주제: 서울 '외곽지역'의 도시개발과 변화(1960~1990) - 도봉구의 준공업지역 형성에서 탈공업화 사업까지 발표: 김태운(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토론: 서준석(서울역사편찬원)
15:50~16:10	휴식
제2부 사회: 김효진(전남대)	
16:10~16:50	4주제: 프랑스혁명 이후 툴루즈의 '박물관화' 과정 - 본보기 또는 경쟁의 대상로서의 수도 발표: 김한결(전남대) / 토론: 김대보(원광대)
16:50~17:30	5주제: 독일제국에서 중앙과 지역의 형성 과정(1810~1871) - 관세정책을 통한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형성과 작센의 지역화 발표: 박상욱(부산가톨릭대) / 토론: 정용숙(춘천교대)
17:30~17:40	폐회사: 박상철(역사문화연구센터 센터장)

2일차

10:00~12:00	특강: 조선후기 호남과 중앙 지식인의 교류 동인 발표: 김창수(전남대)
-------------	---

목차

1주제

조선후기 각도의 천신진상과 그 예현의 의미 (신진혜).....	1
토론문 (김응호).....	19

2주제

대한제국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본 서울 (윤선자).....	21
토론문 (이정선).....	44

3주제

서울 '외곽지역'의 도시개발과 변화(1960~1990) (김태운) : 도봉구의 준공업지역 형성에서 탈공업화 사업까지.....	47
토론문 (서준석).....	62

4주제

프랑스혁명 이후 툴루즈의 '박물관화' 과정 (김한결) : 본보기 또는 경쟁의 대상로서의 수도.....	65
토론문 (김대보).....	79

5주제

독일제국에서 중앙과 지역의 형성 과정(1810-1871) (박상욱) : 관세정책을 통한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형성과 작센의 지역화	83
토론문 (정용숙).....	99

조선후기 各道の 薦新進上과 그 禮獻의 의미

신진혜 (광주과학기술원)

1. 서론
2. 천신 진상의 지역별 분정
3. 천신 진상의 봉진과 의례의 시행
4. 결론

1. 서론

고대 중국의 역사지리서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尙書』 「夏書」의 ‘禹貢’편은 중국의 제국적 구조를 알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하서」 서문에서는 ‘우 임금이 9주를 구별해서 산을 따라 하천을 준설하고 토산에 맞게 공물을 바치게 했다[禹別九州, 隨山浚川, 任土作貢]’고 언급하고 있는데, ‘임토작공’이 유교국가 공물제도의 근본 개념을 제시한다. 조선시대 進上과 貢物의 기원 역시 임토작공의 원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각 군현의 전결 및 민호수, 토산물을 기반으로 貢案이 작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납과 진상이 구성되었다.¹⁾ 유교 사상적 특징을 보여주는 경제체제였던 공물과 진상은 조선시대 국가 재정의 약 60%를 차지했다.²⁾ 하지만 당시의 제도는 해당 지역에서 물품이 생산되지 않아 상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방납으로 인해 폐단이 일어나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였고, 결국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정식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³⁾

본 연구에서 검토할 왕실의 ‘薦新’에 사용되는 물품 역시 생산되는 시기에 맞추어 정해진 물품을 열두 달에 맞추어 진상물품으로 봉진되었다. 천신은 계절에 생산된 음식물을 먹기 전에 조상께 바침으로써 孝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였는데, 이는 사대부 가문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시행되었다. 조상을 섬긴다는 효의 의미는 왕실이나 일반 가문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왕실에서는 천신에 쓰이는 계절산물인 時物을 전국 각지 백성들의 進上·貢納으로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沃土에 기반한 任土作貢의 성격까지 포괄하였다.⁴⁾ 종묘에서 시행되었던 천신 의례의 절차는 『世宗實錄』 「五禮」를 거쳐 최종적으로 『國朝五

1) 공물과 진상의 이념적 구분에 대한 연구 및 진상의 종류를 정리한 것은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田川孝三, 「李朝貢納考」,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 德成外志子, 「朝鮮王朝後期の國家財政と貢物·進上」, 『朝鮮學報』 173, 1999.
2) 德成外志子,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34쪽.
3) 임진전쟁을 겪은 이후 이미 관행화되었던 ‘사대동’을 일률적 부세제도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것이 대동법 시행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1985, 211~214쪽.
4) 변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진혜, 「조선시대 宗廟의 薦新 進上과 儀節」, 『민족문화연구』 86, 2020.

禮儀』에 수록되었는데, 공식적으로 의주가 수록된 것은 종묘에 대한 것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선 전기의 문소전, 조선 후기의 조경묘, 경모궁 등에서 시행되었으며, 국상 중에는 빈전·훈전 그리고 산릉에서도 시행되었다. 천신은 국왕이 직접 시행하는 의식은 아니었지만, 국왕이 다스리는 각 지역에서 바친 진상을 조상께 바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식이었다.

천신진상은 각 도에서 백성과 道臣에 의해 준비되는 단계를 거쳐, 왕실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종묘에 진설하여 행례하는 단계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월별 종묘 천신물목의 종류가 대폭 조율되었고, 진상과 공납에 대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조달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 천신 의식은 다른 의례에 비해 물품의 준비와 조달, 점검의 과정이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의례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해서까지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종묘 천신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천신의 대략적 특징이 검토된 바 있으나,⁵⁾ 조선 후기에 이르러 천신진상 물품이 지역별로 어떻게 분정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진상되었는지에 관한 면밀한 분석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 조선 전기의 진상·공납 제도, 그리고 대동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천신제향 물목을 일부 검토한 연구는 제시된 바 있으며,⁶⁾ 지역별 특색에 따라 운영되었던 대동법에 관한 연구 역시 이미 진척을 이루었다.⁷⁾ 하지만 진상·공납 물품이 왕실에 납부된 이후 해당 물품이 사용·소비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천신진상을 준비하고 종묘 천신이라는 왕실의례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이 전국 각도→정부→종묘로 이어지는 공간적 변화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백성→각도 도신→왕실 정부의 손길을 거쳐 시행된다는 사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왕실의례가 단순히 왕실과 정부의 상징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례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에는 여러 신하뿐

5)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식품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2(6), 2002a;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의례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2(6), 2002b; 한형주·김상보,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4; 신명호, 「융희연간 享祀釐正과 薦新進上廢止」, 『동북아문화연구』 27, 2011; 신진혜, 위의 논문, 2020.

6) 이욱, 「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 『탐라문화』 33, 2008; 이욱, 「18세기 제주의 진상제(進上制)와 상품유통」, 『한국사연구』 186, 2019; 전상욱, 「18세기 전반 물선진상 관련 자료 분석 - 『진상별단등록』을 중심으로 -」, 『문화재』 47(4), 2014; 최주희, 「대동법 시행기 進上制의 정비와 영조대 초반 『進上別單臚錄』의 작성」, 『韓國史學報』 86, 2022.

7) 공납·진상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왕실 재정의 양상을 검토한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德成外志子, 「朝鮮王朝後期の國家財政と貢物·進上」, 『朝鮮學報』 173, 1999; 德成外志子,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2001,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납제도의 개혁과 대동법의 시행이 구체화되는 과정, 그리고 선혜청의 운영양상을 검토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1985;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최주희,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그리고 대동법은 각 도별 특징에 맞추어 운영되었고, 시행된 시기도 도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각도별 대동법의 구축과 시행 과정을 정리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영국, 「湖南에 實施된 大同性」 上·二·三·四 『歷史學報』 15:20·21·24, 1961·1963·1964; 한영국, 「湖西에 實施된 大同性」 上·下 『歷史學報』 13·14, 1960·1961; 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 연구』, 민속원, 2019; 전상욱, 『조선후기 강원도지역의 공납제 개혁과 대동·상정법 시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엄기석, 『조선후기 황해도 상정법의 시행과 지방재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만 아니라 백성의 손길까지 닿아있었다는 측면을 검토해봄으로써 중앙정부·왕실과 각도의 지역이 어떻게 왕실의례와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 초엽에 정비되었던 월별 천신물품이 조선후기에 재정리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천신물품의 각 지역별 분정 현황을 정리하여 입토작공의 원리가 지역별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준비된 예헌의 물품을 통해 종묘 천신의례가 구현되는 양상을 정리함으로써 왕실의례의 구현이 전국 각도 지역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지역별 천신진상 물품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薦新進上膳錄』(奎12913)·『忠淸道大同事目』(奎1594)·『全南道大同事目』(奎1556)·『宗廟儀軌』(奎14220)·『宗廟儀軌續錄』(장K2-2203)·『備邊司膳錄』·『每事問』(奎5120-147)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왕실과 정부의 소관이라 여겨져왔던 왕실의례의 시행에 전국 각도 백성들의 손길도 분명 닿아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천신 진상의 지역별 분정

조선 초엽 진상제도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윤곽이 드러난 바 있다.⁸⁾ 조선 후기의 진상물목은 『萬機要覽』이나⁹⁾ 『六典條例』·『宣惠廳定例』·『度支定例』를 통해 物膳·方物 [皮物·軍器·扇子·日用小品]·祭享薦新·藥材·鷹子 등의 항목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物膳은 왕실에 바치는 식료품으로, 물선진상은 進膳이라고도 하는데 別進上物膳, 無時進上 또는 別膳·別饌으로도 지칭되었다. 이러한 물선진상의 대상은 국왕·왕비·왕세자는 물론이고, 선대조의 왕비가 살아있는 경우에도 같은 형태로 행해졌다.¹⁰⁾ 제향이나 천신과 관련된 진상물목 역시 여러 대동사목류나 사례류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일부의 품목명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 진상물목 가운데 제향·천신물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상징성이나 목적적 측면에서는 다른 진상물목에 비해 중요도가 높았다.

임진전쟁이 발생하여 종묘·사직의 신주와 위판을 가지고 파천 중일 때에도 천신은 지속되었다. 예를 갖추기 위한 물력과 인력이 부족했고 의례 시행에 관련된 典籍과 膳錄이 모두 소실된 상황임에도 새로운 음식물[新物]이나 계절 산물[時物]을 얻게되면 역대조께 바치려 노력하였다.¹¹⁾ 전란 이후 천신 의례의 시행은 점차 복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동법과 같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대동법은 토지를 중심으로 공물가를 설정하여 수취하고, 이를 공인에게 지급하여 왕실과 정부에 필요한 물자를 賈納하도록 하는 제도였다. 여전히 지역별 특징에 따라 현물로 봉진해야하는 품목들이 남아있었지만 무납이 공식화된 것은 큰 변화였다.¹²⁾

8) 田川孝三, 1964, 「進上考」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9) 『萬機要覽』 「財用編」 1, '供上', 大殿; 中宮殿; 王大妃殿; 惠慶宮; 嘉順宮.

10) 다음 연구를 참조하였다. 田川孝三, 1964, 「進上考」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德成外志子, 2001,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3~51쪽.

11) 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신진혜,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240, 2018, 385~389쪽.

12)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상당수의 진상품이 현물 봉진의 성격을 띠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다

종묘 천신물품은 1년 12개월에 각각 바쳐야 할 물품이 지정되어 있었고, 이는 각 官署에서 봉진하는 것과 각 도에서 백성들이 봉진하는 것[外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³⁾ 백성들이 봉진하는 외공의 물품 일부는 米價 형식으로 각 도에 분정되었다. 대동법은 거둬들이는 미포를 선혜청에서 공물주인에게 급가하여 봉진하게 하였던 것은 물론이고, 생산이 중단된 물종이나 계절이 일러 생산되지 않는 물종은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칠 수 있다는 ‘代捧’, 정해진 시기보다 나중에 바칠 수 있다는 ‘退捧’을 명료하게 정식화했다.

종묘 천신에 쓰는 물품의 일부는 현물봉진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납·대봉·퇴봉을 허락하였다. 『호서대동사목』 2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묘 천신에 쓰는 大麥과 小麥, 生菟는 값을 받아 봉진했음을 알 수 있다.¹⁴⁾ 대동법으로 인해 천신물의 봉진시기를 제때 맞추는 일이 용이해졌다. 黍·稷·早稻와 같은 물품을 철이 지나고서야 종묘에 천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대동법을 바탕으로 값을 거두어 상납하고 선혜청에서 구매하게 함으로써 제때 봉진할 수 있었다.¹⁵⁾ 비록 지역 생산품을 현물로 직접 봉진한다는 본래 원칙에서는 멀어졌지만 무납·대봉·퇴봉의 방식을 통해 임토작공의 형식을 유지하려했던 것이다.

봉진 방법뿐만 아니라 천신월령 역시 조정되었다. 조선 초엽에 이미 월별 천신물목이 규정되었지만, 효종 4년(1653)에 각전의 봉진과 종묘 천신 월령을 개정하였다.¹⁶⁾ 정해진 월령에 비해 물품이 빨리 봉진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봉진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정된 천신월령은 숙종 32년(1706) 성립된 『宗廟儀軌』로 확인할 수 있다. 『종묘의궤』의 천신월령 물품 종류는 조선 초엽에 정비된 『국조오례의』의 천신 월령과는 봉진시기나 물품의 양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변화상을 확인하기 위해 성종대의 『국조오례의』, 숙종대의 『종묘의궤』, 정조대의 『春官通考』에 수록된 월령 천신 물품의 변천 과정을 표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⁷⁾

	『國朝五禮儀』		『宗廟儀軌』		『春官通考』	
1월 孟春	靑魚	1	早藿	1	早藿	1
2월 仲春	氷, 松魚	2	氷, 松魚, 生鰾, 雀舌茶, 半乾雉, 生蛤, 絡蹄, 水芹	8	氷, 松魚, 生鰾, 雀舌茶, 半乾雉, 生蛤, 絡蹄, 水芹	8
3월 季春	蕨	1	蕨菜, 靑橘, 辛甘菜, 黃石魚, 生石魚, 訥魚, 葦魚	7	蕨菜, 靑橘, 辛甘菜, 黃石魚, 生石魚, 訥魚, 葦魚	7
4월 孟夏	筍	1	竹筍, 眞魚, 烏賊魚	3	竹筍, 眞魚, 烏賊魚	3
5월	大麥, 小麥, 瓜, 櫻桃, 杏	5	黃杏, 櫻桃, 茄子, 大麥, 小麥	5	黃杏, 櫻桃, 茄子, 大麥, 小麥	5

음을 참조할 수 있다. 전상욱, 「『輿地圖書』에 나타난 進上 관련 조항의 분석」, 『문화재』 44(3), 2011.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경상도의 경우, 각사의 紫硯石·礪石과 席子, 烏海藻 등이 현물공납으로 존치되었는데, 경상도에서 생산되는 해당 물품의 품질이 우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광균, 「영남대동법 시행 초기 지방재정의 개편과 그 성격」, 『韓國史研究』 161, 2013, 178쪽.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 굴 종류의 진상은 대부분 현물봉진이 유지되었다.

- 13) 『薦新進上臚錄』(장K2-2577) : 『每事問』.
 14) 『忠淸道大同事目』(奎1594) : 이정철, 『대동법-조선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508~527쪽.
 15) 『備邊司臚錄』 25冊, 顯宗 6年 9月 6日.
 16) 『孝宗實錄』 卷10, 孝宗 4年 5月 25日 庚寅. 신진혜, 위의 논문, 2020, 48~54쪽.
 17) 『國朝五禮儀』, 『宗廟儀軌』(奎14220), 『春官通考』(奎12272)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볼드체는 이전 시기와 달라진 물품을 표기한 것이다.

仲夏					
6월 季夏	稻, 黍, 稷, 粟, 茄子, 冬瓜, 林檎	7	稷米, 黍米, 粟米, 稻米, 林檎, 銀口魚, 茄子, 冬瓜, 西果, 眞果, 李實	11	稷米, 黍米, 粟米, 稻米, 林檎, 銀口魚, 茄子, 冬瓜, 西果, 眞果, 李實
7월 孟秋	鯉魚, 梨	2	鯉魚, 生梨, 蓮實, 榛子, 柏子, 胡桃, 青葡萄	7	鯉魚, 生梨, 蓮實, 榛子, 柏子, 胡桃, 青葡萄
8월 仲秋	柿, 棗, 栗, 新酒	4	紅柿子, 新清酒, 大棗, 生栗, 松茸, 鮓魚, 生蟹	7	紅柿子, 新清酒, 大棗, 生栗, 松茸, 鮓魚, 生蟹
9월 季秋	雁	1	生雁, 石榴, 山葡萄, 獼猴桃	4	生雁, 石榴, 山葡萄, 獼猴桃
10월 孟冬	橘, 柑, 薦禽[蒐射所獲禽獸]	3	柑子, 金橘, 柚子, 薯蕷, 文魚, 銀杏, 薦禽, 乾柿子, 大口魚, 銀魚	10	柑子, 金橘, 柚子, 薯蕷, 文魚, 銀杏, 乾柿子, 大口魚, 銀魚
11월 仲冬	天鵝, 瓜魚	2	白魚, 瓜魚, 青魚, 天鵝, 唐柚子	5	白魚, 瓜魚, 青魚, 天鵝
12월 季冬	魚, 兎	2	洞庭橘, 乳柑, 秀魚, 生兔	4	唐柚子, 洞庭橘, 乳柑, 秀魚, 生兔
총계	33종		72종		71종

<표 1> 薦新月令 物品 변천과정

위의 비교표를 통해 33종으로 정리되었던 성종대 『국조오례의』의 천신물종에 비해 숙종 32년에 정리된 『종묘의궤』에서는 72종으로 증가했다. 『종묘의궤』의 천신품목은 정조대의 『춘관통고』에도 거의 유사하게 수록되었지만, 『춘관통고』 단계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냥 관련 물품인 10월령의 薦禽 항목이 제외되면서 사냥에 관한 것은 모두 사라진 것, 11월령의 唐柚子가 12월령으로 옮겨진 것이 특징이다. 이렇듯 정조대에도 약간의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적 정리는 숙종대에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종대의 『국조오례의』와 숙종대의 『종묘의궤』 천신물목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던 別進上 및 소실된 문소전의 천신월령 일부가 종묘 천신월령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실록에서는 『국조오례의』에 정리된 종묘천신월령 이외의 물품이 천신되었던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는 문소전과 혼전에 천신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물품이 임진전쟁 때 소실된 문소전이 재건되지 않으면서 종묘천신월령으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¹⁸⁾

다음으로 조선후기 당대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에 정해졌던 천신월령 봉납시기에 비해 물품이 빨리 봉진되는 경우도 있었기에 물품을 바치는 시기 자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¹⁹⁾ 그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이르러 왕실과 조정에서 소모하는 물품의 종류가 증가하여 이를 종묘의 역대조에게 천신할 필요가 생기면서 지정물목이 증가했다. 예를 들면, 호서 지역에 배정된 朔膳·節産進上 품목들인 生鰕·黃石首魚·松茸은 각각 『종묘의궤』의 2월령, 3월령, 8월령 천신물목으로 배정되었는데, 이것은 朔膳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역대조께 먼저 천신해야 효를 다한 것이라는 원칙 때문에 천신물목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²⁰⁾

조선전기에 지정되었던 종묘 천신 시물은 유교경전에서부터 유래된 大麥·小麥, 稻, 黍, 稷

18) 신진혜, 위의 논문, 2020, 48~54쪽.

19) 『孝宗實錄』 卷10, 孝宗 4年 5月 25日 庚寅.

20) 『忠淸道大同事目』(奎1594) 60번째 항목. 신진혜, 위의 논문, 2020, 48~54쪽.

이나 고려와 명나라의 사례를 참고한 물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상시에 실제로 왕실에서 먹는 것들은 대체로 문소전에 천신하는 경향이였다. 하지만 임진전쟁 이후 문소전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평상시에 먹는 것까지 종묘 천신으로 일부 합쳐지면서, 종묘 천신은 상징적인 시물과 실제로 소모하는 시물이 모두 포함되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모든 삭선이 천신품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유교적 상징성이나 기존의 전통에 근거하여 상징적으로 천신품을 설정하였다.²¹⁾

천신물품은 임토작공의 뜻을 바탕으로 각 도에서 바치던 外貢과 籍田 및 司圃署·掌苑署 등의各司에서 바치던 供上으로 구성되었다. 경기도에 할당된 것과 더불어 외공의 경우는 평안도를 제외한 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황해도·함경도·제주도에 분정되어 있었다.²²⁾ 인조대부터 영조대까지의 경기 및 각도 외공의 물목 경향을 『薦新進上臚錄』(奎12913)·『忠淸道大同事目』(奎1594)·『全南道大同事目』(奎1556)·『宗廟儀軌』(奎14220)·『宗廟儀軌續錄』(장K2-2203)·『備邊司臚錄』을 교차대조하여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	월별 천신물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경기도	-	半乾雉 生蛤	辛甘菜 黄石魚 生石魚 訥魚	眞魚 烏賊魚	-	稻米	榛子	生蟹	山葡萄 獼猴桃 生雁	柚子	-	秀魚
강원도	早藿	松魚	-	-	-	銀口魚 李實	柏子	松茸	-	-	-	-
충청도	-	-	生石魚	-	大麥 小麥	-	-	紅柿子	-	-	天鵝	生兔
경상도	-	-	-	竹筍	-	-	胡桃	-	-	乾柿子	天鵝 青魚	-
전라도	-	生鰈 雀舌茶	蕨菜	-	小麥	-	-	-	-	-	天鵝	-
황해도	-	-	生石魚	-	-	-	蓮實	-	-	-	-	-
함경도	-	-	-	-	-	-	鱧魚	-	-	-	瓜魚 天鵝 青魚	-
제주도	-	-	青橘	-	-	-	-	-	-	金橘	唐柚子	洞庭橘 乳柑
평안도	-	-	-	-	-	-	-	-	-	-	-	-

<표 2> 지역별 천신물목 분정 현황

이처럼 17~18세기의 여러 자료를 교차대조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현물 혹은 미가로 상납했던 종묘 천신진상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물목을 현물로 진상했고 어떤 물목을 미가로 납입하고 공인이 매입했는지는 아주 명료하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19세기의 자료인 『호남청사례』를 살펴보면 천신 진상물종의 가격이 아닌 물종 수량만 기재한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현물봉진으로 진상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²³⁾

21) 조선의 종묘 천신 월령이 정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신진혜, 위의 논문, 2020, 54~61쪽.

22) 평안도는 국방과 사신접대의 부담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물선진상이 분정되지 않았다. 전상욱, 「18세기 전반 물선진상 관련 자료 분석-『진상별단등록』을 중심으로-」, 『문화재』 47(4), 2014, 180쪽.

비록 종묘 천신은 아니지만 정조 재위기에 경모궁에 천신하는 절차를 마련할 때, 지역별로 어떤 물목을 얼마나 할당했는가에 대해서까지 『경모궁의궤』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조금 더 접근하기에 용이하다. 정조 원년(1777) 정조는 사도세자를 모신 경모궁에 대한 천신물종을 정리할 때 종묘에 비해 등급을 낮추어 정하되, 천신물종은 번다하니 헤아려서 줄일 것과 더할 것을 참작하여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천신진상 물목이 두 개의 도에 중첩 배정되어있는 경우, 종묘는 규례대로 거행하고 경모궁은 한 도에서만 마련하도록 명하였다.²⁴⁾ 종묘의 경우 存羊의 뜻 때문에 감히 줄일 수 없었지만,²⁵⁾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경모궁에 대해서는 폐단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경모궁의궤』를 바탕으로 경모궁 천신물목과 분정 지역, 분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경모궁 천신 12朔令

	물품	진설 방식	수량	지역 및 부서
1월	조과(早藿)	변(籩)에 담는다.	2근(斤)	원춘도(原春道)와 경상도
2월	얼음[氷]	두(豆)에 담는다.	1편(片)	빙고(氷庫)
3월	생조기[生石首魚]	소금 1홉도 함께 올린다. 두에 담는다.	4마리	황해도
	위어(鰓魚)	소금 7사(夕)도 함께 올린다. 생갑(牲匣)에 담는다.	15개	사옹원과 경기(京畿)
4월	진어(眞魚)	소금 2홉과 식초[醋] 1사도 함께 올린다. 두에 담는다.	1마리	경기
5월	앵두[櫻桃], 살구[黃杏]	3종은 변에 담는다.	각각 1되 5홉씩	장원서(掌苑署)
	오이[瓜子]		40개	사포서(司圃署)
	보리[大麥], 밀[小麥]		각각 2되	적전(籍田)
6월	좁쌀[粟米], 쌀[稻米], 기장쌀[黍米], 메기장쌀[稷米]	모두 두에 담는다.	각각 2되씩	적전
	능금[林檎]	3종은 변에 담는다.	1되 5홉	장원서
	참외(眞瓜)		2개	사포서
7월	자[柏子] 배[生梨]	두 과일은 변에 담는다.	3되 10개	원춘도 장원서
8월	홍시(紅柿)	생갑에 담는다.	30개	홍충도(洪忠道)와 전라도
	대추[大棗] 생밤[生栗]	두 과일은 변에 담는다.	1되 5홉 3되	장원서
9월	석류(石榴)	변에 담는다.	5개	전라도와 경상도
10월	감자(柑子), 당금귤(唐金橘) 유자(柚子)	3종은 변에 담는다.	각각 15개	제주(濟州)
			5개	전라도와 경상도
	은어(銀魚)	간장(良醬) 2홉, 후추[胡椒] 2푼, 참기름[眞油] 3사를 함께 올린다. 두에 담는다.	40마리	원춘도와 함경도
11월	청어(靑魚)	소금 1홉을 함께 올린다. 생갑에 담는다.	8마리	경상도와 함경도
12월	송어(秀魚)	소금, 간장, 참기름도 함께 올린다.	1마리	경기
	평[生雉]	생갑에 담는다.	1마리	
	유감(乳柑)	변에 담는다.	18개	월령(月令)에 구애받지 않는다.

23) 최주희, 위의 논문, 2022, 220쪽.

24) 『日省錄』 정조 원년 정유(1777) 6월 12일 병오 ; 9월 19일 신사.

25) 『景慕宮儀軌』 「薦新」 정조 1년 정유(1777) 5월 30일.

물목의 분량과 진상 할당지역 및 관서까지 표기하는 경향은 그 이후로도 일부 전승되어, 현종대의 자료로 추정되는 규장각본 『每事問』(규5120-147)에도 종묘 천신월령 물목의 양적 현황이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고종대의 기록으로 추정되는 장서각본 『매사문』을 통해 각 물품의 담당부서와 분정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하단의 도표는 두 개의 『매사문』 판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변화상을 비교검토하기 위해 『춘관통고』에 기록된 종묘 천신물목을 병기하였다.

	『春官通考』(정조대)		『每事問』(현종~고종대)			
	물품	종류 수	물품	수량	진설방식	담당
1월	早糶	1	早糶	92봉	(필요에 따라) 실마다 소납촉 2정, 등진유 1흡	외공
2월	水	8	水	2정		동빙고
	半乾雉		半乾雉	28수		경영
	生鰓		生鰓	440개	진유 2작, 호초 1분, 간장 1흡 5작	외공
	雀舌茶		雀舌茶	8량 8진		외공
	生蛤		生蛤	14말	초 2작, 염 1흡, 호초 2분	경영
	絡蹄		絡蹄	14급		경영
	水芹		水芹	42악		사포서
3월	松魚	7	松魚	42미		외공
	生石魚		生石魚	70미		경영
	黃石魚		黃石魚	560미	염 1흡	경영
	辛甘菜		辛甘菜	28악		
	訥魚		訥魚	28미		경영
	靑橘		靑橘	260개		외공
	葦魚		葦魚	40급	염 7작	경영
4월	蕨菜	3	蕨菜	169속	진유 3작, 간장 7작	선혜청
	烏賊魚		烏賊魚	28미	간장 1흡 5작, 진유 5작, 호초 2분	경영
	眞魚		眞魚	14수	염 2흡, 초 1작	경영
	竹筍		竹筍	180본	간장 1흡 4작, 진유 4작	외공
5월	大麥	5	大麥	9말 4되		적전
	小麥		小麥	9말 4되		적전
	黃杏		黃杏	2말 8되		장원서
	櫻桃		櫻桃	2말 8되		장원서
	瓜子		瓜子	700개		사포서
6월	銀口魚	11	銀口魚	260개	염 1흡	외공
	稷米		稷米	3말 5되		적전
	黍米		黍米	3말 5되		적전
	稻米		稻米	10말		적전
	林檎		林檎	2말 8되		장원서
	李實		李實	2말 8되		장원서
	茄子		茄子	140개		사포서
	冬瓜		冬瓜	42개	간장 1흡 5작, 진유 4작	사포서
	西瓜		西瓜	14개		위전
	眞果		眞瓜	42개		(사포서)
	栗米		栗米	3말 5되		사포서, 내자시, 위전
7월	靑葡萄	7	靑葡萄	70타		적전
	生梨		生梨	160개		장원서
	鱧魚		鱧魚	42미	염 1흡, 진유 4작	(장원서)
	蓮實		蓮實	4말 4미		외공
	榛子		榛子	5말 8되		외공
	胡桃		胡桃	3말 5되 6흡		경영
	柏子		柏子	5말 8되		외공
8월	紅柿子	7	紅柿子	700개		외공

	新淸酒		新淸酒	14병				
	大棗		大棗	5말			(장원서)	
	生栗		生栗	5말 6되			장원서	
	松茸		松茸	270본			간장 2홉	외공
	鮓魚		鮓魚	70개			간장 7작, 감장 2홉, 호초 2분, 초 3작	수원
9월	生蟹	4	生蟹	200개		염 1홉	경영	
	山葡萄		山葡萄	140타		경영		
	獼猴桃		獼猴桃	2말 8되		경영		
	生雁		生雁	14미		경영		
10월	石榴	9	石榴	84개			외공	
	乾柿子		乾柿子	14첩			외공	
	大口魚		大口魚	42미			외공	
	柑子		柑子	238개				
	金橘		金橘	238개				
	銀杏		銀杏	3말 2되				
	銀魚		銀魚	238미			간장 2홉, 진유 3작, 호초 2분	경영
	柚子		柚子	73개				외공
薯蕷	薯蕷	270본		경영				
11월	文魚	4	文魚	14미			외공	
	天鵝		唐柚子	72개				
	青魚		天鵝	14미			염 1홉	
	白魚		青魚	140개			염 1홉	외공
12월	瓜魚	5	瓜魚	742개			선혜청	
	乳柑		乳柑	288개			염 1홉	외공
	生兔		生兔	28수				외공
	秀魚		生魚(秀魚)	14미				경영
	唐柚子		洞庭橘	370개				경영
洞庭橘					외공			
총계	71종				71종			

<표 4> 『春官通考』와 『每事問』의 종묘 천신일령 비교

물목의 종류는 정조 재위기에 정리된 『춘관통고』와 그 이후의 내용을 다룬 『매사문』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총 72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11월에 배정되어있는 물목이 『춘관통고』에서는 白魚·瓜魚·靑魚·天鵝로 4종이었으나, 『매사문』에서는 唐柚子·白魚·瓜魚·靑魚·天鵝로 5종으로 변동되었고, 대신 12월의 물목이 『춘관통고』는 5종, 『매사문』은 당유자가 제외된 4종으로 변동되었다. 즉, <표 1>의 속종대 『종묘의궤』의 11월·12월의 물목으로 회귀한 셈인데, 이는 생산 시기를 바탕으로 봉진 시기를 조정한 결과였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²⁶⁾ 각도의 外貢은 1월의 旱藿, 2월의 生鰈·雀舌·松魚, 3월의 靑橘, 6월의 銀口魚, 7월의 鱧魚·蓮實·胡桃·柏子, 8월의 紅柿·松茸, 9월의 石榴, 10월의 乾柿子·大口魚·金橘·銀魚·柚子·文魚, 11월의 唐柚子·天鵝·靑魚·瓜魚, 12월의 乳柑·洞庭橘이다.²⁷⁾

정리하자면, 이처럼 천신진상은 일부는 현물봉진을 유지하였지만 물종가를 대동미로 수취하고 공인이 매매하여 상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지역별로 천신물목을 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종가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임토작공의 원칙을 고수해나가

26) 제주도의 굴류와 관련하여, 이육의 연구에서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의 제주도 진상 종류와 규모의 변화를 검토한 바 있다. 진상 굴류는 물종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유자와 산굴은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었고, 금굴은 18세기 초반 감해졌다가 이후 완전히 폐지된 대신, 당금굴이 18세기 초반에 새로 나타나 이후 배 이상 증가하였다. 속종 28년(1702) 당금굴 종자가 제주도에 보내졌고, 영조 때에는 천신용으로 진헌되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육, 「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 『탐라문화』 33, 2008, 144~146쪽.

27) 다음의 번역서를 참고하였다. 이범직·최순권 역주, 『정조대 종묘서 관리들의 종묘제향 학습서-역주 매사문』, 민속원, 2017, 68~71쪽.

면서 유교이념적인 공납의 원리를 유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의 천신진상은 광무연간까지 이어졌는데, 점차 물목이 축소되었기에 강원·경상·전라·황해·함경·제주도의 여섯 지역에서 진상되었다.²⁸⁾

3. 천신 진상의 봉진과 의례의 시행

1) 천신진상 물목의 준비와 봉진

조선 각도에서 바친 진상물목은 왕실과 정부 각사에서 소비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는 생동하고 유지되었다. 종묘 천신의례는 진상물품이 소비되기 전에 왕실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종묘에 천신 진상물품을 바치는 의례였다. 종묘에서의 천신 의례는 임토작공의 원리에 따라 각도에서 준비된 진상물품이라는 상징물을 통해 왕토와 왕실의 존속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다. 진상물품은 왕실에 의례적으로 바쳐진다는 禮獻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준비되는 과정 뿐만 아니라 봉진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측면이 있었다.

진상은 의례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포장하는 예를 다하여 봉진되었다. 이를 封裹라 표현하는데, 대동법 시행 이후로는 봉과 비용까지 따로 책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의례적 의미를 담은 공물에 대해 꾸밈을 더하는 것은 『상서』 「우공」편에서도 전통의 뿌리를 볼 수 있다. 고대 중국에도 공납과 폐백을 바칠 때는 광주리에 담아서 바친다거나[匪] 포장을 해서 바친다[包] 지정된 상납 양식이 있었다.²⁹⁾ 그러한 이념적 원리가 세련되게 발전된 모습이 진상에 대한 봉과일 것이다.

실록의 기록에서 진상물품의 봉과에 대해 언급되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종 9년(1427)에 立春과 人日(음력 정월 초이렛날, 節日 중 하나)에 진상하는 물건은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쓰지 말 것을 전지한 기록이나,³⁰⁾ 세종 18년(1436)에 正朝·冬至·誕日의 진상과 講武·端午의 진상물을 紗羅·綾段으로 장식하는 것은 실상 폐단이 되니, 모두 토산물을 쓰는 것을 恒式으로 삼을 것을 각도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전지한 기록이 있다.³¹⁾ 그리고 중종 14년(1519)에 황해도 관찰사 金正國이 진상의 봉과에 대해 장계한 것을 바탕으로 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³²⁾

전교하였다. “황해도 관찰사 金正國이 狀啓하기를, ‘우리나라가 누런빛의 보자기[黃袱]로 싸서 진상하게 하는 것이 僭禮에 가깝다.’하였는데, 나도 매우 그렇게 여겼다. 팔도에 영

28) 광무연간에 관해서는 신명호, 「융희연간 享祀釐正과 薦新進上廢止」, 『동북아문화연구』 27, 2011, 163~165쪽.

29) 『尙書』 卷3 「夏書」 禹貢(『漢文大系』 12 毛詩尙書, 新文豐)

30) 『世宗實錄』 卷35, 世宗 9年 1月 7日 丙申. 傳旨 自今立春人日進上物件 勿用金銀粧飾.

31) 『世宗實錄』 卷73, 世宗 18年 閏6月 16日 庚辰. 傳旨 各道監司都節制使 正朝冬至誕日進上及講武端午進上之物 粧以紗羅綾段 實爲有弊 今後皆用土宜永爲恒式. 이러한 전지는 세종 23년(1441)에도 다시 내려진 바 있다. 『世宗實錄』 卷93, 世宗 23年 6月 23日 戊子.

32) 『中宗實錄』 卷35, 中宗 14年 2월 26日 庚寅. 傳曰 黃海道觀察使金正國狀啓以 我國用黃袱封裹進上 近於僭禮云 予甚然之. 其令八道 自今裹以紅袱 勿復用黃.

을 내려 지금부터는 붉은빛의 보자기[紅袱]로 싸 것이니 다시는 황복을 쓰지 말도록 하라.”

조선에서 황복으로 싸서 진상하는 것은 참람한 예이니 홍복으로 싸 것을 전교한 내용인데 이를 통해 진상에 있어서는 특별한 장식과 포장이 더해졌으며, 그것이 의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봉과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는 『만기요람』의 경기청 진배물종에 月令膳入盛雜物, 封裹雜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을 바탕으로 진상물에는 특별히 포장이 더해졌을 것이라 추정하였다.³³⁾ 入盛雜物이나 封裹雜物이 조달 과정에서 물건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인지 장식을 위한 포장인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진상에 대한 장식은 앞서 제시한 세종과 중종 연간에 언급된 紗羅·綾段, 黃袱, 紅袱 등의 요소를 통해 충분히 구현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⁴⁾

왕실 사람들에 대한 진상품 봉과 외에 천신진상에 대해서도 봉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초엽에 의례 진상품품의 봉과로 인한 문제가 지적된 적도 있었다. 문종 원년(1451) 6월에는 문소전이나 혼전에 바치는 진상물건을 봉과하는 종이 해마다 거의 480 卷인데 이를 봉상시의 奴隸가 장만하여서 깨끗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봉상시 奴婢貢에서 남은 楮貨로 수를 정하여 장만해야 한다는 호조의 정문이 있었다.³⁵⁾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제향이나 천신을 포함한 여러 진상물목에 대한 봉과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자료인 『해서청사례』의 진상 조항을 살펴보면, 진상품의 종류별 물종가 총액과 잡비, 재원 마련방식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종묘 천신은 물종가 미 25 석 9두 6승, 봉과가 미 4석 2두를 책정하고 이를 감영에서 각읍에 분정하여서 봉진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이를 통해 대략적으로나마 이전부터 진상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의미를 담아 봉과가 시행되고 있었고, 19세기에 이르러 봉과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문서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천신진상 역시 그러한 의례적 형식이 충분히 갖추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신진상 물품은 예를 갖추어 올리는 것 못지않게 상하지 않은 온전한 물품을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때문에 신선도를 확인하거나 운송 방법을 구체화하는 사안이 빈번히 논의되었다. 조선 초엽, 세종은 종묘에 천신할 때 쓰는 과실류는 혹 벌레먹었을 수도 있으니 쪼개거나 깎아서 올리는 것을 제안하며 옛 제도를 검토하게 하였다. 이에 孟思誠(1360~1438)과 許稠(1369~1439)는 과실을 자르거나 깎아서 온전치 못하게 올리는 것은 古文에 사례가 없으니 과일이 온전치 못할 경우 다시 고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결국 논의를 거쳐 과일을 몇 개만 쪼개어 상태를 확인하고 온전한 것을 올리도록 정하게 되

33) 德成外志子, 위의 논문, 2001, 47쪽.

34) 『萬機要覽』 「財用編」 1, 各貢조에서도 封裹雜物이나 보자기감[袱次]을 담당하는 지역이 구분되어 있다.

35) 『文宗實錄』 卷8, 文宗 1年 6月 18日 乙酉.

36) 이에 관한 분석은 최주희, 위의 논문, 2022, 227쪽.

었다.³⁷⁾

운송에 관해서는 빨리 운송하는 방안이나 부패를 방지하는 일이 논의되었다. 세종 22년(1440) 濟州에서 진상하는 酸物(감귤류)을 各驛의 人吏들이 鋪馬가 아닌 소로 운송하다가 지체되어 맛이 변하는 일이 있으니 말로 遞送하도록 하였다.³⁸⁾ 세종 27년(1445) 강원도 감사 李先齊(1390~1453)가 여름에 생어육을 진상하는 과정에서 썩지 않도록 嶺東의 江陵·高城과 嶺西의 原州·春川 등지에 얼음을 저장하였다가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정부에서는 네 곳이나 얼음을 저장하기 어려우니 강릉과 춘천에 1년간 쓸 얼음을 저장하여 쓸 것을 보고하였다.³⁹⁾ 천신은 각 지역에서 진상한 물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구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가 불거졌다.⁴⁰⁾ 성종 4년(1473), 진상하는 채소는 먼 곳에서부터 운송되어서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말라서 맛을 잃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던 것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⁴¹⁾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신선도나 품질에 대한 문제는 조선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대동법 시행 이후로는 천신에 쓰일 물품도 부분적으로 공물가를 통해 무납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대동사목류 외에도 19세기의 자료인 『영남청사례』를 살펴보면, 영남청사례를 살펴보면, 영남청에서 값을 지급하는 종묘 천신과 내의원 약재는 공계를 통해 마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묘 천신으로 쓸 고사리와 고니, 신도미, 생토끼는 薦新主人이 12석 1두 5승의 공물가를 받고 봉진하였고, 천아계에서도 공물가 210석으로 간년마다 종묘에 천신하는 고니 14수를 바쳤다.⁴²⁾

이처럼 천신진상 물품의 봉납은 일정 부분 현물 납부에서 무납의 형식으로 변화했지만, 왕실에서는 공납·진상의 이념적 원류인 ‘임토작공’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대동법 시행 이후로도 여러 도에 중첩된 공납[蠶貢]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영조 37년(1761) 당시 종묘 천신월령과 휘녕전 천신에 쓰는 生兔는 兩道에서 外貢으로 봉진되는 것과 경기·호서·영남에 貢價로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 호조판서 尹東度는 이렇듯 중첩된 공납을 정리해야 한다고 아뢰었는데, 영조는 대신들에게 하순한 후, 외공은 임토작공의 뜻이니 그대로 지속하되 나머지는 豫備로 두도록 결론짓지도 하였다.⁴³⁾ 이는 현실적인 효율성보다는 이념적 측면을 고찰했던 사례로, 외공 형식의 천신을 존치함으로써 왕도에 대한 임토작공의 뜻을 이어가려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동법의 시행 이후로도 여전히 현물로 봉진되는 물품이 남아있었다. 모든 진상·공물

37) 『世宗實錄』 卷52, 世宗 13年 6月 8日 庚子.

38) 『世宗實錄』 卷91, 世宗 22年 12月 2日 辛未.

39) 『世宗實錄』 卷110, 世宗 27年 12月 10日 己酉.

40) 대표적인 사례는 『宗廟儀軌』 4冊(奎14220), 「薦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 『成宗實錄』 卷28, 成宗 4年 3月 14日 甲辰.

42) 최주희, 위의 논문, 2022, 222쪽. 원래 고사리·고니·신도미·생토끼가 할당되어 있었으나 영조 37년(1761) 호조판서 尹東度의 소계로 생토끼와 신도미를 없애고 고사리와 고니만 바치게 하였다고 한다. 경상도지역의 천아 봉진과 관련하여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한국사학보』 46, 2012, 67쪽.

43)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37年 辛巳 5月 初二日 ; 『備邊司臚錄』 140冊, 英祖 37年 5月 5日.

가운데 어떤 물종이 현물로 납부되었는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 유추가 가능한 부분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호남청사례』에는 이전 대동사목에 없었던 경모궁·조경묘의 천신물종이 기재되어 있는데, 천신물종에 대해서는 값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물종과 수량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 현물로 봉진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⁴⁴⁾

현물로 봉진되었던 대표적인 물종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굴 종류였다. 제주도는 행정상 전라도에 속해있었지만 번속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대동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로도 진상품을 현물로 상납하였다.⁴⁵⁾ 제주도의 굴류는 해로를 통해 이송되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던 사실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숙종 5년(1679)에는 제주도에서 진상할 천신 굴을 싣고 있는 선박이 실종되었고,⁴⁶⁾ 영조 연간에도 굴의 운송과정에서 배로 운반해오는 도중에 바다에서 잃어버려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⁴⁷⁾ 운송 때문에 해를 넘겨서 도착하는 경우 천신을 뒤늦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감굴을 맡은 공인이 걱정되어 고을에 찾아보게 하고 공인의 처자식에 대한 우려까지 드러내며 자신의 애민의식을 표현하였다.⁴⁸⁾ 영조 39년(1763)에도 제주에서 공과를 실은 배 3척을 보냈는데 2척은 표류되고 1척 역시 소식이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영조는 행방불명된 공인과 제주 백성에게 마음이 쓰인다고 전교하였다.⁴⁹⁾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여러 상황과 맞물려 제주 지역 진상 부담은 대폭 경감되는 추세를 보였다. 18세기 초반에는 제주 특산물 중 굴과류 진상이 대폭 경감되었고,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전복과 오징어 등에 대한 진상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숙종대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났고, 영조와 정조대에도 선대의 조치를 본받아 제주도에 대한 진상 경감을 시행하였다.⁵⁰⁾

정리하자면, 종묘 천신물품이 준비되는 과정에는 각도의 道臣과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했다. 특히 진상품품은 예헌의 의미를 내포했기 때문에 봉과가 더해지는 특징이 있었고, 천신진상의 경우 종묘에 모셔진 왕실 조상께 바쳐졌기 때문에 신선도가 중요했다. 임토작공과 효의 의미를 보존하려는 왕실의 입장과 각 도에서 천신진상을 준비해야 했던 백성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동법의 시행과 여러 방법적 절충을 통해 백성들의 입장을

44) 이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의 의견을 차용하였다. 최주희, 위의 논문, 2022.

45) 진상의 상납주체는 각도의 감사와 병사였다. 제주도의 경우 전라도에 속해있었지만 전라감사가 아닌 제주목사가 진상 상납의 주체가 되었는데, 제주도는 전답이 적고 조운이 쉽지 않은데다가 제주도를 속국으로 여기는 인식으로 인해 제주도의 진상은 일종의 조공으로 여겨짐으로써 대동법 시행 이후로도 제주도는 현물 진상의 형식을 유지하였다. 제주도 진상제도의 성격과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이육, 위의 논문, 2008.

46) 『薦新進上臚錄』 卷2, 肅宗 5年 2月 1日 ; 2月 4日.

47)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23年(1747) 丁卯 11月 12日 ;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34年(1758) 戊寅 6月 25日.

48) 『備邊司臚錄』 141冊, 英祖 38年 2月 27日.

49) 『備邊司臚錄』 144冊, 英祖 39年 12月 7日.

50) 숙종 12년(1686) 숙종은 제주의 기근이 심해지자 진상 부담을 경감시켰고, 숙종 42년(1716), 숙종 44년(1718)에는 진상의 2/3를 경감해주었다. 영조도 숙종대의 조치를 본받아 여러 차례 제주의 진상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조 2년(1778) 정조는 제주에서 灰全饑 진상을 영원히 감면해 주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정조 자신이 즉위할 때부터 생각해 왔던 것이며 先王의 遺意였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이육, 위의 논문, 2019, 9~12쪽.

고려하려는 노력이 병행되면서 종묘 천신은 지속되었다.

2) 종묘 천신의례의 시행 양상

各道와各司에서 준비한 계절 생산물, 즉 時物이 왕실에 도착하면 奉常寺와 宗廟署에서 이를 종묘에 진설하여 예를 행하였다. 시물을 준비하는 절차가 임토작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진설하여 예를 행하는 절차는 역대조에 대한 효를 상징하였다. 시물의 준비과정이 대동법으로 인해 변화를 겪었다면, 진설하는 의식에 있어서는 『국조오례의』를 따르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일부 절차적 조정이 있었다.⁵¹⁾

종묘 천신의 핵심은 정결하고 온전한 상태의 물품을 준비하는 데에 있었다. 각 지역에서 천신 진상물을 준비하면 봉상시정과 종묘서령이 물품을 점검하여 진설하였다. 천신의례는 국왕이 참여하지 않았고 봉상시, 종묘서에서 담당하여 진행하였기에 의식절차 자체는 다른 의식에 비해 간소했다.

『국조오례의』에 수록되어있는 종묘천신 의식은 크게 행례 하루 전에 봉상시정과 종묘서령이 동석하여 진설하는 절차와 종묘 각 신실에 이것을 바치는 행례 절차로 구분되어 있다.⁵²⁾ 獻爵을 하는 의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묘 제향처럼 獻官이 지정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奉常寺正이 참여하되 혹 봉상시정에게 연고가 있으면 僉正 이상의 관원이 대신 말도록 했으며, 宗廟署丞 역시 연고가 있으면 次官이 대신 말도록 하였다. 이는 천신진상이 준비되는 시기에 따라 종묘 朔望祭나 攝事로 시행되는 五享大祭에 천신이 兼行되기도 하였다.

천신 하루 전날 진설할 시물의 특징에 따라 각각 籩·豆·爵에 담았고, 찬으로 올릴 것은 종묘서령이 부엌에서 가마솥을 살피고 난 후 소속을 거느리고 만들었다. 월별로 각 지역과 관서에서 봉진되는 시물을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매사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표 4>), 경모궁 천신의 경우도 『경모궁의궤』에 천신 물목의 조리 방식과 사용되는 제기를 기재하고 있다(<표 3>). 곡식이나 과일, 해산물 등 다양한 시물이 진설되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조리 과정을 거쳤고, 특징에 알맞은 제기에 담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천신하는 날에 종묘서령은 소속인원을 거느리고 실문을 열어 준비하며, 봉상시정이 常服 차림으로 들어가 서향으로 서서 네 번 절하였다. 이어 관세위로 나아가 북향하고 손을 씻고 조계로 올라가 1실의 문 밖에 북향으로 서서 집사자가 준비된 물품을 봉상시정에게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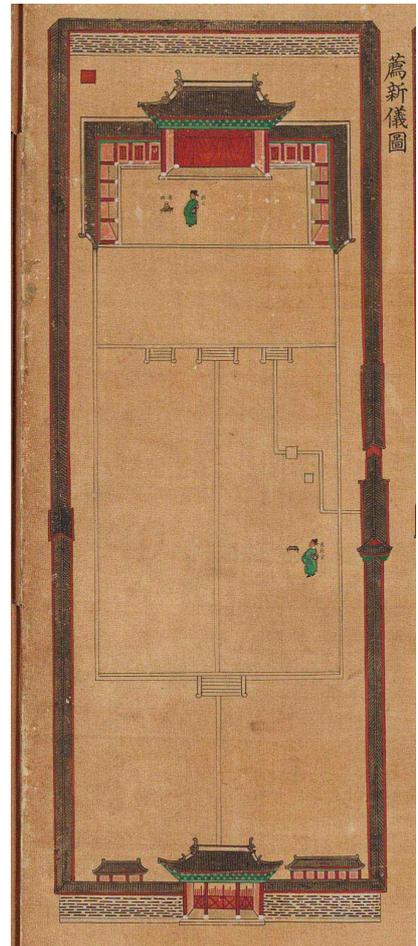


그림 1 宗廟親祭規制圖說屏風 제4폭 중 薦新儀圖.

51) 조선의 종묘 천신 의식이 구체적으로 상정되었던 것은 태종대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국조오례의』로 최종 정리되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신진해, 위의 논문, 2020, 63~64쪽.

52) 『國朝五禮儀』卷1, 「吉禮」宗廟薦新儀.

면 이를 받아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아 올리고 부복하고 일어났다. 모든 신실에 대해 이렇게 시행하고 마치면 네 번 절하고 예를 마무리 지었다.⁵³⁾

천신은 임진전쟁으로 파천 중인 시기에도 시도되었다. 파천 중인 상황에서도 물품의 정결 여부를 고민하였고 『국조오례의』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성을 수복한 이후에 비로소 『국조오례의』의 薦新宗廟儀를 바탕으로 변례를 마련하였다. 본래 奉常寺正과 宗廟署丞이 모여서 진설한 뒤에 봉상시가 奠禮를 행하는 것이 규례이지만 당시 행재소에는 봉상시 관원이 한 사람도 없었다. 결국 예조와 종묘의 관원을 임시 종묘인 假廟로 보내 代行하는 방안으로 변통하여 시행하였다.⁵⁴⁾

전란 이후 천신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시물의 품질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지적되었다.⁵⁵⁾ 물품의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의식 시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천신과 소비의 선후관계가 바뀌는 것이나 천신을 담당하는 관원들이 의식을 대충 시행하는 것이 그러한 예였다. 기본적으로 조상께 제철의 산물을 바쳐 천신한 후 諸殿에 봉진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도리였지만 이러한 순서를 어겨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 효종 4년(1653) 3월, 종묘에 鰾魚를 바치는 천신이 시행되기 전에 사옹원에서 諸殿에 封進한 일이 있었다. 산물을 먹기 전에 조상에게 먼저 바치는 것은 효를 표현하는 것인데,⁵⁶⁾ 이를 어긴 것은 불효였다. 효종은 이는 무척 미안한 일이니 앞으로는 천신이 있는 후에 봉진할 것을 하교하였다.⁵⁷⁾ 그리고 천신을 먼저 하고 난 후 각전에 봉진하는 것[先薦而後進]을 법식으로 삼게 하였다.⁵⁸⁾

물품을 맡은 봉진관과 의식을 관장하는 봉상시와 종묘서에서 천신을 무책임하게 시행하는 폐단도 있었다.⁵⁹⁾ 이러한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되고 있었지만 쉽게 개선되지 못했다. 종묘 천신의식에 대한 교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영조대였다. 영조는 종묘에서 시행되는 여러 의례에 관심이 컸고, 그러한 관심은 종묘 천신의식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⁶⁰⁾

영조는 종묘대제 친향시에 천신을 겸하여 직접 시행하기도 하였다. 영조 26년 하향대제 시기에 경상도에서 올린 竹筍이 도착해서 천신의식을 겸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묘 삭망제나 대신들이 攝行하는 오향대제가 시행될 때 천신진상이 당도하면 천신을 겸행했지만, 국왕이 친향할 때에 천신을 겸해서 시행하는 규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영조는 천신을 지체할 수 없으니 친향때 겸행하도록 분부했던 것이다.⁶¹⁾ 국왕이 직접 종묘에 제향하는

53) 조선후기에 이르러 월령 천신물은 변경되었지만 의식구조는 『국조오례의』에 정비된 방식이 그대로 이어졌다. 정조대에 구성된 『오례통편』에서도 천신물종에 대해서만 변동된 내용을 부기하였다. 『國朝五禮通編(五)』(고181.214 이896,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卷1, 「吉禮」 宗廟薦新儀.

54) 신진혜, 위의 논문, 2018, 392~395쪽.

55) 『光海君日記』[중초본] 卷129, 光海 10年 6月 13日 庚午.

56) 『禮記正義』 卷19, 「曾子問」 第7, 曾子問曰 宗子為士 庶子為大夫 其祭也如之何? 孔子曰 以上牲祭於宗子之家. 貴祿重宗也. 上牲 大夫少牢. 祝曰 孝子某 為介子某薦其常事.

57) 『孝宗實錄』 卷10, 孝宗 4年 3月 28日 甲午.

58) 『孝宗實錄』 卷10, 孝宗 4年 5月 25日 庚寅.

59) 『宗廟儀軌續錄』(장K2-2202) 「薦新」, 肅宗 33年 丁亥 6月 初2日; 肅宗 40年 甲午 5月 初5日.

60)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신진혜, 위의 논문, 2020.

61) 『承政院日記』 1055冊, 英祖 26年 4月 9日 辛巳.

것은 정통성을 과시하는 상징성을 띠는 것인데, 여기에 임토작공과 효의 의미를 보여주는 천신 의례까지 더해지면서 국왕 친행 종묘의례의 상징성이 극대화되었다.

천신 진상물품의 점검과정이나 행례 절차를 철저히 규정하는 일도 영조대에 이루어졌다. 영조는 천신 진상물품을 봉진하는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교하였다. 천신 진상물품은 各道의 道臣→봉상시→예조당상→봉상시의 순서를 거쳐 간품한 후 종묘에 천신되었다. 이에 대해 영조 47년(1771) 12월, 천신진상을 관찰사가 직접 封해서 보내고 물품이 봉상시에 도착하여 예조당상이 받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개봉하는 일을 정식으로 삼도록 하였다. 물품을 확보하고 운송이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 관찰사가 감독하는 규칙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貢果를 봉입할 때 茅一閣에서 기다리며 천신물품 가운데 만약 상한 것이 있으면 廚院에 말하여 代封한 후 봉입하는 일을 봉상시 주원에 분부하였다. 魚物과 貢果를 막론하고 비록 깊은 밤이라 해도 봉상시에 도착했으면 예조당상이 곧장 가서 간품하고, 비록 다음날 새벽에 천신하더라도 봉상시 관원은 바로 太室에 배진하고 유숙해서 거행하는 일을 분부하였다. 또한 이후 제반 도착하는 것들은 바로 該曹에 보내고 만약 邸人이 지체한다면 해조에서 草記하도록 전교하였다.⁶²⁾ 이러한 방식은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수행되면서 하나의 규례로 정리되어갔다.

천신에 대한 영조의 관심은 정조에게까지 이어졌다. 대행왕의 국상기간에는 종묘 뿐만 아니라 빈전과 혼전에도 천신이 행해졌는데, 영조는 빈전과 혼전에 바치는 여러 천신물품 가운데 긴요하지 않은 물품 16종을 감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양상은 정조와 순조에게까지 이어졌다. 정조는 “천신에 긴요치 않으면서 민가에 폐단이 있는 것이라면 잘 헤아려 보고 바로잡아도 해로울 것이 없을 듯하다”는 뜻을 전하였다.⁶³⁾ 그리고 정조 역시 영조와 마찬가지로 천신 의식의 행례 상황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조 5년(1781) 6월에 편수관 張顯慶에게 명하여 종묘와 경모궁에 가서 오늘 천신할 西瓜를 看品하고 그중에서 한 개를 가져 오도록 명함으로써 정조가 직접 천신진상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⁶⁴⁾

정리하자면, 종묘 천신은 각 도에서 임토작공의 뜻을 담아 시물을 진상하면 그것을 왕실·조정에서 역대조가 모셔진 종묘에 진설하고 행례함으로써 비로소 효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이는 전란의 상황에서도 시행되었고 전란 이후 국가의 제도가 복구되는 과정에서도 상황에 맞추어 지속되었다. 조선 초엽에 정비된 제도를 따르면서도 잘못 전승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국왕의 종묘 친행에 겸행되기도 하였다. 天命을 받들어 조선을 건국하고 이어왔던 선대왕들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통치되고 있음을 임토작공과 효의 상징을 담은 천신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62) 『宗廟儀軌續錄』(장K2-2203) 「薦新」, 英宗 47年 辛卯 12月 20日 ; 英宗 51年 乙未 11月 初5日.

63) 『日省錄』 정조 원년 정유(1777) 6월 29일 계해 ; 순조 즉위년 경신(1800) 7월 6일 병술. 1월령의 조곽(早藿), 2월령의 미나리(水芹)·반건치(半乾雉)·생합(生蛤)·생낙지(生絡蹄)·작설(雀舌), 3월령의 생누치(生訥魚), 4월령의 오징어(烏賊魚), 8월령의 붕어(鮪魚), 9월령의 생안(生雁)·산포도·미후도(獼猴桃), 11월령의 과어(瓜魚)·천아(天鵝), 12월령의 송어(秀魚)·생토(生兔) 등 16개 물종을 빼도록 하였고, 혼전과 산릉에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64) 『日省錄』 정조 5년 신축(1781) 6월 1일 임신.

4. 결론

조선 각도에서 바친 진상과 공납은 왕실과 정부에서 소비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는 유지되었다.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형식적 변화가 있었을 뿐 운영 원리는 동일하였다. 종묘 천신의례는 진상물품이 소비되기 전에 왕실 정통성을 상징하는 공간인 종묘에 천신 진상물품을 바치는 의례였다. 국가·왕실 제향이나 의례가 시행되는 것을 통해 왕실의 위상을 과시하고 강화하는데, 의례의 시행주체는 왕실과 정부에 국한된다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하지만 종묘 천신의례의 준비와 시행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왕실의례가 구현되기에 이르기까지 백성과 각도의 도신, 각사의 신하들의 노고가 순차적으로 투영되었고, 그러한 결과물이 종묘 천신의례라는 왕실의례의 실행으로 발현되었음을 거칠게나마 정리해보았다.

종묘 천신의례는 절차 자체는 간단하지만 월별로 준비되는 계절물품이 준비되기까지의 과정이 까다롭고 중요한 의례이다. 역대 국왕에 대한 현 국왕의 효와 조선 각도가 온전히 왕실의 통치영역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의례이기에 왕조 전반에 걸쳐 중요하게 여겨졌다. 종묘 천신의례는 천신 진상물품이 왕실에 납부된 이후 해당 물품이 어떻게 사용·소비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의례사 뿐만 아니라 경제사적으로도 그 상징성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초엽에 정비되었던 월별 천신물품이 조선후기에 재정리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대동법 시행 이후 천신진상은 물종가를 대동미로 수취하고 공인이 매매하여 상납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지만, 지역별로 천신물목을 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종가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임토작공의 원칙을 고수해나가면서 유교이념적인 공납의 원리를 유지했음을 확인하였다.

진상물품은 왕실에 의례적으로 바쳐진다는 예헌의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준비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봉진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측면이 있었다. 진상은 의례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포장을 더하는 봉과의 예를 갖추었고, 대동법 시행 이후로는 봉과 비용까지 따로 책정되었다. 이는 일반적 진상품 뿐만 아니라 천신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종묘에 바치는 천신물품은 신선하고 온전한 모습이어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백성과 공인, 각도 도신의 노고가 더해졌다. 이처럼 종묘 천신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에는 각도의 道臣과 백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종묘 천신은 각 도에서 임토작공의 뜻을 담아 시물을 진상하면 그것을 왕실·조정에서 역대조가 모셔진 종묘에 진설하고 행례함으로써 비로소 효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조선 초엽에 정비된 제도를 따르면서도 잘못 전승되거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고,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국왕의 종묘 친향에 겸행되기도 하였다. 건국 이후 왕조를 계승해왔던 선대왕들에 대해 국가가 온전히 통치되고 있음을 임토작공과 효의 상징을 담은 천신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참고문헌

- 田川孝三, 『李朝貢納制の研究』, 東洋文庫, 1964.
- 徳成外志子, 「朝鮮王朝後期の國家財政と貢物・進上」, 『朝鮮學報』 第173輯, 京城: 朝鮮學報社, 1999, 49-85面.
- 徳成外志子,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 渡邊信一郎, 문정희 옮김, 『천공의 옥좌-중국 고대제국의 조정과 의례-』, 신서원, 2002.
- 고석규,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1985.
- 김상보·한형주 외, 『종묘, 조선의 정신을 담다』, 국립고궁박물관, 2014.
- 문광균, 『조선후기 경상도 재정 연구』, 민속원, 2019
- 문광균, 「17세기 경상도지역 공물수취체제와 영남대동법의 실시」, 『한국사학보』 46, 2012.
-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태학사, 2015.
- 신명호, 「융희연간 享祀釐正과 薦新進上廢止」, 『동북아문화연구』 27, 2011.
- 신진혜, 「임진전쟁기 종묘의 소실과 재건 과정 연구」, 『역사학보』 240, 2018.
- 신진혜, 「조선시대 宗廟의 薦新 進上和 儀節」, 『민족문화연구』 86, 2020.
- 엄기석, 『조선후기 황해도 상정법의 시행과 지방재정』,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이범직·최순권 역주, 『정조대 종묘서 관리들의 종묘제향 학습서-역주 매사문』, 민속원, 2017.
- 이욱, 2008, 「18~19세기 제주의 進上制 운영과 성격」, 『탐라문화』 33.
- 이욱, 2019, 「18세기 제주의 진상제(進上制)와 상품유통」, 『한국사연구』 186.
- 이정철, 『대동법-조선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0.
- 전상욱, 『조선후기 강원도지역의 공납제 개혁과 대동·상정법 시행』,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최주희, 2014, 『조선후기 宣惠廳의 운영과 中央財政構造의 변화 :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주희, 2022, 「대동법 시행기 進上制의 정비와 영조대 초반 『進上別單臚錄』의 작성」, 『韓國史學報』 86.
- 한복진, 「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식품에 대한 고찰」·「조선시대 궁중의 천신(薦新) 의례에 관한 고찰」,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2(6), 2002.
- 한영국, 「湖西에 實施된 大同性」 上·下 『歷史學報』 13·14, 1960·1961.
- 한영국, 「湖南에 實施된 大同性」 上·二·三·四 『歷史學報』 15·20·21·24, 1961·1963·1964.

「조선후기 各道の 薦新進上과 그 禮獻의 의미」 토론문

김웅호 (서울역사편찬원)

발표문은 조선 초에 정비됐던 宗廟의 월별 薦新 물품이 조선 후기에 재정리되는 과정을 검토하면서 첫째, 천신 물품의 지역별 분정 현황을 정리하여 任土作貢의 원리가 지역별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둘째, 각 지역에서 준비된 禮獻 물품을 통해 종묘의 천신 의례가 구현되는 양상을 정리하여 왕실의례의 구현이 전국 各道 지역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발표문 2쪽) 있습니다. 토론자는 조선시대의 진상이 예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현물 형태로 진상됐다고 생각해왔는데, 발표문 덕분에 진상 역시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공물처럼 質納 형식으로도 조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토론자는 발표문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발표문이 좀 더 나은 논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천신 진상 물품을 수령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발표문을 보면, “진상·공납 물품이 왕실에 납부된”(2쪽), “時物이 왕실에 도착하면”(12쪽)이라 하여 천신 진상 물품을 수령하는 주체를 ‘왕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료제를 채택한 조선왕조에서 왕실 구성원인 大君.君이나 종친들이 맡는 관청은 宗親府나 宗簿寺밖에 없는데, 이들 관청들이 천신 진상 물품을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히려 발표자께서 “천신 진상물품은 各道の 道臣→봉상시→예조당상→봉상시의 순서를 거쳐 간품한 후 종묘에 천신되었다.”(14쪽)라고 밝힌 것처럼, 각도에서 진상한 천신 물품은 看品の 주체인 ‘봉상시’에서 수령까지 담당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령 주체가 봉상시라면 이를 ‘왕실’로 표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종묘 천신 의례는 왕실의례인가?

발표문에서는 “종묘 천신이라는 왕실의례가 시행되기까지의 과정”(2쪽), “그러한 결과물이 종묘 천신의례라는 왕실의례의 실행으로 발현되었음”(15쪽)이라 하여 종묘 천신의례를 ‘왕실의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신은 계절에 생산된 음식물을 먹기 전에 조상께 바침으로써 孝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례였는데, 이는 사대부 가문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시행되었다. 조상을 섬긴다는 효의 의미는 왕실이나 일반 가문에서 동일하게 작용하였다.”(1쪽)라고 하여, 사대부 가문과 ‘왕실’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물론 왕실인 전주이씨도 다른 사대부 가문보다 세력이 큰 또 하나의 가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왕실의례 대상으로는 종묘 의례보다는 조선전기에 존재했다가 임진전쟁 이후 복구되지 않았던 文昭殿에서 거행됐던 의례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왕조는 나라에서 거행하는 제사[국가제사]를 대상에 따라 大祀.中祀.小祀로 구

분하고 그 의례 규모를 차등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종묘에서 거행했던 오향대제가 바로 대사에 해당합니다. 종묘에서의 천신 의례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오향대제와 천신 의례 모두 宗廟署가 의례를 준비하는 하나의 주체로 참여한다는 점과 종묘라는 같은 공간에서 거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묘 천신 의례는 하나의 가문을 의미하는 ‘왕실의례’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거행하는 의례, 즉 ‘국가의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종묘에 모셔진 선대왕과 선왕비들이 왕실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종묘 천신 의례를 ‘왕실의례’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 대동법 시행 이후 천신 물품의 운송 주체도 바뀌었는가?

“현물로 봉진되었던 대표적인 물품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굴 종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감귤을 맡은 공인이 걱정되어 고을에 찾아보게 하고 공인의 처자식에 대한 우려까지 드러내며 자신의 애민의식을 표현하였다.”(2쪽)라고 하여, 현물로 봉진되는 천신 물품까지도 공물가를 받은 공인이 현물이 나는 지역으로 가 매입한 뒤 봉납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천신 물품을 준비하는 지방관원들은 천신할 현물을 확보해 포장하는 封裹까지만 담당하고 운송과 납입은 공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기타

- 1) “진상의 상납주체는 각도의 감사와 병사였다.”(12쪽 각주 45)라고 했는데, 병사 외에 水使도 진상을 상납하는 주체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2) 11쪽 3번째 문단의 “천신에 쓰는 生兔는 兩道에서 外貢으로 봉진되는 것”에서 양도가 어디인지 괄호 속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대한제국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본 서울과 전남

윤선자 (전남대학교)

- | | |
|-------------------|-------------------|
| 1. 머리말 | 3. 외지고 배타적인 전남 |
| 2. 교회.정치.근대문물의 서울 | 1)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시골 |
| 1) 교회행정의 거점 | 2) 외래문화 거부 |
| 2) 정치의 중심 | 3) 일진회 세력의 극성 |
| 3) 근대문물의 시작.수혜지 | 4. 맺음말 |

1. 머리말

1876년의 조일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시작으로 조선/대한제국은 많은 나라들과 불평등한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여러 목적으로 조선/대한제국을 방문.상주하였다. 프랑스를 모국으로 하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조선정부가 허용하지 않았지만 1836년 모방(Maubant) 신부의 입국을 시작으로 조선/대한제국에 입국하였다. 아관파천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과 고종의 측근세력은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를 계기로 무너져가는 나라의 주권을 지키려 하였으나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완전 상실당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대한제국기에도 한반도에서 선교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조선/대한제국의 선교를 책임맡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조선/대한제국과 조선인/대한제국인을 선교 시작 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인)/대한제국(인)에 대한 지식도, 언어에 대한 사전 준비도 없이 넘치는 선교의욕만으로 선교 일선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입국 후에는 대부분 천주교신자들과 접촉하였지만¹⁾ 선교를 위해서는 정부관리 등 다양한 직업군의 많은 비신자들을 만났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구역을 정기적으로 뿐 아니라 비정기적으로도 방문하였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조선(인)/대한제국(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였는가는 그 시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통로이다.

이원순, 박찬식, 고석규, 최성환의 연구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²⁾ 선행 연구들은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교안들에 관심을 집중하여, 교안 발생의 원인, 경과, 결과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교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선교사들의 인식까지는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지

1) 김진소,《천주교 전주교구사》I, 박벨, 1998, 605쪽.

2) 이원순, <조선말기 사회의 대서교문제 연구 : 교안을 중심으로>,《역사교육》15, 1973 ;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 교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 고석규, <20세기 자은도의 시련과 화해>,《도서문화》21, 목포대 도서관문화연구소, 2003. ; 최성환, <태에 신부 기록을 통해 본 대한제국기 목포항과 섬의 사회상>,《한국학연구》79,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21.

못하였다. 또한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도 다른 지역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교구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고는 조선에서 가장 먼저 선교활동을 전개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서울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선교사들의 인식을 총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활동한 모든 지역을 조사, 분석해야 할 것인데,³⁾ 이는 각 지방에 대한 개별 연구들이 추진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종교적으로도 종교 외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서울과,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적으로는 대한제국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1896년 지방제도의 개정으로 전라도가 전남과 전북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⁴⁾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1911년 4월 8일자 교황회칙에 의하여 대구대목구가 분리 설정된 이후에는 전남지역과 서울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자료는 파리외방전교회의 한국선교책임자인 교구장(조선대목구장)이 파리외방전교회 파리본부에 보낸 연례보고서인 *Compte Rendu de la Société des M.E.P. de Seoul (1878-1938)*, 한국의 각 선교지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조선대목구장에게 보낸 연례보고서, 선교사들과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가 주고받은 편지들, 《뮈텔 주교 일기》(*Journal de Mgr. G. Mutel*) (1890-1932) 등이다. 연례보고서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사업과 그들이 얻은 결과에 관한 것을 기록한 것인데, 선교사업 보고 전에 선교사들이 맡은 지방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다. 선교사들이 주교에게 수시로 보낸 편지들에는 더 많고 자세한 정치적/사회적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다.

2. 교회.정치.근대문물의 서울

서울에 대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의 첫 기록은 1874년 간행된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이다. 조선에서 활동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선교회의 파리본부에 보낸 편지들과 조선 관련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달레의《한국천주교회사》에는 다음과 같이 서울이 묘사되어 있다.

“조정이 늘 있는 수도는 한양이라고 부른다....(중략)....보통 서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큰 도시, 수도라는 뜻이다.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강 근처에 자리잡은 큰 도시로, 높고 두터운 성벽으로 에워싸였으며, 매우 인구가 많으나, 설계가 잘 되지 않았다. 꽤 넓은 몇 줄기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꼬불꼬불한 좁은 길로 되어 있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발에 밟히는 것이라고는 오물뿐이다. 집들은 대개 기와를 입혔지만 낮고 좁다.”⁵⁾

3) 대한제국기에 활동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수는 1897년 31명, 1898년 34명, 1899년 35명, 1900년 39명, 1901년 39명, 1902년 41명, 1903년 42명, 1904년 41명, 1905년 43명, 1906년 45명, 1907년 42명, 1908년 40명, 1909년 48명, 1910년 46명.(한국교회사연구소,《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1985, 322쪽)

4)《고종실록》건양 원년 8월 4일 ; 《관보》건양 원년 8월 6일.

서울은 수도인데 한양이라고도 부르고 그 뜻은 큰 도시라는 묘사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서술이 아니라도 조선을 언급한 글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 서울의 길들이 좁고 구불구불하며 오물이 가득하다는 서술은, 서울의 길을 걸었던 이들에게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 생각된다. 달레가 《한국천주교회사》를 저술할 당시 서울을 걸었던 서양인, 달레가 입수할 수 있는 서양인의 기록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고 선교사들의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달레의 기록을 통하여 1874년 이전에 서울을 경험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서울을 무계획의 도시, 비위생적인 도시라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1) 교회행정의 거점

선교사들에게 서울은 교회행정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서울은 대목구장(주교)이 상주하는 교구청이 있는 곳으로, 조선/대한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가장 먼저 서울에 위치한 교구청에 들러 그들의 도착을 알렸다. 대부분 사제서품을 받은 지 채 1년도 안 되어 선교지로 파견되었던 선교사들은 서울 도착 후 교구청에 한동안 머무르며 조선인/대한제국인 선생과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였고, 서울 도착 1년 이내에 각 지방으로 파견되었다.⁶⁾ 이후 서울 근교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종종 교구청을 방문하였고,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방에 파견된 선교사들도 매년 부활 후 2주일의 주간에 교구청에서 시행되는 선교사 피정을 위해 서울을 찾았다.⁷⁾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든 한국인 성직자이든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서 머무르며 활동하고 싶어 했다. 1893년 약현분당을 맡고 있던 두세(Doucet)⁸⁾ 신부의 편지에 의하면 로베르(Robert), 파스키에(Pasquier), 로오(Rault), 조조(Jozeau) 신부 등이 서울 근처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였다.⁹⁾ 1901년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서 전남의 무안 우적동분당으로 발령난 김승연(金承淵) 신부는, 서울을 떠나게 되어 매우 슬퍼했다.¹⁰⁾ 교회행정을 포함하여 여러 면에서 서울이 중심이고 편리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제국기 서울에는 교구장 뮈텔(Mutel) 주교 외에 사대문 안과 밖의 두 성당을 책임맡은 선교사 2명이 있었다. 1882년에 설립된 문안(종현)분당은 사대문 안을 담당하였고,

5) Dallet, Ch., *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 Paris : Victor Palmé, 1874 : 안응열,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상, 왜관 : 분도출판사, 1980, 67-68쪽.

6) 예를 들면, 드뇌 신부는 1902년 7월 23일 프랑스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1902년 9월 6일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9월 12일부터 방 주사의 지도 아래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였다.(《뮈텔 주교 일기》 1902.9.6., 9.12.) 그리고 1903년 6월경 무안 우적동분당에서 사목활동을 시작하고, 1904년 4월 14일 인천(현 답동)분당의 제4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테에 → 뮈텔, 1903.6.27., 목포 ; 《뮈텔 주교 일기》1904.4.4., 4.14)

7) 김정환,《뮈텔 일기 연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5, 174쪽.

8) 1876년 12월 23일 사제서품, 1877년 1월 25일 한국 입국.

9) 두세→ 뮈텔, 1893.3.27. 약현.(천주교중앙협의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 44쪽)

10) 테에 → 뮈텔, 1901.3.16., 목포. 이하 테에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보낸 편지들은, 목포대학교 도서관 문화연구원에서 총서로 발간하기 위해 번역한 초안을 토대로 하였다. 이 번역 초안을 공유해 주신 목포대학교 최성환 교수께 감사드린다.

1891년 11월 9일에 설립된¹¹⁾ 문밖(약현)본당¹²⁾은 사대문 밖의 서울지역과 경기도 일대, 송도, 황해도 백천 지역의 선교를 담당하였다.¹³⁾

1891년부터 1917년 4월까지 약현본당을 담당한 두세 신부는 대한제국 초기 서울의 상거락을 중국인과 일본인이 장악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살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⁴⁾ 실업과 생활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데,¹⁵⁾ 생활이 매우 어렵고 쌀값이 너무 비싸 지독히 추운 겨울을 보낼지라도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시골로 가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서울에서 살기가 어려워 시골 농촌으로 옮겨간 이들이 많아졌다.¹⁷⁾ 종현본당을 맡고 있던 프와넬(Poisnel) 신부는 서울에 물질문명의 새 바람이 불어닥쳐 성인영세자 수를 감소시킨다며¹⁸⁾ 물질문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약현본당의 두세 신부는 유럽인의 생활태도가 한국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도, 한국인들의 경험과 발전을 폄하하였다. 즉 프랑스인을 성인처럼 여겼던 한국인 신자들이, 그들의 눈으로 직접 프랑스인을 본 후에는 좋게 말하기는커녕 프랑스인이 부끄러워할 얘기도 거리낌없이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공부를 조금 하고 프랑스어를 몇 마디 알고 여행을 조금 다녀본 한국인들이 마치 대단한 존재인 양 한다고 하였다.¹⁹⁾ 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생각이 차츰 종교에서 멀어지는데,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위층에게 잘 보이려고 예비자이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나 훌륭한 신자라고 자처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하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시대가 바뀐 만큼 예전의 편견이 거의 사라졌지만, 대신 현재를 사는 일에 사람들이 몰두한다고 하였다.²⁰⁾

사람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는 원인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방랑벽을 시골로의 이주 원인으로 언급하여, 이주의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주의 원인을 희석/왜곡시켰다. 특히 하와이로 떠난 한국인들의 이주 원인은 넘치는 모험심 때문인데 고생할 것이고 서울에서 모범적인 신자의 삶을 살지 않았으니 하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²¹⁾ 한국인들의 하와

11)《뫼텔 주교 일기》1891.11.9. ; 약현본당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중립동 약현성당 100주년사 자료집 : 약현본당 백년사 : 1891-1991》, 1992, 19쪽.

12) 1887년 제7대 조선대목구장 블랑 주교가 남대문 밖 수릿골(현 순화동)에 약현공소 시작.

13) 천주교중립동교회, 《약현본당의 공소와 교세통계표(1891-1991)》, 가톨릭출판사, 1991, 19쪽.

14) 두세→뫼텔, “1896년 약현본당 연말보고”, 1896.7.28. 약현.(천주교중립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85-86쪽)

15) 두세→뫼텔, “1897-1898년 약현본당 연말보고”, 약현.(천주교중립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 107쪽)

16) C-R, 1897.

17) 두세→뫼텔, “1899년 약현본당 연말보고”, 1899.8.1., 약현.(천주교중립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 114쪽)

18) C-R, 1899.

19) 두세→뫼텔, “1902년 약현본당 연말보고”, 약현.(천주교중립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 152-153쪽)

20) 두세→뫼텔, “1903년 약현본당 연말보고”, 1903.7.1., 약현.(천주교중립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 162-163쪽)

21) 두세→뫼텔, “1904년 약현본당 연말보고”, 1904.6.1.5, 약현.(천주교중립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이 이주²²⁾ 원인을 한국의 총체적인 상황과 함께 파악하지 않고, 이주자 개인의 모험심으로 돌린 것은 선교사의 인식 한계이다.

한국인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였다. 그런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그 원인을 한국인들의 이주 방랑벽으로 돌리거나 외면하였다. 그러나 1911년 한국을 방문한 베네딕도수도회의 아빠스 베버(Weber)는, 국력 신장과 세속적 부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위해 분투노력하는 일본인의 물질주의적 정신은 선교 프로그램에 경제적·학문적 사안들을 보다 더 많이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²³⁾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에는 일본인들을 모방하려고 하고, 더 이상은 선교사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선교사들과 멀리 하는 것이 '새 주인' 일본인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이라 여긴다고 묘사하였다.²⁴⁾ 그런데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한국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기까지의 상황,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하게 된 한국인들의 사정을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고민하였다면 보다 바람직한 선교의 방향과 방법이 모색·제시되었을 것이고, 신자들은 물론 한국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고통받는 한국인들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선교였기 때문이다.

서울에는 주교와 두 본당의 선교사들 외에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 1887년 3월 여주 부영골에서 용산으로 이전한²⁵⁾ 예수성심신학교를 전담한 선교사는 1896년 3명, 1900년 2명, 1902-1907년 2명, 1908-1913년 3명이였다.²⁶⁾ 이들은 자주 교구청을 찾아 교구장과 신학교 문제를 의논하였고, 교구장도 신학교를 자주 방문하였다.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다양한 면들에 대한 것들도 있었을 것인데 기록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런데 1911년 한국을 방문한²⁷⁾ 베네딕도수도회의 아빠스 베버는 용산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인력거가 종횡무진하는 서울에서 일본인들이 무섭도록 상권을 장악해가고 있다고 서술하였다.²⁸⁾ 그리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함께 살 수 없고 함께 살고 싶어 하지도 않기에, 서울을 벗어나지 않으려 신자들이 백동의 베네딕도수도원 가까이로 온다고 하였

약현관계 자료》, 173-175쪽)

22) 공식적인 하와이 이주는 1903년이고,(방선주, <한인 미국이주의 시작 - 1903년 공식이민 이전의 상황진단>,<미주지역 한인이민사>, 국사편찬위원회, 2003) 1898년 1월 8일 김청유(한약상) 등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이덕희 지음, 《하와이 이민 100년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중앙 M&A, 2003, 16쪽)

23)《고요한 아침의 나라》, 175-176쪽.

24) 두세→ 뫼텔, “1911년 약현본당 연말보고”, 1911.7.19., 약현.(천주교충림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 224쪽)

25) C-R, 1887.

26)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편찬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 : 188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27) 1911년 2월 21일 부산으로 입국, 서울 백동수도원에 도착하였고,(《뫼텔 주교 일기》1911.2.21.) 그해 6월 24일 부산에서 출국. 2월 23일 독립문, 2월 25일 홍릉, 3월 4일과 8일 대한의원, 3월 11일 에커트 음악학교, 3월 14일 북묘, 3월 15일 동묘, 5월 2일 뚝섬 원예모범장, 5월 6일 일제공업학교를 방문.(노르베르트 베버 지음, 박일영·장정란 옮김,《고요한 아침의 나라》, 분도출판사, 2012)

28)《고요한 아침의 나라》, 59, 67쪽.

다. 또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점점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여 한국인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²⁹⁾ 한국인들이 서울에서 완전히 내몰리지 않도록 베네딕도회수도원이 위치한 백동에 한국인들의 거주지를 마련해주는 것이 베네딕도회수도원에 주어진 과제라고 하였다.³⁰⁾

베버는 또한 용산 거주 일본인이 만 명인데 그중 대부분은 군인이고, 철도 종사자와 산업체 직원도 많다고 하였다.³¹⁾ 그리고 일본인들이 용산을 시발점으로 하는 수도를 꿈꾼다면, 용산역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종착역이라 하였다.³²⁾ 일본인들은 1889년부터 용산지역에 거주하였고, 러일전쟁 이후 군용지 명목으로 용산과 이태원 일대에 300만 평의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등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켰다.³³⁾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용산을 신학교가 있는 곳,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서울 안에서의 이동,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때 전차와 기차를 타는 곳으로만 의미 부여를 하였다.

1836년부터 조선에 들어와 오랜 동안 상당수의 선교사들이 활동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선교사들과, 1908년 한국에 입국하여 교육 선교를 펼친 베네딕도회 선교사의 서울 인식은 이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베네딕도회 선교사는 용산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서울을 장악해간다고 파악하였는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의 기록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해준다.

2) 정치의 중심

서울은 선교사들에게도 정치의 중심이었다.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선교활동을 펼친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정치는 그들의 선교 대상인 한국인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를 위해 선교사들이 자주 그리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서울 소재의 첫 번째 정치적 기관은 프랑스공사관/영사관이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1888년 5월 서울에 도착하여 1906년 1월 프랑스공사관이 철수할 때까지 프랑스공사로 활동한 플랑시(Plancy, 葛林德), 그 이후에는 베르토(Berteau)³⁴⁾ 등 프랑스영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제8대 조선대목구장으로 임명된 뮈텔 주교는 1891년 2월 23일 서울의 교구청에 도착하였고, 다음날 플랑시 공사를 방문하였다.³⁵⁾ 이후 뮈텔 주교는 선교사들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공사관을 자주 방문하였고, 프랑스공사 플랑시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1891년 3월 8일 대구에서 로베르(Robert) 신부를 추방한 사

29)《고요한 아침의 나라》, 175-176쪽

30)《고요한 아침의 나라》, 67쪽.

31)《고요한 아침의 나라》, 113-114쪽.

32)《고요한 아침의 나라》, 489-490쪽

33) 한동수,〈서울 용산 지역의 도시화과정에 관한 연구 : 개항 이후부터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한국 도시설계학회지》6-4, 2005, 28쪽.

34) 뮈텔 주교는 1906년 1월 6일 플랑시 공사가 떠나고 베르토가 그 임무를 이어받았다고 하였다.《뮈텔 주교 일기》1906.1.6.)

35)《뮈텔 주교 일기》1891.2.24.

건에³⁶⁾ 대한 보고서를 보내 배상을 요청하고,³⁷⁾ 1901년 3월 27일 황해도의 신자들과 김문옥 신부 고소 건에 대한 회답을 보냈으며,³⁸⁾ 1901년 5월 12일 뒤테르트르(Dutertre) 신부 관련 사건으로 플랑시 프랑스공사를 방문하였다.³⁹⁾ 프랑스의 국경일인 7월 14일에는 프랑스공사관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1901년 7월 14일의 공식 접견 때는 뮈텔 주교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을 소개하였다.⁴⁰⁾ 프랑스 현지의 정치 상황을 알기 위해서도 프랑스영사관을 방문하였는데, 1906년 5월 11일의 영사관 방문은 5월 6일에 있었던 총선이 공금해서였다.⁴¹⁾

선교사들도 프랑스공사관/영사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 프랑스공사관을 찾았는데, 1905년 6월 15일 서울에 도착한 줄리안(Julian) 신부는 다음날 프랑스공사관에 인사를 갔다.⁴²⁾ 1909년 2월 9일 도착한 뤼카(Loucas) 신부도 등록을 위해, 도착 다음날 프랑스영사관을 방문하였다.⁴³⁾ 선교사들은 여권 문제도 프랑스영사관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1909년 1월 5일 뮈텔 주교는 라리보(Larribeau) 신부의 여권을 부탁하기 위해 프랑스영사관을 방문하였다.⁴⁴⁾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면에서 통감부/조선총독부 등 일제의 식민통치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⁴⁵⁾ 을사조약 체결 이후 대한제국에는 대한제국 정부와 통감부가 병존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1886년 조선정부와 한불조약을 체결하여 프랑스인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을 획득하였고, 1889년 3월 9일 교민조약을 체결하였다. 대한제국 내부 지방국장 정준시와 한국천주교회의 대표 뮈텔 주교가 맺은 교민조약은 지방 행정관이 교회 일에 간여할 수 없고, 선교사도 행정에 간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⁴⁶⁾ 이어 1904년 6월 9일 프랑스공사와 대한제국 외부대신이 체결한 선교약조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인을 강제로 입교시킬 수는 없지만, 토지를 매입하고 가옥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⁷⁾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1905년 12월 21일 통감부 관제가 발표된⁴⁸⁾ 이후 선교사들은 일제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을 기울였다. 뮈텔 주교는 1906년 1월 6일 일기에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부임 예정일을 기록하고, 일본영사관 관원들이 소환되고 통감부 관원으로 대체될 것이라 하였다.⁴⁹⁾ 이어 한국이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고,⁵⁰⁾ 일본

36) 이에 대해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발자취》, 천주교 대구대교구, 2012, 44-45쪽 ; 영남교회사연구소,《대구의 사도 김보록(로베르) 신부 서한집》1, 대건출판사, 1995 참조.

37)《뮈텔 주교 일기》1891.3.8.

38)《뮈텔 주교 일기》1901.3.27.

39)《뮈텔 주교 일기》1901.5.12.

40)《뮈텔 주교 일기》1901.7.14.

41)《뮈텔 주교 일기》1906.5.11.

42)《뮈텔 주교 일기》1905.6.15., 6.16.

43)《뮈텔 주교 일기》1909.2.10.

44)《뮈텔 주교 일기》1909.1.5.

45) 1909년 4월 3일의 동양척식회사 개원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였다.(《뮈텔 주교 일기》1909.4.3.)

46) 교민조약에 대해서는 최종고,〈한국에 있어서 종교 자유의 법적 보장 과정〉,《교회사연구》3, 1981 ; 이원순,〈한불조약과 종교 자유의 문제〉,《교회사연구》5, 1987 ; 박찬식,〈한말 교안과 교민조약-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교회사연구》27, 2006 참조.

47)《제국신문》1904.6.6., “선교조약”.

48)《대한매일신보》1905.12.22., “통감부관제”.

공사관 앞의 국기 게양대에 푸른 바탕에 일본 국기가 그려진 통감부 기가 게양되었다고 하였다.⁵¹⁾ 또한 통감의 성대한 취임식에 초대받아 참석하였는데 친근감을 보인 이토 통감과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다.⁵²⁾

뮌텔 주교는 통감부 설치에 한국인들은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에서도, 의병들의 투쟁은 “새로운 상황에 항거한다는 이유 이외에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떤 반응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많은 한국인들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려 강자인 일본인들이 후원하는 단체에 가입하여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려 한다고 하였다.⁵³⁾

뮌텔 주교 등 선교사들은 거의 매년 1월 1일 통감부를 방문하였고,⁵⁴⁾ 통감부에서 개최되는 리셉션에 자주 참석하였는데,⁵⁵⁾ 한국을 방문한 일본 황태자를 위한 방명록에 기명하기 위해서도 통감부를 찾았다.⁵⁶⁾ 통감의 한국 방문을 역으로 마중 나갔고,⁵⁷⁾ 교회 관련 일들에 도움을 받기 위해 통감부를 찾았으며,⁵⁸⁾ 신자들의 자위단 가입을 권유했다며 통감부 정책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⁵⁹⁾ 또한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직자들의 명단이 필요하다는 통감부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고,⁶⁰⁾ 토지와 가옥의 등기를⁶¹⁾ 위해서도 통감부를 찾았다.⁶²⁾

‘한일합병조약’이 강제된 1910년 8월 22일, 늘상 통감부 기가 게양되었던 깃대에 날씨가 좋은데도 9시 30분까지 어떤 기도 게양되지 않았다고 뮌텔 주교는 기록하였다.⁶³⁾ 통감부의 외적인 변화에도 언제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8월 29일자 일기에는, 각 신문에 수록할 ‘한일합병’ 관련 법령·포고문 등을 통감부에서 총지휘하고, ‘합병조약’이 통감부가 아닌 《총독부 관보》제1호로 발표되었다며 일제의 통치기관이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변경되었음을 주목하였다.⁶⁴⁾ 이어 대한이라는 국호가 폐지되고 조선이란 이름으로 대체되었으며, 그 칭호를 사용하던 모든 신문들이 그 이름을 폐지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바꾸었고,⁶⁵⁾ 총독부에서 제공하는 소식만을 보도해야 한다고 하였다.⁶⁶⁾

49)《뮌텔 주교 일기》1906.1.6.

50)《뮌텔 주교 일기》1906.2.1.

51)《뮌텔 주교 일기》1906.3.3.

52)《뮌텔 주교 일기》1906.3.28.

53) *Compte Rendu de la Société des M.E.P. de Seoul (1878-1938)*, 1906. 이하 C-R로 표기.

54) 명함을 남겼다.(《뮌텔 주교 일기》1908.1.1., 1909.1.1., 1910.1.1.)

55)《뮌텔 주교 일기》1906.9.12., 11.3., 1909.5.15., 1909.7.10., 1910.5.17.

56)《뮌텔 주교 일기》1907.10.18. 황태자 요시히토(嘉仁)가 1907년 10월 16일 서울에 도착.

57)《뮌텔 주교 일기》1909.6.22.

58)《뮌텔 주교 일기》1906.6.28., 10.16, 10.25.

59)《뮌텔 주교 일기》1908.1.10.

60)《뮌텔 주교 일기》1908.11.19.

61) <토지가옥증명규칙>(1906.10.16.)은 거래계약을 관에서 증명하였고,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8.1)은 <토지가옥증명규칙>(1906.10.16.) 시행 이전 잠매되었던 외국인 소유 부동산을 (대한제국)정부가 공부(公簿)로 소유권 보존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것인데(《관보》1908.7.20.,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관한 건”) 이에 대한 것들이 통감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62)《뮌텔 주교 일기》1908.12.24., 1909.3.26., 10.20., 12.24.

63)《뮌텔 주교 일기》1910.8.22.

64)《뮌텔 주교 일기》1910.8.29.

65) 예를 들면 1904년 7월 18일 창간된 《대한매일신보》는 한일합병조약 체결 이후 《매일신보》로 전환되었는데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고, 1898년 8월 창간된 《제국신문》은 강제 폐간되었다.

66)《뮌텔 주교 일기》1910.8.30.

‘한일합병’에 대하여 선교사들은 을사조약 체결 때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즉 일제의 ‘한국보호정책’이 한일합병에 이르렀고, 이에 한국인들이 저항하지 않을까 두려웠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평화롭게’ 합병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일제당국의 엄격하고 치밀한 치안 때문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체념 때문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불가항력의 상황 앞에서 지혜롭게 굴복한 것이라 하였다.⁶⁷⁾ 국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과 모습을 체념이라 하였을 뿐,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한 일제와 일제식민통치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 체념의 태도를 보였다. 일제의 한국 주권 침탈이 불의한 행동이었고, 그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이고,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선이었음에도 선교사들은 그에 침묵하였다. 새로운 통치권자 일제와의 협력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때문이었다.

3) 근대문물의 시작.수혜지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에게 서울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근대문물이 시작되는 곳, 근대화가 향유되는 곳이기도 하였다. 근대문물 중 선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인 것은 통신시설과 교통시설, 의료기관이었고 박람회와 강연회였다.

서울의 근대적인 교통수단은 전차와 기차였다. 1899년 5월 1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기계고장으로 취소된⁶⁸⁾ 동대문 ↔ 흥화문을 운행하는 전차가 5월 4일 시범 운행되었다.⁶⁹⁾ 전차는 5월 20일부터 정식 운행되었는데⁷⁰⁾ 선교사들은 5월 24일에 시승하였다.⁷¹⁾ 이후 전차는 선교사들에게 일상적인 교통수단이 되어⁷²⁾ 용산예수성심신학교.프랑스공사관/영사관까지 이동할 때 적극 이용하였다.⁷³⁾ 특히 용산선(종로 ↔ 용산)은 1901년 1월 1일부터 12분마다 운행되었는데⁷⁴⁾ 정기적으로 용산예수성심신학교를 방문한 뮌헨도, 그곳을 방문하는 선교사들도 큰 도움을 받았다. 경복궁 ↔ 서대문 구간은 명성황후의 묘가 있는 홍릉까지 연결되었으므로 그곳으로의 산책을 즐기던 뮌헨 주교에게 좋은 교통편이 되었다.⁷⁵⁾ 그런데 선교사들이 적극 이용하였고 선교사들의 이동에 큰 도움이 되었던 전차가, 한국인들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전차가 어린이를 치었고, 사람들은 전차에 가뭇의 원인이 있다며 전차를 불태우고 전복시켰다.⁷⁶⁾ 전차 요금이 인상된 후에는 더욱 부정적이었다.⁷⁷⁾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전차를 뒤엎고 부수는 것을 보았고, 전차 운전수가 내리다가 깔려 죽는 것도 보았다.⁷⁸⁾ 선교사들은 근대문물 전차를 선교를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인

67) C-R, 1910.

68)《뮌헨 주교 일기》1899.5.1.

69)《황성신문》1899.5.4., “電車停試” ; 5.5., “電車試行” ; 5.6., “電車試驗”.

70)《황성신문》1899.5.19., “電車運行”.

71)《뮌헨 주교 일기》1899.5.25.

72) 김정환,《뮌헨 일기 연구》, 내포교회사연구소, 2015, 166쪽.

73)《뮌헨 주교 일기》1901.10.28., 1902.1.16.

74)《뮌헨 주교 일기》1901.12.30.

75)《뮌헨 주교 일기》1905.4.28.

76)《뮌헨 주교 일기》1899.5.26.

77)《뮌헨 주교 일기》1902.1.30.

식하였고 적극 활용하였을 뿐, 전차가 서울 사람들의 삶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그다지 생각하지 않았다.

전차와 더불어 선교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진 것은 철도였다. 1899년 9월 15일로 예정되었던 노량진 ↔ 인천(제물포)의 철도 개통식은⁷⁹⁾ 9월 18일 진행되었는데, 프와넬 신부와 비에모(Villemot) 신부가 참석하였다.⁸⁰⁾ 이 노선이 개통됨으로써 용산에서 뱃길을 이용해 제물포를 왕래하던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종현의 교구청에 거주한 뮌텔 주교와 선교사들은 전차를 이용해 용산까지 이동한 후,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 노량진으로 가서 제물포행 기차를 이용하였다.⁸¹⁾ 1900년 7월 8일에는 서울역 ↔ 제물포의 전구간이 개통되어 서울에서 제물포까지 2시간 정도 걸렸다.⁸²⁾ 제물포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제물포에서 출항하는 배를 이용하여 군산, 목포, 제주, 좌수영, 삼천포, 통영, 마산포, 부산, 염포, 포항, 원산, 서호, 신포, 신창, 차호, 성진, 명천, 경성 등 국내의 여러 항구로 이동하였고,⁸³⁾ 일본의 나가사키(長崎)까지도 갈 수 있었다⁸⁴⁾

한편 뮌텔 주교는 1901년 8월 20일 영등포에서 진행된 경부선 철도 기공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진정 몰수인지, 단지 일본에 대한 조선의 실권(失權)을 예방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⁸⁵⁾ 1905년 5월 25일의 철도 개통식에 초대받아 참석하였는데 900인분의 점심식사가 마련된 개통식이 질서있고 서비스도 좋았으며 그래서 완전히 성공적이었다고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⁸⁶⁾ 그런데 다음날 조선정부 측에서 전날의 답례차 마련한 모임에 초대를 받아 프와넬, 비에모와 함께 참석한 자리는 매우 무질서하였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⁸⁷⁾

전차, 철도와 함께 선교사들이 관심을 기울인 근대시설은 전기였다. 1901년 8월 17일 거행된 서울시의 전기 점화식을 언급하며 그동안은 발전기 1대를 가동시킬 수 있는 200마력의 기계 한 대뿐이었는데, 전기를 켜기 위해 200마력의 기계 두 대를 추가하여 발전기를 두 대 가동시켰다고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전등이 모자라서였던 건 고의에서였던 건 거리에 켜진 전등은 10여 개 정도로 매우 적었다고 하였다.⁸⁸⁾ 또한 약 4개월 후, 길에 있는 모든 전주에 전기가 가설된 것은 상인들이 값을 지불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라 하였다.⁸⁹⁾ 선교사들의 삶에 긴요한 것이 의료시설이었다. 뮌텔 주교는 선교사들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의료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04년 세브란스병원의 개원식에 참석하였는데 한국인 환자들을 위한 자선병원이라 설명하였다.⁹⁰⁾ 지방에서 활동

78)《황성신문》1904.1.25., “차부낙사”.

79)《뮌텔 주교 일기》1899.9.13.

80)《뮌텔 주교 일기》1899.9.22.

81)《뮌텔 주교 일기》1900.4.16.

82)《뮌텔 주교 일기》1905.7.29.

83)《독립신문》1897.10.5., “세창양행”.

84)《독립신문》1898.8.4., “세창양행 제물포”.

85)《뮌텔 주교 일기》1901.8.20.

86)《뮌텔 주교 일기》1905.5.25.

87)《뮌텔 주교 일기》1905.5.26.

88)《뮌텔 주교 일기》1901.8.17. ;《황성신문》1901.8.19., “전등시점”.

89)《뮌텔 주교 일기》1902.1.3.

90)《뮌텔 주교 일기》1904.11.16.

중인 선교사들은 지방의 한의사들과 한약을 먼저 이용하였고, 이어 서울로 가서 분쉬⁹¹⁾ 박사와 대한의원⁹²⁾의 도움을 받았다. 따라서 서울의 선교사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선교사들보다 먼저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뮌텔 주교는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으며, 적극 활용하였고 도움을 받았다.

선교사들은 서울에 마련된 근대적인 박물관 등의 근대문화시설도 활용하였다. 뮌텔 주교는 1906년 6월 용산예수성심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광무(鑛務)학교⁹³⁾에 있는 박물관을 구경갔다. 1907년 9월에는 교구청 맞은편에서 열리는 경성박람회⁹⁴⁾의 공식 개막식에 참석하였고,⁹⁵⁾ 1909년 11월에는 새로 설립된 자연사 박물관⁹⁶⁾ 구경을 갔다.⁹⁷⁾ 서울에서는 강연회도 많이 개최되었는데, 강연회에도 참석하였다. 1907년 5월 YMCA에서 개최된 조지 트럼블 교수의 강연에 참석한 뮌텔 주교는 연합회 간사 외에는 청중이 모두 한국인이었고, 미국인은 없었다면서 한국어 통역 내용은 영어로 진행된 강의 내용과 전연 달랐다고 하였다.⁹⁸⁾ 기록에서 찾을 수 있는 박물관 관람과 강연회 참석 등은 뮌텔 주교의 기록뿐이지만, 서울과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선교사들도, 선교사 피정을 위해 서울에 온 지방의 선교사들도 박물관을 관람하고 강연회에 참석하였으리라 생각된다.

3. 외지고 배타적인 전남

전남은 서울(수도) 이외의 지역이기에 지방이다. 선교사들은 한반도의 이 지방 저 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대한제국기 전남지역에 상주하며 활동한 선교사는 데예(Deshayes Albert, 曹有道), 투르뇌(Tourneux, Victor Louis, 呂東宣), 카다르 신부이다. 뮌텔 주교가 사목방문을 하였고, 몇몇 선교사들도 전남지역을 방문하였다. 이들의 기록을 통하여 전남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를 살펴보자.

1)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시골

한국천주교회사에서 천주교신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교우촌(敎友村)이 형성된 것은 1791년(정조 15)의 진산사건으로 박해가 본격화된 이후였다. 각 교우촌은 1830년대 이후

91) 190.11.2 도착. 황실 시의. 1905년 4월까지 활동.(이영석, <구한말 대한 독일인의 한국 이해 -오페르트, 필렌도르프, 분쉬의 경우>, 《독일어문학》37, 한국독일어문학회, 2007, 274쪽)

92)《뮌텔 주교 일기》1902.4.5.

93) 1900년 4월 광업계통의 실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1907년 폐교.(황성신문 1900.9.7., “칙령 제31호 광무학교관계”)

94) 1907년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대한매일신보》1907.8.11. “박람회참관” ; 《황성신문》1907.8.31. “경성박람회”)

95)《뮌텔 주교 일기》1907.9.15.

96) 1909년 5월 24일 문을 연(《대한매일신보》1909.5.26. “박물관 개시”) 창경궁 내의 이왕가박물관과 동식물원이라 생각된다.

97)《뮌텔 주교 일기》1909.11.20.

98)《뮌텔 주교 일기》1907.5.3.

선교사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공소(公所)⁹⁹⁾로 발전하였고, 신앙의 자유가 이루어진 뒤에는 각 본당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¹⁰⁰⁾

전라도에 산재한 공소들은 몇 개의 도를 순회하는 성직자가 방문하였는데, 1795-1801년 중국인 주문모 신부, 1837-1839년 샤스탕 신부, 1846-1849년 다블뤼 신부, 1850-1861년 최양업 신부, 1862-1866년 리델 신부였다. 리델 주교가 제작한 지도에 의하면 1860년대에는 전국 153개 지역에 공소가 있었는데, 전라도의 남부(현 전남)에는 곡성, 광주, 구례, 남평, 옥과, 장성, 창평, 해남에 공소가 있었다.¹⁰¹⁾

1866년의 병인박해 이후 10년 동안 선교사들의 전라도 공소 방문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1874년에 간행한 달레의《한국천주교회사》에서 전라도에 대한 선교사들의 묘사를 찾을 수 있다. 전라도의 수부 즉 감사의 주재지는 전주이고,¹⁰²⁾ 좌도(左道) 21군, 우도(右道) 56군이라며, 각 부(府).군(郡)이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표시하였다.¹⁰³⁾

1877년 10월경 블랑(Blanc) 신부가 고산 어름골에 거처를 정함으로써 전라도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정착하였다.¹⁰⁴⁾ 선교사들은 그들이 펼친 선교활동을 연례보고서.편지 등으로 남겼는데, ‘1882-1883년’부터의 <교세통계표>가 남아 있다.¹⁰⁵⁾ 연도별.선교사별.공소별로 작성한 <교세통계표>에 의하면, 전라도의 남부(현 전남)지역을 담당한 선교사는 다음과 같다.

99) 1908년부터 나주본당(현 노안본당)에서 활동한 카다르 신부는 프랑스 전교회에 보낸 글에서, 공소라는 한국어에 상응하는 프랑스어를 찾지 못했다면서, 회장을 중심으로 조직된 신자단체를 뜻한다고 하였다. (“카다르 신부의 편지”, 《가톨릭선교》1912년 2225호. (《부산교회사보》116호, 2024년 겨울, 114쪽)

100)《천주교 전주교구사》I, 473쪽 ; 차기진, “교우촌”, 《한국가톨릭대사전》1, 한국교회사연구소, 624-625쪽.

101)《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발자취》, 52쪽.

102)《한국천주교회사》상, 68쪽

103) 오늘날의 전남 지역에 해당하는 부.군은 다음과 같다. 좌도 : 순천 796리, 담양 676리, 장성 666리, 보성 성읍 851리, 낙안 786리, 창평 706리, 광양 성읍 821리, 옥과 666리, 구례 성읍 766리, 곡성 676리, 동북 726리, 화순 756리, 홍양 성읍 896리. / 우도 : 나주 성읍 740리, 광주 성읍 726리, 장흥 880리, 영암 성읍 810리, 영광 성읍 710리, 진도 성읍 1,026리, 강진 성읍 866리, 함평 770리, 남평 740리, 무안 796리, 해남 성읍, 890리.(《한국천주교회사》상, 84-86쪽)

104)《천주교 전주교구사》I, 383-384쪽.

105) 1882년 이전 신도들의 분포를 밝힐 수 있는 자료는 없다.(《천주교 전주교구사》I, 410쪽)

선교사	사제서품일	한국도착일	전남지역에서의 활동기간
리우빌(Liouville)	1878.3.16.	1880.11.12.	1883-1887년
프와넬(Poisnel)	1879.6.29	1883.4.15.	1884-1885
조시(Josse)	1875	1883.10.1	1884-1885
라푸르카르(Lafourcade)	1886.9.26	1887	1887-1888
베르모렐(Vermorel)	1887.9.24	1888.1.14	1888-1893, 1898-1904, 1910-1911
보두네(Baudounet)	1884.9.20	1885.10.26	1888-1904, 1910-1911.
우도(Oudot)	1888.9.22	1890.10.24	1892-1894
비에모(Villemot)	1892.3.12.	1892.6.18	1894-1897
쥬조(Jozeau)	1888.9.2.	1889.2.16	1894
라크루(Lacrouts)	1894.7.1.	1894.10.25.	1896-1904, 1910-1911
미알롱(Mialon)	1896.6.28	1896.8.18	1898-1904, 1910-1911
데예(Deshayes)	1896.6.28	1896.10.13.	1898-1909,
페네(Peynet)	1897.3.13.	1897.7.20	1901-1904, 1910-1911.
드뇌(Deneux)	1896.12.19	1902.9.6.	1903-1904
투르뇌(Tourneux)	1903.6.21.	1903.10.8.	1904-1912
카다르(Cadars)	1906.6.14.	1909.1.28	1909-1920
베르몽(Bermond)	1905.6.29.	1905.10.11.	1910-1911

전남지역에 파견된 선교사들과 서울의 교구청에 거주하는 뫼텔 주교의 상호연락은 편지와 전보를 통해서였다. 1897년 7월 목포에 도착한 데예 신부는 서울에서 보낸 편지를 12일 후에야 목포의 한국우체국을 경유하여 받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¹⁰⁶⁾ 그리고 목포는 제물포에서 20시간 거리로, 부산만큼이나 멀다고 하였다.¹⁰⁷⁾ 목포 지방의 관습도 풍습도 잘 모르고, 몇 마디 한국말만을 더듬거릴 뿐인데,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없이 왜 멀리까지 와야 했는가 라고 혼잣말을 한다며¹⁰⁸⁾ 데예 신부는 하소연하였다.

그런데 1897년 10월 23일 서울 ↔ 목포 간 전선이 가설되었고,¹⁰⁹⁾ 11월 1일에는 목포에 우체사가 설치되었다.¹¹⁰⁾ 1899년에는 일본 체신성도 목포에 우편국 출장소를 설치하였다.¹¹¹⁾ 개항된 목포에 근대적인 통신 시설이 마련되고 있었다. 1901년 6월 선교사 무세(Mousset)가 목포에서 4시 30분에 발송한 전보는 그날 8시 30분 서울의 교구청에 도착하였다.¹¹²⁾ 걸린 시간은 3시간 40분이었다. 1907년 4월에는 목포에서 3시에 발송한 전보가 5시경 서울의 교구청에 도착하였다.¹¹³⁾ 전보를 통한 전남지역과 서울 간의 연락 시간은 단축되었고,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은 전보를 통하여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목포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목포에서 배편으로 인천(제물포)까지 이동하였고,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노량진 ↔ 인천 구간이 개통된 후에는 철도를 이용하여 인천에서 노량진까지, 1900년 7월 5일 한강철교가 완공되고, 7월 8일 경인선 전 구간이 개통된 이후

106) 데예 → 뫼텔, 1898.7.12., 목포.

107) 데예 → 뫼텔, 1897.10.31., 아천리.

108) 데예 → 뫼텔, <1897-1898년 보고서>(목포).

109)《관보》1897.10.25., “公州電報司와 전주전보사와 무안전보지사를 설치함.”

110) 더불어 나주 우체사는 광주군으로 이설되었다.《관보》1897.11.3., “농상공부령 제17호”

111)《황성신문》1899.6.21., “郵局增設”.

112)《뫼텔 주교 일기》1901.6.10.

113)《뫼텔 주교 일기》1907.4.16.

에는 제물포에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이용하였다.¹¹⁴⁾

목포에서 제물포까지의 선편은 1897년 1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화륜선(火輪船)이 있었다.¹¹⁵⁾ 인천을 출발한 화륜선 현익호와 창룡호는 목포 항에 기항하였고,¹¹⁶⁾ 일본 나가사키(長崎)까지 운행되었다.¹¹⁷⁾ 그래서 목포본당의 데예 신부는 주 2회 제물포에서 목포까지 운행하는 증기선이 있다고 하였다.¹¹⁸⁾ 그럼에도 전남(제주도 포함)의 선교사들이 서울에 도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선교사들은 매년 서울에서 진행되는 선교사 피정에 참석했는데, 1902년 전라도 지역의 신부들은 피정이 시작된 4월 12일에야 제물포에 도착하였고, 제주에서 출발하여 목포를 경유하는 라크루 신부와 무세 신부는 피정이 끝나기 전날인 4월 18일에야 서울의 교구청에 도착하였다. 뮌텔 주교는 제주, 목포, 전라도 지역의 선교사들이 피정 시작 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것은 춥고 북풍까지 세차게 분 때문일 것이라 하였다.¹¹⁹⁾ 피정에 늦은 이유가 불편한 교통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다. 1907년에도 제주와 목포의 선교사들은 피정 시작 전 서울의 교구청에 도착하지 못했다. 목포본당의 데예 신부, 우적동본당의 투르뇌 신부, 제주에서 활동 중인 라크루 신부와 타게 신부가 4월 16일 목포에서 배에 탑승하였다고, 목포에서 3시에 보낸 전보를 뮌텔 주교는 5시경에 받았다. 그러나 그날 배는 이미 떠났고, 그래서 선교사들은 4월 19일에야 배에 탑승한다는 내용의 전보가, 10시 10분 목포에서 발송되었고 뮌텔 주교는 11시 45분에 받아보았다. 선교사들은 4월 20일 서울의 교구청에 도착하였는데, 배를 놓친 것이 아니라 자리를 구하지 못해¹²⁰⁾ 목포에서 늦게 출발하였고 그래서 교구청 도착도 늦었다. 목포에서 제물포까지 운행하는 증기선이 있었지만, 편수가 많지 않았고 자주 운행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다.

서울에서 전남지역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뮌텔 주교는 19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전남지역을 사목방문하였다. 10월 13일 세관에 들러 목포행 배가 언제 있는가를 알아보았고,¹²¹⁾ 10월 17일 서울에서 11시 기차에 탑승하여 정오에 제물포에 도착하였다.¹²²⁾ 목포행 배는 조수 때문에 먼 바다로 나가 있었고, 뮌텔 주교는 중국 베이징행 배에 탑승하기 위해 세관의 대형보트를 이용하려던 지인의 배려로 12시에 목포행 배에 탑승하였다. 목포행 배는 베이징행 배가 출항한 후 15시에야 제물포항을 출발하였고,¹²³⁾ 다음날 10시경 목포에 도착하였다.¹²⁴⁾

전남지역의 첫 본당인 목포본당에 임명되었지만, 목포에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순창 아천리공소에 머물렀던 데예 신부는 1898년 7월 2일 목포에 도착하였고, 목포를 상당히 부

114)《황성신문》1900.7.5. “기차전통 경인철도합자회사”.

115)《독립신문》1896.12.29., “혈익환”.

116)《독립신문》1897.3.30., “세창양행” ; 1897.8.28., “세창양행”.

117)《독립신문》1897.11.6., “세창양행 제물포”.

118) 데예 → 뮌텔, 1898.8.16., 목포.

119)《뮌텔 주교 일기》1902.4.12.13.15.18.

120)《뮌텔 주교 일기》1907.4.15.16.20.

121)《뮌텔 주교 일기》1905.10.13.16.17.

122)《뮌텔 주교 일기》1905.10.13.16.17.

123)《뮌텔 주교 일기》1901.2.18

124)《뮌텔 주교 일기》1905.10.17.

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새롭게 열린 항구 목포는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데, 무너져가는 몇몇 초가집들이 있는 폐허지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떻게 왜 이런 곳에 항구를 열려는 생각을 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감히 말하려 하지 않는다, 탐사를 온 전함의 사령관은, 목포는 '바다의 수심이 비교적 고르고, 움직이는 모래가 없고,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고, 일본과는 20시간, 중국과는 2일의 거리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지닌 곳'이라 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²⁵⁾

데에 신부는 전남에서도 선교를 위한 이동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다. 1898년 12월 12일 데에 신부는 연례 성사집행 여행을 시작하였는데 눈이 내리고 북풍이 불어 추위 때문에 말을 탈 수 없었고, 그래서 첫 교우촌까지 3일 동안 눈길을 헤쳐 걸어갔다고 하였다.¹²⁶⁾ 12월이므로 추웠을 것이고, 눈도 쌓였을 것이다. 목포에서 출발한 데에 신부가 첫 교우촌까지 가는데 3일 동안 눈길을 헤쳐 걸어갔다는 곳은 아마도 전북지역일 것이고, 목포에서의 거리는 상당하다. 목포본당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전북지역의 공소들도 책임맡고 있었고, 당시에는 목포본당이 위치한 전남지역보다 전북지역에 공소들이 더 많았으므로, 목포에서 출발한 선교여행은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사제로 서품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으로 파견되었고,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포본당에 부임하였으니, 선교의 경험도 한국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던 데에 신부에게는 낯설고 힘든 여행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뫼텔 주교는 1897년 전라도지역을 사목방문하였을 때 하루에 100리를 걸었다.¹²⁷⁾ 1901년 2월 18일에는 4개월 반 동안의 사목방문을 마치고 주교관에 도착하였는데, 사목방문을 위해 이동한 거리는 5,625리이고 그중 3,515리(62.5%)는 걸거나 말을 탔고, 2,110리는 배로 이동하였다.¹²⁸⁾ 1905년 전남지역을 사목방문하였을 때는 10월 18일 목포에 도착하여¹²⁹⁾ 10월 23일 자은도, 10월 26일 하의도, 10월 29일 안창도로 이동하였고 이동하지 않은 날에는 이들 섬으로 찾아온 능매, 도초, 비금도, 상태도, 섭섬, 암태도, 진결, 진도, 하태도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행하였다. 그리고는 목포로 돌아와 무안 사내 우적동의 이내수 신부 묘소를 방문하고, 함평, 나주 삼룡공소, 영광 산호치 공소, 장성 탑정공소까지 방문하였다.¹³⁰⁾ 엄청난 이동 거리였고 빠듯한 일정이었다. 데에 신부의 하소연이 당시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이동과 비교하면 빛을 잃을 뿐 아니라, 과장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외래문화 거부

외지고 서울에서 먼 전남지역에는 대한제국기에 목포본당, 우적동본당, 나주본당(-계량본

125) 데에 → 뫼텔, <1898-1899년 보고서>(전라남도).

126) 데에 → 뫼텔, <1898-1899년 보고서>(전라남도).

127)《뫼텔 주교 일기》1897.1.7.

128)《뫼텔 주교 일기》1901.2.18.

129)《뫼텔 주교 일기》1905.10.18.

130)《뫼텔 주교 일기》1905.10.20.23..24.26.27.29, 11.2.4.5.6.11.13.

당-노안본당) 등 3개의 본당이 설립되었다. 전남지역에의 본당 설립은 1890년부터 시작되었다. 1889년 봄 전주본당과 금구 배재본당이 전라도의 첫 본당들로 설립되었다. 조선교구장¹³¹⁾은 전주본당과 배재본당을 맡고 있던 보두네 신부와 베르모렐 신부가 전남의 섬 지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¹³²⁾ 그러나 맡은 지역이 많았던 두 선교사는 당시 전남의 섬 지역까지는 가지 못했다.

뫼텔 주교는 1896년 10월 29일부터 1897년 1월 22일까지 약 세 달 동안 전라도지역을 첫 사목방문하였다.¹³³⁾ 1896년 12월 24일 김제 수류본당에 도착한 뫼텔 주교는 수류본당의 라크루 신부에게 장차 목포천주당 설치에 대비하여 신자들이 이주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였다.¹³⁴⁾ 그리고 1897년 5월 8일 선교사 피정이 끝나는 날 목포본당을 설립하고 데에 신부를 주임신부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목포본당 설립 이유는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였다.¹³⁵⁾

전주와 함께 조선시대 전라도의 중심이었던 나주도, 전남 관찰부 소재지가 된 광주도 아닌 목포가 전남의 첫 번째 본당 설립지가 된 것은 1890년부터 전남의 섬 지역에 대한 선교 언급이 작용했다. 여기에 목포 개항 소식이 목포에 본당을 설립하게 된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목포 개항은 청일전쟁 후 일본이 조선정부를 압박하여 1894년 맺은 <삼정합동조관>에 “전라도 연안에 하나의 통상항을 개설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목포가 전라도 연안의 통상항으로 선택된 것은 목포가 지닌 항구로서의 지리적 장점 때문이었다. 1895년 주경성 일본영사관의 일등영사 우치다 사다츠미는, 목포항이 부산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하고, 항내 물이 깊어 큰 배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주변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파로 인한 재난을 입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내지로 통하는 영산강이 있고, 나주와 무안에 도달하기까지 배로 통하며, 육상에는 장래 거류지로서 신시가를 건설하는데 적당한 땅이 있다고 하였다.¹³⁶⁾ 이러한 일제의 시각은 시간이 갈수록 보강되었고,¹³⁷⁾ 일제의 압박에 조선정부는 1897년 7월 3일 목포를 통상 항구로 만드는 것을 받아들였고, 각 관계국의 공사, 총영사, 영사들과도 같은 협의를 하여 10월 1일 목포를 개항하기로 결정하였다.¹³⁸⁾

131) C-R은 교구장이 작성한다. 그런데 제7대 조선교구장 블랑(Blanc, 白圭三) 주교는 1890년 2월 21일 사망하였고, 뫼텔이 제8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것은 1890년 8월 4일이었다. 뫼텔은 1891년 2월 19일 부산에 도착하였고, 2월 23일 서울 주교관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C-R, 1890을 뫼텔 교구장이 작성하였는지, 교구장서리 코스트(Coste) 신부가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

132) C-R, 1890.

133)《뫼텔 주교 일기》1896.10.29., 1897.1.22.

134)《뫼텔 주교 일기》1896.12.24.

135)《뫼텔 주교 일기》1897.5.8.

136)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 기록》11, 1994, 110-118 : 최성환, “목포의 개항기”,《목포시사》, 목포시.목포시사편찬위원회, 2017, 353-354쪽.

137) 국사편찬위원회 편, 《주한일본공사관 기록》11, 149-152 : 최성환, “목포의 개항기”,《목포시사》, 354쪽.

138)《고종실록》35권, 고종 34년 7월 3일 ; “本浦靛南浦口岸開辦事件에 關한 請議書”,(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學部大臣 閔種默 → 議政府參政內部大臣 南廷哲), 1897년 7월 3일, 各部請議書存案, 《각사등록》근대편.

선교사들은 목포 개항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뮌텔 주교는, ‘당신이 아는 것처럼 목포는 10월 1일 유럽상권에 개방’된다고 데예 신부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목포항은 발전해나갈 것이고, 본당 설립지는 목포라고 다시 강조하였다.¹³⁹⁾ 그럼에도 전북 순창 아천리에 머무르고 있던 데예 신부는 목포에 직접 가보니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일본인, 중국인, 러시아인으로 여기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라고는 생각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목포에서 아천리까지 240리, 나주까지 110리, 광주까지 150리, 영암까지 60리, 병영까지 90리, 지도까지 120리, 무안까지 60리라며 목포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들의 거리를 상세하게 거론하였다. 그리고 광주에 상주하는 성직자가 파견된다면 선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¹⁴⁰⁾

목포본당 주임신부로 임명된 지 약 1년이 지난 1898년 7월 2일 목포에 도착한 데예 신부는 목포지역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뮌텔 주교는 데예 신부에게,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자리잡는데 있어 일어나는 근심과 곤란, 소동, 번거로움 속에 빠트리려는 심술에서”가 아니라 데예 신부의 능력과 자질 때문에 목포에 파견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¹⁴¹⁾ 본당 설립 당시 목포에는 35명의 신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¹⁴²⁾ 신자가 없는 곳에 본당이 설립되기도 하였는데 1890년 8월 신자가 1명도 없던 부산에 본당이 설립되었고 조조 신부가 본당신부로 임명되었다.¹⁴³⁾

목포본당에 이어 전남지역에 설립된 두 번째 본당은 무안 우적동본당이다. 1898년 9월 29일 배를 타고 목포(본당)에 도착한¹⁴⁴⁾ 이내수 신부는 1899년 5월 22일 우적동에 도착하였다.¹⁴⁵⁾ 신학생 때부터 결핵으로 고생한 이내수 신부는 1897년 12월 18일 사제서품을 받았는데, 서품 후에도 건강이 나빠 서울 양로원 등에서 요양하였고, 전북 성불의 부모님 집에 머무르다¹⁴⁶⁾ 뮌텔 주교에게서 목포본당으로 갈 것을 명받았다. 뮌텔 주교는 데예 신부가 동료 성직자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내수 신부를 그에게 보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내수 신부의 건강이 좋지 않고 목포는 소비도시이므로 목포본당에서 최대 하루 거리, 가능하면 60-80리 거리에 이내수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라며 무안을 추천하였다. 그런데 데예 신부는 무안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신자가 그의 관할구역에 2명뿐이고 그들조차도 이동할지 알 수 없으니 무안에 교우촌을 형성하기 어렵다며, 목포와의 사이에 나루가 있는 영암을 제안하였다.¹⁴⁷⁾ 그러나 이내수 신부의 임지는 무안으로 결정되었다.

1899년 1월 20일 데예 신부의 지시를 받은 신자 2명이 목포에서 50리, 무안에서 20리, 삼영(공소)에서 20리, 배편으로 5리 거리인 우적동에 이내수 신부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였

139) 뮌텔 → 데예, 1897.8.11., 서울.

140) 데예 → 뮌텔, 1897.10.31., 아천리.

141) 뮌텔 → 데예, 1898.8.25., 서울.

142) C-R, 1898.

143)《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발자취》, 45-46쪽.

144) 이내수 → 뮌텔, 1898.10.1., 목포 ;《우적동의 사제》, 45쪽.

145) 이내수 → 뮌텔, 1899.5.27., 우적동 ;《우적동의 사제》, 49쪽.

146)《뮌텔 주교 일기》1898.6.27.

147) 데예 → 뮌텔, 1898.8.16., 목포.

다. 데예 신부는 그 집이 나무가 울창하고 험하고 외진 산골에 위치하여 신자도 신부도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우적동으로 신자들을 이사시키려 노력했지만 두 가족이 이주하였을 뿐인데 편히 살려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이사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였다.¹⁴⁸⁾ 그리고 그곳이 열악한 곳임에도, 의사가 이내수 신부를 그곳으로 보내지 말라고 했음에도, 이내수 신부를 그곳으로 보내는 이유는 목포본당에 두 명의 성직자가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¹⁴⁹⁾ 즉 우적동본당 설립은 우적동에서 50리 거리인 목포본당에 상주하는 선교사 데예가 동료 성직자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우적동이 위치한 무안지역의 선교가 제일의 목적이었다면, 외진 골짜기 우적동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왕래하는 무안의 중심지역에 본당을 설립했어야 한다. 그런데 선교사들 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선교사가 고립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한 것은 전남지역에서만 아니었다.¹⁵⁰⁾

목포에서 배를 타고 우적동에 도착한 이내수 신부는 마을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내수 신부의 도착을 언짢아했고 싫어했다. 이내수 신부와 마주치지 않으려 이내수 신부의 집 쪽으로 되어 있던 싸릿문을 반대 방향으로 옮기기까지 하였다.¹⁵¹⁾ 사람들은 이내수 신부에게 오지 않았고, 이내수 신부는 선교할 대상을 찾기 어려웠다.¹⁵²⁾ 외진 곳,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던 이내수 신부는 1900년 12월 20일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였다.¹⁵³⁾

목포본당, 우적동본당에 이어 전남지역에 설립된 세 번째 본당은 나주본당(→ 계량본당 → 노안본당)이다. 1903년 10월 8일 한국에 도착하여¹⁵⁴⁾ 1904년 4월 14일 사내¹⁵⁵⁾를 임지로 받은¹⁵⁶⁾ 투르뇌 신부는 4월 17일 제물포에서 목포행 배에 탑승하였다.¹⁵⁷⁾ 그런데 사내지역의 선교가 활발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지, 나주지역으로 본당을 옮기려 하였다. 투르뇌 신부는 50세대 300명이 사는 비옥한 평야지대인 남산에 정착하고 싶어했다. 그런데 전남지역의 선임 선교사이자 목포본당을 맡고 있던 데예 신부는 남산에 몇몇 신자들이 논을 매입하고 정착하려 올 수 있겠지만 남산지역은 발전 가능성이 없고, 항구에서 17리, 목포에서 육로로 120리 거리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데예 신부는 3,500세대 18,000명이 있고, 천주교에 반항적이지 않으며, 증기선이 정박할 수 있는 영포 항구가 7리 거리에 있고, 나주와 목포 사이에는 담양까지 뻗어 있는 평야가 있기에 상업이 발달하고 인근 지방도 비옥하다며 나주읍을 제안하였다. 그는 나주읍이 아니라면 무안 사내를 떠날 필요

148) 데예 → 뫼텔, 1899.1.20. 목포 법산. ; 《우적동의 사제》, 59쪽.

149) 데예 → 뫼텔, 1899.5.5., 목포본당 ; 《우적동의 사제》, 61쪽.

150) 루블레 신부가 서울에서 160리나 되는 떨어진 곳에 고립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900년 12월 작은 공베르 신부가 가라비에서 멀지 않은 진술에 은퇴 때까지 있기로 하였다.(두세→ 뫼텔, 1900.12.29, 약현.(천주교중앙동교회, 《성직자 사목서한과 약현관계 자료》, 136쪽)

151) 이내수 → 뫼텔, 1899.5.27., 우적동 ; 《우적동의 사제》, 49쪽.

152) 이내수 → 뫼텔, 1900.2.9., 우적동 ; 《우적동의 사제》, 53쪽.

153) 이내수 → 뫼텔, 1900.12.29., 우적동 ; 《뫼텔 주교 일기》1900.12.25.

154)《뫼텔 주교 일기》1903.10.8

155) 우적동에서 언제 사내로 변경되었는지 알 수 없다.

156)《뫼텔 주교 일기》1904.4.14

157)《뫼텔 주교 일기》1904.4.17.

가 없다고까지 하였다.¹⁵⁸⁾

투르뇌 신부와 데예 신부는 나주읍과 남산 지역을 현장 방문하였고, 남산지역을 본당 설립지로 결정하였다. 나주읍은 1895년과 1905년의 주민 봉기로 불안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자재를 19-20리 밖에서 가져와야 하며, 가장 가까운 교우촌도 20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신자들은 생활비가 비싼 나주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계량공소¹⁵⁹⁾의 신자들에게 선교사를 따라서 나주읍으로 이주할 수 있느냐 묻자 논이나 밭이 없으므로 갈 수 없다고 하였다.¹⁶⁰⁾

1906년 8월 투르뇌 신부는 남산에 4,545평을 매입하고, 1907년 6월 남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본당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남산 마을 유림들의 반대, 땅 소유자의 계약 파기로 인해 남산지역에의 본당 설립은 무산되었다. 그때 영광 법성의 신자가 집을 희사하였고, 투르뇌 신부는 법성으로 거처를 옮기고 본당 설립을 추진하였다.¹⁶¹⁾ 데예 신부는 목포와 법성 간 정기 증기선이 있고, 남산보다는 법성이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교구장 뮈텔 주교는 목포에서 법성까지의 거리가 멀다며 투르뇌 신부의 법성 정착을 찬성하지 않았고,¹⁶²⁾ 좀더 기다리며 신중하라 하였는데, 희사받은 법성의 집이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투르뇌 신부는 본당 설립지로 계량을 최종 결정하였다.¹⁶³⁾ 1930년에 발간된 《목포부사》는 나주본당이 1908년 목포본당에서 분설되었다고 하였는데¹⁶⁴⁾ 잘못된 서술이다. 목포본당이 담당할 선교구역과 나주본당이 담당할 선교구역이 나뉜 것이다.

목포본당, 우적동본당, 나주본당에서 활동한 성직자들은 모두가 그들이 정착한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외국인 선교사들뿐 아니라 한국인 성직자에게도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선교사들이 경험한 전남지역의 배타성은 지도교안에서 심하였다. 지도교안은 1901년 7월 천주교신자 9명이 지도군에서 관속 10여 명에게 구타당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원영 신부가¹⁶⁵⁾ 자은도의 교우촌을 방문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지도군수가 파견한 순검을 심문하였으며,¹⁶⁶⁾ 이에 지도군수는 자은도의 토착세력가들에게 김원영 신부와 신자들을 잡아오라 지시하는 한편 목포항 감리서, 경무서, 전라감영, 그리고 내부, 외부에 사건을 보고하였다.¹⁶⁷⁾ 데예 신부는 김원영 신부의 보고를 받은 후 뮈텔 주교에게 보고하였고, 자은도와 비금도·도초도를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관속들을 직접 처결하였다.¹⁶⁸⁾

158) 데예 → 뮈텔, 1906.6.8., 사내(무안).

159) <1903-1904년 교세통계표>에는 나주 계량에 신자 38명, 예비자 47명.(《광주대교구 50년사 : 1937-1987》, <교세통계표>, 777-779쪽)

160) 투르뇌 → 뮈텔, 1906.6.11.(김경욱, <광주지역 가톨릭 도입과정과 노안본당의 역사-노안본당 100년사-), 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17쪽)

161) 투르뇌 → 뮈텔, 1908.8.9.(김경욱, <광주지역 가톨릭 도입과정과 노안본당의 역사-노안본당 100년사-), 19쪽)

162) 투르뇌 → 뮈텔, 1907.6.15., 목포.

163) 투르뇌 → 뮈텔, 1908.8.9.(김경욱, <광주지역 가톨릭 도입과정과 노안본당의 역사-노안본당 100년사-), 20쪽)

164) 목포부청 편, 《목포부사》, 목포부, 1930, 443쪽.

165) 데예 → 뮈텔, 1901.7.28., 목포. 김원영 신부는 제주 한논성당의 주임신부로 있다가 제주교안 발생 직전 제주도를 떠나 잠시 목포본당에 와 있었다.

166) 김원영 신부 → 지도군수, 1901.8.2. ; 데예→뮈텔, 1901.8.9., 목포.

167)《황성신문》광무 5년 9월 6일, “잡보”.

168)《法案》1492호, 목포 曹教師 逢辱始末 ; 《황성신문》광무 5년 9월 6일, “잡보”.

그리고 지도군수를 방문하였는데, 군수와 데에 신부의 복사가 언쟁을 벌인 끝에 데에 신부를 따라왔던 신자들이 지도군의 관속들에게 구타당하고 데에 신부도 손에 부상을 입었다.¹⁶⁹⁾ 데에 신부가 보낸 전보를¹⁷⁰⁾ 받은 뮌텔 주교는 프랑스공사에게 연락하였고, 프랑스공사는 대한제국의 외부대신에게 이 사건을 목포항 감리에게 조사하도록 요청하였다.¹⁷¹⁾ 뮌텔 주교는 사건처리가 지연되자 목포본당을 방문하였고,¹⁷²⁾ 무안감리는 그 때에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들의 형량을 확정하였다.¹⁷³⁾

데에 신부는 전남의 도서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단히 배타적이라고 하였다. 즉 섬마다 각각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섬과 저 섬의 관습이 달라 격렬한 파도처럼 서로 밀고 부딪쳤다. 주민들은 대부분 10대에서 15대 전부터 대를 이어 섬에 살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한 번도 바다를 건너간 적이 없고, 풍문으로밖에는 육지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말도 당나귀도 노새도 산양도 본 적이 없었다. 폭풍우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쾌속 범선 이용을 두려워하였다. 육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섬 주민들의 생각은 수평선만큼이나 한정되어 있다. 또한 섬 지역의 부인들은 가축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낮이고 밤이고 불평없이 일을 한다고 하였다.¹⁷⁴⁾ 데에 신부의 보고서들과 자신이 직접 방문한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뮌텔 주교의 인식도, 전남의 도서지역은 교통이 불편하고 그곳 주민들의 성품은 거칠다는 것이었다.¹⁷⁵⁾

3) 일진회 세력의 극성

1898년 7월부터 목포에 정착하여 선교에 노력하였으나 신자수를 증가시키지 못한¹⁷⁶⁾ 데에 신부는 1900년부터 전남의 도서지역으로 선교 대상을 확대하였다. 1901년 7월에 발생한 지도교안의 처리가 1년여를 끌었지만 교회측에 유리하게 이루어진 후 도서지역의 천주교 교세 증가는 놀라울 정도였다. 한국천주교회의 교세는 1904년 이후 전국적으로 둔화되었는데, 전남의 도서지역에서는 759명의 성인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전국 최고의 성인영세자 수를 기록하였다.¹⁷⁷⁾ 그런데 1905년부터 전남의 도서지역에 일진회가 조직되었고, 두민배(頭民輩)가 일진회에 가입하여 교회측에 빼앗긴 향권(鄉權)을 되찾으려 적극 활동하였다.¹⁷⁸⁾

169)《뮌텔 주교 일기》1901.9.5.

170) 데에 → 뮌텔, 1901.9.5., 목포.

171)《法案》1484호, 智島敎人 피해사건에 관한 조회, 1901.9.6.

172)《뮌텔 주교 일기》1902.8.19. ; 데에 → 뮌텔, 1902.9.14., 목포.

173) M 1902-131, 지도교민피해사건범인 판결선언서 ; 《法案》1647號, 附 1. 지도사건피고인 등의 판결선언서 ; 《務安報牒》광무 5년 9월 23일.

174) 데에 → 뮌텔, <1902-1903년 목포지방 보고>.

175) C-R, 1904.

176) 목포본당의 교세는 1897.5-1898.4. 신자 23명, 1898.5-1899.4. 신자 56명, 예비자 114명, 1899.5-1900.4 신자 58명, 예비자 160명이었다.(《광주대교구 50년사 : 1937-1987》, <교세통계표>)

177) C-R, 1904.

178) C-R, 1905 ; 이원순, <조선말기 사회의 대서교문제 연구 : 교안을 중심으로>,《역사교육》15, 1973 ; 박찬식,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교안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참조.

1904년 2월 일본에 망명 중이던 동학교주 손병희의 지시로 민족주의 개량운동단체 조직을 명받은 이용구가 진보회를 조직하였다. 그해 8월 18일에는 송병준 등이 유신회를 조직하고 8월 20일 일진회로 개칭하였으며, 진보회를 흡수하여 1904년 12월 2일 (통합) 일진회를 조직하였다.¹⁷⁹⁾ 일진회는 러일전쟁에서 일제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친일의 색채를 더욱 드러냈고, 일본세력을 빙자하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1905년과 1906년 전남의 도서지역과 연안 각 읍에서 일진회원과 교민들이 충돌하였다.

1905년 1월 27일 무안군에 일진회 지부가 들어섰고,¹⁸⁰⁾ 2월 10일에는 지도군에 일진회 지부가 결성되었다.¹⁸¹⁾ 처음에는 일부 예비자들이, 1905년 4월 이후에는 일부 교민들이 일진회에 가입하였다. 투르뇌 신부의 관할구역에서 몇몇 세례지원자들이 일진회에 넘어갔고,¹⁸²⁾ 데예 신부에게서 세례를 받은 신자 2명이 일진회에 가입하였으며, 약 30명의 세례지망자들이 일진회에 동조하였다.¹⁸³⁾ 서울의 뫼텔 주교도 무안지역의 교민들과 일진회를 언급한 《황성신문》의 기사¹⁸⁴⁾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신문을 데예 신부에게 보냈다.¹⁸⁵⁾

일진회원들은 기좌도, 도초도, 상태도, 안창도, 장산도, 팔금도의 신자들을 습격하여 잡아다가 때리고,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했다. 안창도의 신자 24명은 감리에게 호소하였고, 감리는 신자들의 고소 일부를 받아들였다. 데예 신부는 신자들에게 감리의 명령을 가지고 안창도로 돌아가라 하였다. 그런데 일진회원들은 감리의 판결을 무시하였고, 신자들과 예비신자들을 붙잡아 때리고 약탈했다. 그래서 데예 신부는 이 사건을 광주에 관할사에게 가져갔다. 그러나 누구도 일진회원들을 체포하라는 관할사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사의 명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대한제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의미였다. 일진회원들은 데예 신부를 한국에서 추방하겠다고까지 자신하였다.¹⁸⁶⁾

도초도의 일진회원은 200명이나 되었는데, 일요일에 신자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밤새 감시하였다.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교회를 쫓아내겠다고 맹세하였다. 안창도에서는 일진회원이 한 신자의 아내를 강제로 끌고갔다. 일진회원들은 신자들과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프랑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일본은 일진회 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¹⁸⁷⁾ 또한 천주교신자들은 민중의 적이고,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관습·관례에 반대되는 교리를 전하려 한국에 온 것이며, 위패를 부수게 하였고, 한국인들의 쌀을 먹고 있으니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떠나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죽이자고¹⁸⁸⁾ 섬 주민들을 선동하였다.

하태도에서는 일진회원이 한밤중에 남편들과 함께 자고 있는 5명의 여신도들을 강간하러

179) 성주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 손병희》, 역사공간, 2012 ; 《대한매일신보》1908.10.23., “일진회와 송병준씨”.

180)《황성신문》1905.1.27, “잡보”.

181)《속음청사》1905.2.1.

182) 데예 → 뫼텔, 1905.1.31., 목포.

183) 데예 → 뫼텔, 1905.4.18., 목포.

184)《황성신문》1905.1.27., “務倅報告”

185) 데예 → 뫼텔, 1905.1.31., 목포.

186) 데예 → 뫼텔, 1905.8.2., 목포.

187) 데예 → 뫼텔, 1905.8.4., 목포.

188) 데예 → 뫼텔, 1905.8.7., 목포.

왔고,¹⁸⁹⁾ 하의도에서는 전교회장 등 신자 4명이 일진회원들에 의해 쫓겨나 목포로 이사하였다. 일진회원들을 강력 진압하지 않는다면 섬에 남아 신자들의 얼마 되지 않은 재산도 모두 약탈당할 것이고,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며 데에 신부는 경고하였다.¹⁹⁰⁾ 그러나 한반도에서 일본의 입지가 굳어진 상황에서 친일단체 일진회의 횡포는 막을 수 없었고, 그 결과 교회세력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¹⁹¹⁾

영암에서도 일진회원들과 천주교신자들이 충돌하였다. 1906년 2월 130여 명의 일진회원이 영암 이진¹⁹²⁾공소에 난입하여 교회시설과 성물을 파손하고 각지에 통문을 보내 꺾기를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 여파로 여러 도서 지역의 공소들이 습격을 받았다.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은 평소부터 일진회원들과 교민들이 경제적으로 경쟁한 때문이었다. 직접 원인은 목포의 일진위원이 전 영암군수의 세금을 개인적으로 소멸해주고, 대신 전 영암군수가 예탁한 조곡(租穀)을 가져가는 것을 신자가 반대한 데 있었다. 그런데 반대한 신자는 퇴리(退吏)였는데 감찰을 사칭하고 교회의 위세에 의탁하여 주민들을 수탈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일진회에 그러한 상황을 호소하였다.¹⁹³⁾ 영암사건은 다수의 신자들과 일부 일진회원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선에서 처리되었다.¹⁹⁴⁾

4. 맺음말

타인의 시선에 비친 우리를 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19세기 한반도에는 중국인과 일본인 외에 또 다른 외국인들도 들어와 생활하였는데, 그중에는 천주교 선교를 목적으로 한 이들이 있었다. 조선정부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1836년부터 프랑스를 모국으로 하는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조선(인)/한국(인)들에게 선교하였다. 1896년 지방제도 개정으로 전라도가 전남과 전북으로 나누어졌고, 1897년 제후의 국가에서 황제의 국가인 대한제국이 시작되었으며, 교회적으로는 1831년 설립된 조선대목구가 1911년 대구대목구를 분리 설정하면서 서울대목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후 두 개의 대목구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연구의 대상시기를 대한제국기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서울과 전남지역으로 하였다. 서울은 교회적으로도 교회 외적으로도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전남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조선시대에 곡창지대였고 일제의 침략이 진행되면서는 그 침략의 주된 대상지였기 때문이다. 다른 역의 상황이 전남지역과 같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남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경험하고 인식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교사들은 서울을 교회행정의 거점, 정치의 중심지 그리고 근대문물이 시작되고 그 혜택

189) 데에 → 뫼텔, 1905.8.25., 목포

190) 데에 → 뫼텔, 1905.8.14., 목포.

191) 《드망즈 주교 일기》1914.5.23.

192) 이진은 1906년 해남군으로 편입.

193) 데에 → 뫼텔, 1906.4.5., 목포.

194) 《뫼텔 주교 일기》1906.4.8., 9, 10, 14, 18, 28, 5.16, 18, ; 이원순,〈조선말기사회의 대서교(對西敎) 문제 연구 : 敎案을 중심으로 한〉,《역사교육》15, 1973, 120쪽.

이 주어지는 곳이라 이해하였다. 교구청이 위치하는 서울에 서울 거주 선교사들은 물론 서울 인근에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자주 서울을 방문하였다. 지방 거주 선교사들도 선교사들의 연피정 때는 서울을 방문하였다. 서울에는 두 개의 본당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울 사람들이 정세 변화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런데 한국을 잠깐 사 목방문하였던 베네딕도회 선교사는 일본인들의 서울 침략이 용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간파하였다. 오랜 동안 생활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서울 거주 선교사들은 일제식민통치기관의 움직임에도 민감하였다. 통감부의 설치부터 일제의 침략과 힘을 느꼈고 일제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 한편 서울에 설치된 전차, 인천까지 연결되는 기차 등을 선교 여행에 적극 활용하였고, 박물관을 찾아 근대문물을 향유하였다.

전남에 대한 선교사들의 인식은 외지고 교통이 불편한 시골,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고 외래문화에 배타적인 곳,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는 일제에 의존하는 세력들이 기세를 부리는 지역으로 생각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면 전남은 지리적으로 먼 곳이었다. 대부분 프랑스의 시골 출신들이었음에도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서울을 교회적으로도 교회 외적으로도 중심에 두었고, 따라서 서울이 아닌 곳은 시골이었다. 그럼에도 전남에 파견된 선교사들은 전남의 외짐을 강조하였고, 교통 불편을 호소하였다. 또한 전남지역민들이 외래문화에 배타적이라 하였다. 그런데 목포본당 등 전남에 설립된 본당은 전남의 중심지역이 아니었다. 개항하는 목포가 발전하리라 예상하고 목포에 본당을 설립했다는데, 선교사들의 기대와 달리 목포는 한국에서 수탈한 물품들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항구였다. 우적동본당은 본당 설립 당시에 선교사들도 인정한 시골이었다. 나주본당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러한 본당들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의 전남 인식에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 그들은 본당이 위치한 곳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인 성직자조차도 그러한 대접을 받은 것은 그 지역이 배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생소한 천주교 문화에 대한 거부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전남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전남지역이 외지고 그래서 배타적이라는 선교사들의 인식도 수정이 요구된다.

선교활동 중에 관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그중에는 일제에 의존하는 세력과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특히 전남지역에서는 일진회원들과 신자들간의 충돌이 많았다. 신자들은 선교사들에게 호소하였고 도움을 요구하였는데, 선교사들은 새로운 실력자로 떠오르는 일제를 무시할 수 없었다.

「대한제국기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본 서울과 전남」 토론문

이정선 (조선대학교)

윤선자 선생님의 발표문은 조선에서 가장 먼저 선교활동을 전개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의 대한제국기 한국 인식을 서울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읽으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파리외방전교회의 한국 인식

발표문에서는 파리외방전교회의 서울과 전남 인식을 대비하셨습니다. 서울은 교회·정치·근대문물의 중심이고 전남은 외지이자 배타적인 지역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 대한 인식도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평가이지, 전반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2장 1절 마지막에 베네딕도회 선교사와 대조하시면서,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해준다.”라고 서술하신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파리외방전교회가 한국에서 오래 활동했음에도 이해가 부족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리외방전교회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대한제국기 이후에는 달라지는지, 몇몇 사람들의 캐릭터 문제였는지, 파리외방전교회가 한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 파견했던 선교사는 그 지역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베네딕도회 선교사와의 차이는 어디서 생겨난 것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2. 한일 관계 변화에 대한 파리외방전교회의 인식과 대처

발표문에서 다루신 시기가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한반도 통치 권력 교체에 대한 반응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다만 2장과 3장에서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2장 2절에서 뫼텔 주교는 의병 투쟁을 폄하하고 통감부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일제의 한국 주권 침탈이 불의한 행동이었고, 그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이고,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선이었음에도 선교사들은 그에 침묵하였다.”라고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3절에서 1905~06년 전남 도서 지역과 연안 각 읍에서 일진회원과 천주교 신자가 충돌한 사건을 서술하신 대목에서는 구도가 복잡해집니다. 데에 신부는 일진회원이 천주교 신자를 공격하면서 “일본은 일진회 편”이라고 했고, 이후 『드망즈 주교 일기』를 근거로 친일 단체 일진회의 횡포 속에 교회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였다고 서술하셨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처럼 파리외방전교회도 이 시기 통감부와 긴밀히 협조했다면, 통감부가 일진회 편만 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일진회원), 파리외방전교회(선교사), 통감부, 혹은 대한제국 정부까지 더해서 이 시기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가 어떠

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국인의 천주교(파리외방전교회) 인식 및 활용

2번 질문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발표문을 읽으면서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의 한국인 신자에 대한 생각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인을 이해관계와 권세에 따라가는 민족이라고 판단하고 신자들 역시 그렇다고 본 것 같아서입니다. 2장 1절에서 먹고 사는 일이 급해서 한국인들의 생각이 종교에서 멀어지는 가운데, 생계를 위해 고위층에게 잘 보이려고 예비자이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나 훌륭한 신자라고 자처한다는 평가가 그렇습니다(두세, 1903). 두세 신부는 특히 서울에서 사람들이 ‘현재를 사는 일’에 몰두한다고 했지만, 전남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 성직자에게도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남 도서 지역에서 1902년 이후 신자가 급증한 이유는 결국 지도교안이 교회 측에 유리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슷한 언급을 일본 자료에서도 본 적이 있었는데, 1909년 민적 조사 때 “야소교 신자 혹은 구세군 가맹자라고 말하며 한국의 민적부에 등록될 의무가 없다고 하고 혹은 천도교 신자이기 때문에 민적 조사 같은 것은 하등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실사(實査)를 면하고 자”¹⁾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활과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남 사람들의 선택은 도서 지역에서 세례 지원자가 이탈해 일진회에 가입한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1906년 영암 사례에서도 신자가 교회의 위세에 의탁하여 주민을 수탈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진회에 호소한 것이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일진회는 정치 조직이고 천주교는 종교 조직이라서 세력을 다룰 차원이 다른데, 향권(鄉權)을 두고 서로 경쟁했다는 것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이는 위에서 본 사례들처럼 지역에서 천주교가 단순히 종교를 넘어 하나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교세가 급격히 쇠퇴한 이유도 한국인의 천주교 인식 및 활용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문이라서 죄송하지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여 보충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内部 警務局 編纂, 1910 『民籍事務概要』, 日韓印刷株式會社, 57쪽.

서울 동북부의 개발과 도봉구의 변화상 (1960~1990) : 도봉구의 인구증가와 산업화과정을 중심으로

김태운 (서울대학교)

1. 머리말
2.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시와 준공업지역 지정
3. 개발도시개발로 인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혼재
4. 산업재배치정책으로 인한 탈공업화와 '개발제한'
5. 맺음말

1. 머리말

도봉구는 서울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로 노원구, 서쪽 남쪽으로는 강북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의정부시, 북한산을 경계로 양주시와 고양시를 접하고 있는 서울 동북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 편입된 기간이 비교적 길지만, 1980년대부터 여러 대중매체에 서민적인 동네로 묘사되어온 도봉구는 서울 동북부의 마지막이자 경기도의 시작, 주택밀집 지역 등의 이미지를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다.

도시사 연구가 한국사 연구방법에 적용된 이후 사실상 도시사 연구는 서울지역에 집중된 경향을 보여 왔다.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한 학술연구는 2000년대 이후 상당히 많은 연구성과를 보여지만¹⁾ 서울에 소재한 각 구·동에 대한 연구를 소략한 편인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바뀌어 지역학연구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구의 역사와 사회상, 문화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고 있다.

학술연구사 측면에서 도봉구연구를 살펴보면 2018년 덕성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지역문화센터와 도봉구청이 진행한 [20세기 후반 도봉구 지역 도시 경관의 형성과 변화] 학술대회를 통해 근현대 시기 도봉구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 도봉구의 역사가 서울도시역사에서 가지는 특수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이외에도 도봉구의 문화유산과 연혁기록을 검토한 연구³⁾ 도봉구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을 분석한 연구⁴⁾, 주택지 개발결과 도봉구에 들

1) 도시사 연구의 시작과 성장과정은 몇 차례 정리되었던 연구사정리를 참고한다. 민유기, 「한국 근현대 도시사 연구에 대한 비평과 전망」, 『공간속의 시간』, 도시사연구회편, 심산, 2007; 민유기, 「한국의 도시사 연구 지형도와 향후 전망」, 『도시연구』1, 2009; 김백영, 「식민지시기 한국 도시사 연구의 흐름과 전망」, 『역사와현실』81, 2011; 염복규, 「개항-현대 서울 역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서울과 역사』100, 2018; 橋谷弘, 「植民地都市史研究の成果と課題」, 『東京経大学会誌』297, 2018; 염복규, 「韓國における植民地都市史研究の現況と展望」, 『歴史評論』851, 2021.

2) 이 학술대회의 결과 2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최인영, 「해방 이후 도봉구 지역의 경원선 철도 전철화와 주택지 조성」, 『인문과학연구』29, 2019; 김재원, 「1980년대 중반 서울 '동북권' 개발과 도봉구 생활환경의 변화」, 『인문과학연구』29, 2019

3) 정요근, 「도봉구 연혁기록의 비교검토와 보정」, 『인문과학연구』19, 2014; 이규철, 「임영대군과 오산군을 통해서 본 조선초기 종친의 역할」, 『인문과학연구』20, 2015;

4) 최진형, 「도봉구와 구비문학 : 설화 자료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14, 2010; 최진형, 「도봉구의

어선 수많은 다세대 주택의 주거환경을 조명한 연구⁵⁾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2010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도봉구 지역이 가진 역사적 특징을 반영하여 서울의 확장과정에서 철거민이 밀집하여 살았던 지역에 관한 연구, 도심재개발에 대한 연구 또한 도봉구의 지역적 특징을 고찰한 연구 등이 있다.⁶⁾

이미 많은 역사학적 연구가 진행된 서울연구이지만, 연구 중에서도 도봉구나 그 이외 지역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개발’이 집중된 곳, 근대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서울지역은 서울역사편찬원이나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각 지역 역사를 발굴과 조사함에 따라 이러한 편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연구성과들은 강남과 사대문일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가 서울 동북부 도봉구에 집중하는 문제의식의 시작 또한 위와 같다. 도봉구는 해방이후 서울의 도시개발사가 응축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확장과정에서 외곽 지역에 속했던 도봉구는 서울내에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일종의 ‘버퍼존(buffer zone)’이었다. 서울중심부에서 밀려난 인구는 판자촌을 형성하여 살아갔고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판자촌이 사라지고 그 지역에 공업지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얼마 못가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공업지역이 탈공업화 되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 도봉구의 개발은 자연스럽게 서울의 여타지역에 비해 뒤쳐질 수밖에 없었고, 개발의 시작과 끝이 불과 10년이 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이 수도권의 ‘개발’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서울 내에서도 개발의 외곽에 있었고 현재까지도 구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도봉구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도시계획의 변천 속에서 도봉구의 도시개발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도봉구 도시경관의 탄생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서울의 다른 지역이 가지지 않은 도봉구의 지역정체성은 어떠한지 과거를 통해 만들어진 로컬리티가 미래에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2.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실시와 준공업지역 지정

도봉구는 1973년 7월 대통령령 제 6548호(1973년 3월 12일 공포)로 성북구에서 분리되어 22개동으로 이루어진 신설구가 되었다. 신설된 당시 구의 규모는 120,093세대에 618,363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성장을 거듭하여 1987년에는 211,398세대에 90만명에 육박하는 거대한 인구를 가진 대형구가 되어 1988년 노원구를 분구하게 되었

전래 구비문학-도봉전자대전 사업과 관련하여-; 『인문과학연구』19, 2014; 이명찬, 「도봉구의 문학유산」, 『인문과학연구』16 2011.

5) 임창주, 「서울 도봉지역의 주택지 확산과 환경영향연구 - 다세대주택 확산에 따른 주거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7, 1995.

6) 장세훈,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 빈민 - 서울시의 무허가 정착지 철거 정비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14, 1988; 윤일성,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한울아카데미, 2002.

다. 이때의 인구는 서울시의 구 평균인구 기준 (50만명)에 약간 못미치는 499,983명이 되었다. 아래의 <표 1>은 도봉구가 신설된 이후 인구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도봉구 인구의 변천 (1973~1998)

연도	세대	인구	비고
1973	120,093	618,363	도봉구 신설
1975	129,614	631,595	
1977	139,179	689,600	
1979	151,277	727,543	
1981	167,738	774,965	
1983	183,727	812,956	
1985	202,127	847,147	
1987	211,398	889,690	
1988	126,395	499,983	노원구 분구
1990	175,824	673,387	
1992	229,923	766,799	
1994	239,776	773,666	
1995	117,150	374,271	강북구 분구
1997	123,055	388,620	
1998	119,744	381,602	

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133쪽

도봉구의 신설에 뒤따른 노원구, 강북구의 분구과정은 한국전쟁 이후 20여 년간 지속된 도시의 개발과 산업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산업시설과 도시 인프라가 밀집되어있던 서울은 해방 직후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곧 도시문제로 이어졌다. 여기에 1950년대 이후 이촌향도하는 지방민들과 한국전쟁시기 월남한 월남민 등이 서울로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 지역에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곽지역의 인구유입은 시작되었다.

서울시의 인구증가로 서울시는 1949년 서울시를 확장하고 도시계획구역으로 책정하였다.⁷⁾ 도봉구 지역의 일부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서울은 지역을 구분하여 광역권을 나누었는데 토지이용현황을 통해 기본골격을 편성하고 4개의 환상지역으로 구분하였다. 4개의 지역은 ①중심시가지지역, ②교외지역, ③녹지대지역, ④주변지역에 해당되는데 도봉구지역은 ④에 해당되었다. 주변지역을 만든 목적은 서울시 과잉인구 배출구로써 적정한 위치에 산업도시 또는 베드타운을 신설하여 산업 및 인구분산에 기여하는 것이었다.⁸⁾ 한국전쟁 이후 도봉구 일대에 많은 판자촌이 생긴 이유 또한 서울도심에 과잉된 인구들이 외곽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생긴 현상이었다.

7) 관보 제253호(1949년 12월 28일) (1949년12월28일), 내무부고시 7호 서울시시가계획구역좌기요령과 같이 추가결정하여 195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관계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360쪽

그 결과 성북구로 부터의 분구가 이루어지기 직전이었던 1973년 3월 서울의 중심지인 종로구, 중구의 인구는 20만, 10만의 숫자를 크게 넘지 않고 있는데 비해 서울의 변두리 지역이었다. 영등포구의 인구는 1,397,610명, 성북구의 인구는 1,109,850명에 이르는 인구 과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⁹⁾ 이에 서울시에서는 인구 100만을 넘는 영등포구, 성북구에서 1개구씩 증치키로 하고 1973년 7월 1일을 기해 대통령령 제 6548호(1973.3.12. 공포)영등포구에서 관악구를, 성북구에서 도봉구를 증설하게 되었다.¹⁰⁾ 이처럼 도봉구의 역사는 한국현대사와 서울의 도시개발 역사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도봉구의 성장과 도시화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서울시는 1962년 시가지계획령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양주군, 광주군, 김포군, 부천군 등의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각의를 통과시켰다.¹¹⁾ 1962년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1963년 행정구역의 확장, 그리고 미아리의 재정착사업의 선례의 영향을 받아 당시 송인지역 중랑천변에 판잣집 정착촌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행정구역을 확장한 서울시는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서울 각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 인프라 확보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제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과 연동되어 진행되었는데 경제개발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정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일자리와 주거지를 찾는 인구 유입은 전보다 가속화되었다. 서울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 지역의 용도가 지정되었고 당시 송인지역이었던 도봉구 일대와 영등포 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되었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당시 수유동 일대에 이미 공장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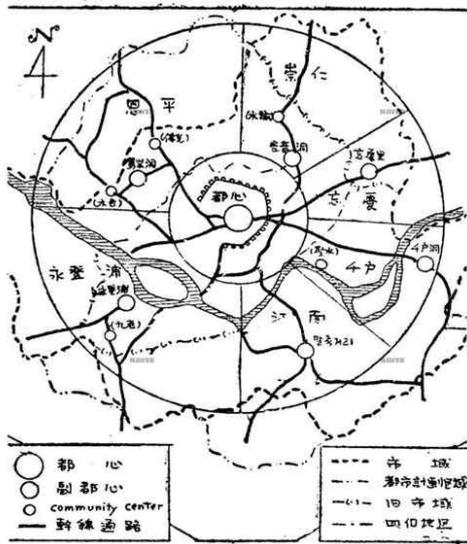
<그림 1> 서울시 용도지역

9) 도봉구, 『구정백서』, 도봉구, 1993, 16~17쪽.

10) 이때 도봉구에는 기존의 미아 1~10동, 번동, 수유 1~2동, 창동, 쌍문동, 공릉동, 상계1-3동, 중계동, 도봉동 등의 21개 행정동과 서울특별시 조례 제 784(1973.6.26. 공포)에 의해 설치된 수유 3동과 함께 22개 행정동으로 신설되었다

11) 「行政區域變更案 閣議에 上程」, 『동아일보』, 1962.10.12.

12) 「송인·은평·구로·목도 4개지구 용도지역결정」, 『경향신문』, 1964.08.28



출처 : 「송인·은평·구로·도독 4개지구 용도지역결정」, 『경향신문』, 1964.08.28

송인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됨과 더불어 공장의 노동자들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배후주거지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봉구에서도 자연스럽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시되었다. 가장 먼저 실시된 지역은 현재는 강북구의 수유동 일대였다. 당시 수유일대는 동북단은 경기도에 접하고 남서쪽으로는 구 시내와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였다. 또한 평지의 대부분이 전답이면서도 경원선이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도시가 아니었으며 대학과 여자상업학교 등의 교육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택지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과 판자촌이 혼재되어있었으며 도심에서 이주해오는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사실상 수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무허가주택 정리와 주택난 해소였다고 할 수 있다.¹³⁾

1964년 10월~1968년 12월까지 4개년계획으로 발표된 수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7년 2월 시점에도 택지 정비와 상하수도 인프라, 학교, 주택건설 등 눈에 띄는 변화들을 보여 줄 만큼의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최하 4배 ~ 최고 10배의 가격 상승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나 구 전체영역에서 진행되던 계획이 아니다보니 수유동 경계지역 주민들은 상하수도시설 문제, 주택부족, 도시위생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다.¹⁴⁾

다음으로 제2차 경제개발5개년기간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된 공간은 창동과 도봉지구였다. 우선 1966년 계획안이 발표된 창동지구는 수유지구와 인접한 지역으로 우이천 주변의 평야지대였으며 수유동 영단주택가와 인접하여 구획정리 후 주택지 및 준공업지대에 적합한 곳으로 1969년 마무리되었던 수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연속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¹⁵⁾ 1968년에 계획된 도봉지구는 창동지구와 인접하며 주택지나 공장용지로

13)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백서(상)』, 서울특별시, 2017, 286쪽

14) 「서울의 하늘밑 (1) 수유토지 구획정리사업」, 『경향신문』, 1967.02.01

알맞다는 평가를 받았던 공간이다. 특히 도봉산 유원지 등의 관광지가 인접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였다. 다만 도봉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0년대의 도시개발 정책 변경과 개발제한 등의 문제로 1980년대가 되어서야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수유, 창동, 도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 강남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강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사업의 목적에서 나타난다. 1960년대 시행된 토지구획사업의 가장 핵심은 주택지 정비와 주택건설, 경부, 경인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택지정비였다. 이외에도 환지방식의 차이, 토지소유권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강남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비교해보면 큰 도로가 계획되지 않았던 강북, 특히 도봉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분산적으로 토지구획정리가 시행되었다. 도봉구에 현재까지도 많은 단독주택지역이 분포되어있는 이유 또한 토지구획정리와 맞닿아 있다.

즉 도봉구일대는 성북구로부터 분구되기 이전인 1960년대 까지만해도 서울의 외곽지대에 불과했으며 도심지역과 농촌에서 올라온 인구를 수용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인구수용의 형태가 택지 정리와 인프라가 구비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허가 판자촌이 즐비한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는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경공업단지가 형성되어있던 지역의 특성상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었다.

3. 도시개발로 인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혼재

전거한 바와 같이 1970년대 도봉구의 도시화 과정을 설명함에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준공업지대'의 형성이다. 도봉구에는 1960년대 국가 주도형 산업화 전략에 따라 설립된 공장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1958년 삼풍제지, 1959년 샘표간장의 공장이 창동에 설립된 이래 196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대형공장들이 들어섰다. 창동에는 삼풍제지, 샘표간장, 쌍용양회, 동아콘크리트, 삼화페인트, 국제제지, 한일염공 등의 공장이 있었고 도봉동에는 삼양식품 삼영모방, 일동제약, 동원전자 등의 공장이 있었으며 방학동에는 미원공장이 있었다. 즉 경원선 철도를 가운데 두고 도봉로와 중랑천 사이에 해당되는 창동과 방학동, 도봉동의 일부 지역은 서울 외곽의 대표적인 공장지대가 되었다.¹⁶⁾ 이렇게 도봉구에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많이 입지했던 이유는 1966년 도봉구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었다.¹⁷⁾

사실상 이러한 용도지정은 1960-70년대 서울의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인구분산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인구분산대책으로는 1964년 9월 발표되었던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이 있었는데 본 대책은 인구집중 현상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대책을 망

15)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백서(상)』, 서울특별시, 2017, 601쪽

16) 정요근·나종현·은기수, 『서울 동역사-도봉구 1(개관 도봉동)』, 서울역사편찬원, 2022, 48쪽

17) 「서울등都市계획 建設部서 再調整」, 『조선일보』, 1966.04.15

라한 종합대책으로 의결되었다. 크기는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관공서를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전원도시를 개발하고 교육시설과 사회문화시설 또한 지방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였다.¹⁸⁾ 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었고 1960년대 여러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던 서울시는 서울을 확장하고 주택을 짓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서울신편입지에 대하여 용도를 지정하였는데 도봉구 지역은 1964년 8월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분리가 결정되고 하천변에 위치한 공장밀집지역 3개소가 최초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66년 서울 전 지역을 상대로 대규모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이때도 도봉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다.¹⁹⁾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서울의 공업지대는 1960년대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긴 했지만, 많은 산업시설들이 일제시기에 만들어진 공장이거나 해방 직후 형성된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²⁰⁾ 반면 쌍문동, 도봉동, 방학동, 창동일대는 일제시기 시가지계획이 적용되지 않았던 공간이었고 공장지대, 주택지역이 형성되어있지도 않았다. 뿐만아니라 상업시설이 들어서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서울로 편입이 진행되었고 철도를 끼고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새롭게 계획할 여러 가지 사업을 적용하기 수월한 지역으로 도봉일대를 선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봉지역은 토지구획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택, 상업, 공장부지보다는 전답과 임야가 더 많은 상황이었고 토지의 판매가격도 책정되지 않을 정도로 매매건이 없었다. 그러다가 경원선 부근에 준공업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토지매매가 시작되었다. 공장이 문을열었지만, 주거지정비 및 주택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때문에 1970년대 이전까지만해도 이러한 도봉지역의 상황은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나 몇몇 공장의 노동자들이 무허가 판자촌, 천막촌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²¹⁾

흔히 도봉구일대의 역사를 철거의 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서울의 외곽지역이자 늦은 도시개발이 실시되었으며 주거지가 형성되기 이전에 공업지대가 형성됨으로써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점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것이었다.²²⁾ 이미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공업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살 터전들을 형성한 이후에 도시계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허가 주택의 철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²³⁾ 따라서 도봉구 일대가 1960년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토지구획정리가 함께 실시되었다는 1980년대 이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도봉구의 지역적 성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부분은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도봉구 일대는 어떻게 준공업지역으로 선정된 것일까? 당시 인구분산 정책과 더불어 도봉구의 지리적 조건도 소규모 공장들이 입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우선 경원선 정거장을 따라서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으며 당시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경흥로(현 도봉

18) 「도시영세민에 특별배려중지」, 『동아일보』, 1964

19) 「崇仁·恩平·九老·뚝도 4個地區 用途地域決定」, 『경향신문』, 1964.08.28

2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상공업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3, 1151쪽

21) 「국토개발이 가져올 70년의 한국<39> 서울의 미래상 (38) 북부부도심」, 『매일경제』, 1968.0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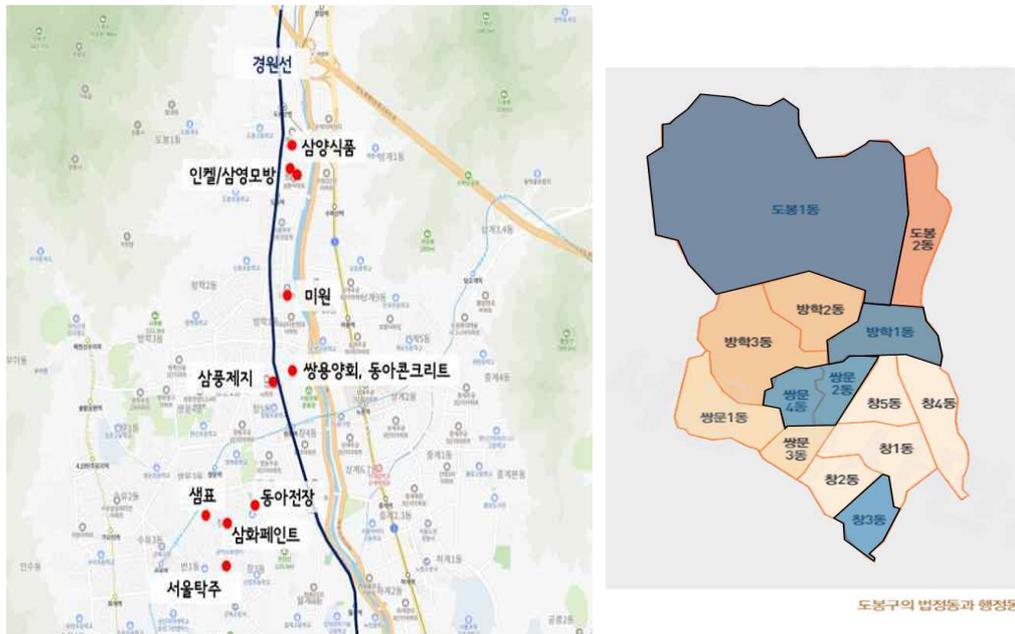
22) 「도봉동 하천지대 주민 진정 "광주 이주 조처를"」, 『동아일보』, 1969.08.01

2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211쪽

로)를 기반으로 넓은 대지와 중랑천 연변에 위치하여 풍부한 공업용수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²⁴⁾ 이와 동시에 당시 진행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이 도봉구 근로자들의 마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자리잡지 못한 여러 이촌향도민들은 주거문제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로 이주하기를 희망하였다.

아래의 <그림 2>은 도봉구에 설립되었던 공장들과 도봉구에 마련되었던 배후 주거지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2> 1950년대 말~1970년대 도봉구에 설립된 공장들(좌)과 배후주거지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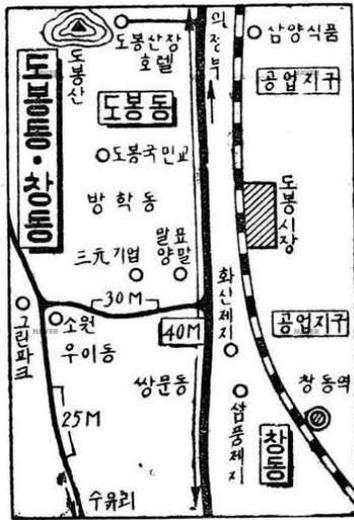
출처 : 필자편집(좌), 정요근·나종현·은기수, 『서울 동의역사-도봉구 1(개관 도봉동)』, 서울역사편찬원, 2022, 15쪽 지도에 필자가 편집(우)

1960년대 말 70년대초 창동과 도봉에 이루어진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그로 인한 주거지 형성은 도봉구일대에 부동산 붐을 일으켰다. 1972년에는 영동지역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많은 부동산 거래들이 있었다. 구의 동쪽에는 중랑천을 따라 준공업지역이 형성되어있었지만, 서북쪽의 경우 도봉산을 중심으로 한 녹지들이 보존되어있으며 미아리고개-고려대-정릉-삼청동터널-북악터널을 거치는 시내 교통편도 마련되는 등 어느정도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도시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다.²⁵⁾ 즉 토지구획정리가 마무리되기 시작하였던 1970년대부터 도봉구는 취업의 장소이자 주거지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교통인프라 또한 마련된 공간으로 변모해나갔다. 언론에서 ‘북부서울의 중심지’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서민주택지 이외에도 고급주택들이 지어지는 등 서울중심부의 인구를 견인할 각광받는 지역이 된 것이다.²⁶⁾

24) 「국토개발이 가져올 70년의 한국 <16> 서울의 미래상(15) 창동, 도봉동」, 『매일경제』, 1968.01.20

25) 「체비지안내 시리즈 ⑥ 도봉-창동 지구」, 『조선일보』, 1972.09.24

<그림 3> 도봉동 창동의 공업지구



「국토개발이 가져올 70년의 한국 <16> 서울의 미래상(15) 창동, 도봉동」, 『매일경제』, 1968.01.20.

이러한 부동산 붐과 준공업지역의 일자리 붐은 더욱 많은 인구를 서울로 유입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전반기 한국 도시개발 정책이 개발과 확대의 일반도에서 개발과 보전으로 바뀌면서 개발의 속도가 재고되었다. 서울의 도시화가 가속화되자 도시의 인구과밀과 공장지대가 야기하는 환경오염 등이 도시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었다.²⁷⁾

공업지대와 높은 인구밀도를 자랑하던 도봉구 또한 이러한 도시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인구문제 외에도 도심지역과는 달리 서울에 편입된 시점부터 도시계획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시화의 시작이 늦어 기간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당시의 상황도 도시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초 진행되었던 급속한 건설사업과 도시정비는 '부동산 붐'과 새집에 거주한다는 기대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철거민들의 철거 향의 농성과 철거민들을 연행하는 경찰, 판자촌에서 나가지 않는 주민들의 갈등으로 점철되었다.²⁸⁾

토지구획정리가 수유일대에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외의 도봉지역은 당시 배수시설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것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불편과 도시위생문제로 이어졌다.²⁹⁾ 이러한 문제를 인지한 1973년 서울시에서는 「공해방지법」에 따라 도봉동 주택가에 위치한 공해업소에게 이전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하는 등 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하였다.³⁰⁾ 이러한

26) 「국토개발이 가져올 70년의 한국 <16> 서울의 미래상(15) 창동, 도봉동」, 『매일경제』, 1968.01.20.

2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364쪽

28) 「구청신축 공사장변 천여 철거주민 철야농성」, 『동아일보』, 1974.06.04

29) 「우리구의 새해설계 (4)-도봉구」, 『경향신문』, 1974.01.18.

30) 「道峰區(도봉구) 廢水(폐수)배출 51개업소 代表들에 汚染하천 現地 教育」, 『경향신문』, 1978.10.13

공장지구에 대한 대규모 단속은 결국 대규모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었다.³¹⁾ 철거하는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도봉구는 개발에서 다시금 소외되었고 1970년대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이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강 이남지역에 집중되면서 1980년대까지 ‘개발이 제한된 공간’으로 묶이게 되었다.

4. 산업재배치정책으로 인한 탈공업화와 ‘개발제한’

1970년대의 도봉구는 명과 암이 공존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말부터 이어진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여러 인프라들이 구축된 시기였지만, 빠른 개발의 여파로 여러 도시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도 도봉일대는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와중에 ‘개발제한’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서울시에서 주도한 서울의 산업 및 도시정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구분산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실상 1960년대부터 1970년 초 현재까지도 수도권과 인구과밀에 대한 대책 법안 마련하였지만, 이는 대도시 인구억제와 전국분산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1973년 성북구에서 분리된 도봉구는 행정적으로 도시인프라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면적 83.12km² 자랑하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구로 서울시인구의 9.8%에 해당하는 59만 7천 5백 20명(10만 9천 1백 58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큰 면적을 가진 행정구가 많은 인구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해보이지만 실제 도봉구를 들여다보면 구의 전체 면적의 약 50%인 41.4km²가 임야였고 쌍문동, 창동, 도봉동, 수유동, 상계동의 30.72km²가 공장 농경지대로 남아있어 주택지는 불과 11km²밖에 되지 않았다.³²⁾ 즉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는 뜻은 1970년대 분구 당시에도 불법주택과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었다. 1960년에 수유·창동·도봉에 실시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수유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 중반까지 마무리 되지 못하였으며 주거지를 마련할만한 인프라도 구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때 영동지구에 버금가는 부동산 붐이 일었던 도봉구였지만, 1970년대까지도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낼 수 없었다. 도봉구를 다루는 기사에서 ‘변두리’, ‘외곽’, ‘농촌마을’이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주민복지 사업으로 양돈단지와 가내공업단지를 계획하는 등 공업지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형태가 유지되었던 것이다.³³⁾ 또한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못하였고 불량주택도 중랑천 변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1970년대 중반 도봉구에 대한 기사는 양묘장 설치, 관상수 심기, 농촌마을 개발 등 농촌도시적 성격이 더욱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³⁴⁾

31) 정요근·나종현·은기수, 『서울 동역사-도봉구 1(개관 도봉동)』, 서울역사편찬원, 2022, 158쪽

32) 「여기에 행정역점을..(3) 도봉구 上」, 『경향신문』, 1973.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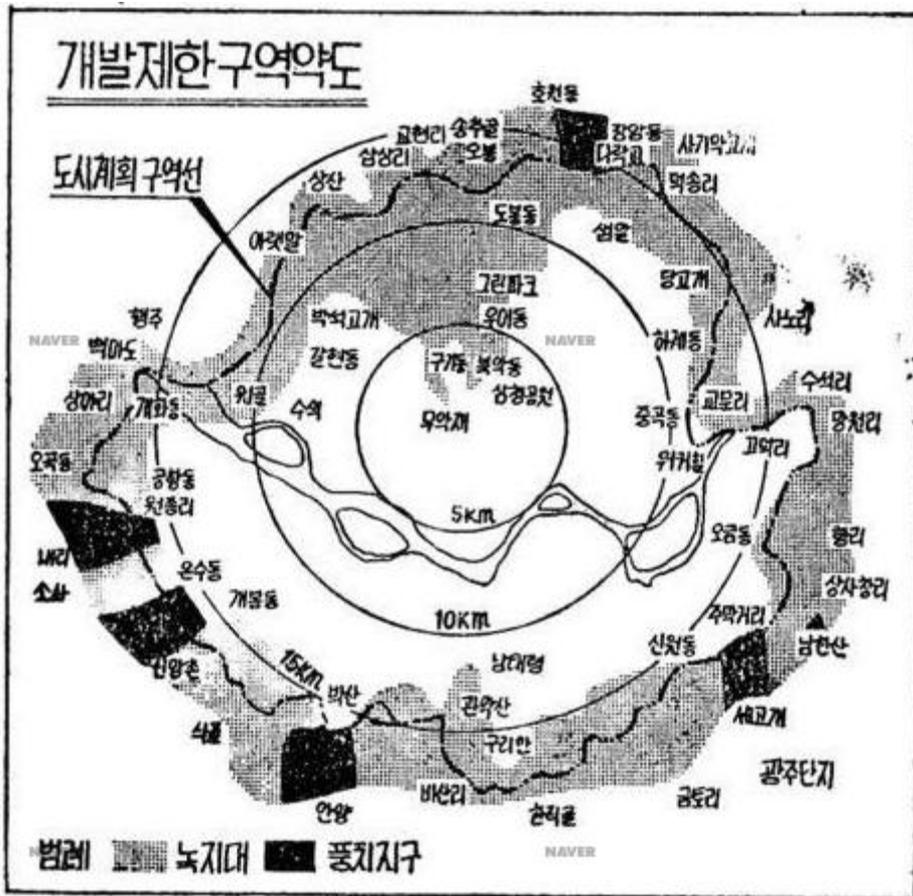
33) 「우리구의 새해설계 (4)-도봉구」, 『경향신문』, 1974.01.18.

34) 「농촌마을 종합개발 기공」, 『경향신문』, 1974.04.12.; 「창골마을 종합개발」, 『경향신문』, 1974.

도봉구의 발전 속도가 느리게 진행된 것에는 도봉구가 가진 지리적 요건도 배경이 되었지만, 1971년 지정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도봉구의 상당부분이 포함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이 지속되었던 1960년대가 지나자마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중인 여러 지역에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라인에 창동지구(87만 1천평)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개발 중인 도봉구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³⁵⁾

당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15km 지점의 해발고도 100m인 토지'를 기준삼아 폭 2~10km의 서울·경기 땅 454.2㎢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발표로 당시 서울 내 여러 지역의 땅값이 1/10으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흑시모를 제한구역의 추가지정에 대한 가능성은 시민들에게는 불안감으로 다가왔다.³⁶⁾

<그림 4>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도



「수도권 그린벨트 확정고시 건설부」, 『동아일보』, 1971.09.02

개발제한구역은 특히나 강북의 입장에서 불리한 것이었는데, 이미 도심의 북쪽에 산이

04.18: 「도봉구 구청 하반기 주요사업」, 『경향신문』, 1974.09.10.

35) 「개발지역 그 실과 허 (완)」, 『매일경제』, 1971.09.23

36) 「그린벨트로 술렁 서울 땅값 이변」, 『경향신문』, 1971.09.20

형성되어있다는 점도 개발의 제한이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한 점과 이미 토지구획정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³⁷⁾ 그린벨트 지정 이후에도 북한산, 도봉산을 배후로 두고있는 도봉지역은 1975년 강북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겠다는 명목으로 3백 40여만평의 주거지역이 녹지지구로 변경되었으며³⁸⁾ 1976년 다시금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변경되었고(도봉구 상계동 산 34일대 23만 1천평),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준주거지로 재지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확장되어나갔다.³⁹⁾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도봉구 일대의 도시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실효성을 보이지 않자 197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외의 '산업재배치'라는 명목으로 서울시 안에 있는 공장들을 아예 서울시 밖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⁴⁰⁾ 이전의 공장재배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전에는 이전해야하는 공장에 일정정도에 기준이 있었다면 1970년대 산업재배치는 거의 모든 공장에 적용되는 사항이었다. 도봉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던 근본적이 이유였던 준공업지대가 사라지게 된 것이었다.

'산업재배치'는 도시문제의 원인인 인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7년 초 발표되었던 「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이 그것인데, 서울의 인구가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견하고 서울인구를 8백만명으로 제한한 뒤에 수도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구 50만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나머지 인구를 흡수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 대책에서 공장의 신규 및 증설에 규제 조항이 생겼다는 점이었는데 현 공업지역을 비공업지역화 하고 소산한다는 정책으로 당시 서울 안에서는 성수와 창동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⁴¹⁾

그리고 같은 해 12월 「공업배치법」을 제정하여 대도시에 소재한 공장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하였다. 사실상 공장주들과 협의가 없이 진행된 본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들이 있었는데, 당시 공장주들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허가를 해 달라”고 하거나⁴²⁾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⁴³⁾ 그 결과 1977년 말부터 공장 이전의 행정지원을 담보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보통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지원되었다.⁴⁴⁾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환경청 신설문제가 1979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었고 이와 동시에 서울 시내에 이전해야하는 공장들에 대한 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서울시에서는 1976~1984년 동안 공해성 공장 966개 업체에 이전명령을 내렸고 실제로 869개 업체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도봉구에 소재했던 여러 대규모 공장들도 1990년 초

37) 「개발지역 그 실과 허 (완)」, 『매일경제』, 1971.09.23

38) 「녹지지구를 확대」, 『경향신문』, 1975.07.09.

39) 「용도지역 크게변경」, 『경향신문』, 1976.03.31.

4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209쪽

41)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 6개 분야별로 본 기본명세」, 『매일경제』, 1977.03.09

42) 「事前(사전)협의 없었던 工業(공업)배치법에 制動(제동)」, 『조선일보』, 1978.11.28

43) 「工業配置法(공업배치법) 시행에 붙여 支援行政(지원행정)의 分散(분산)도 뒤따라야」, 『매일경제』, 1978.11.24

44) 「國會(국회) 본회의 주택 促進法案(촉진법안)등 21개 法律案(법률안) 통과」, 『경향신문』, 1977.12.15

반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45)

<표 2> 1980년대~1990년대 도봉구 소재 공장들의 이전(移轉)현황

공장명	이전년도	이전장소	현재
삼영모방	1995년	경기도 연천	동아에코빌아파트
삼양라면	1989년	강원도 원주	도봉 한신아파트
미원	1998	전라북도 군산시	도봉구청/삼성 래미안/ 대상현대타운
삼화페인트	1993년	경기도 안산	창동대우아파트
샘표	2000년부터 설비이전	경기도 이천/충무로	창동태영데시앙
삼풍제지공업	-	-	북한산 아이파크아파트

도봉동 일대의 탈공업화에 따라 준공업지역 일대에 난립하였던 무허가주택 등에 대한 각종 정비사업이 이루어졌다. 1979년 시작된 우이천변, 중랑천변의 무허가 주택들을 철거하는 작업⁴⁶⁾과 주민부담금을 통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1984년에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산업시설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일환으로 도봉구 또한 이전촉진 지역으로 결정되어 공장들의 이전사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⁴⁷⁾

1980년대 이후 서울의 탈공업화를 견인한 주요지역의 특징은 공업지역의 이전과 인구의 감소라는 지점도 있지만 2장에서 언급했던 서울시의 도시정비계획 또한 큰 원인이 되었다. 특히 탈공업화가 시작되던 시기는 서울시가 택지공급을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에서 전환하여 공영개발방식인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던 시기였는데 1980년대 중후반과 1990년대 초에 진행되던 택지개발사업지 중 도봉구의 창동지구는 제조업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났던 준공업지역 및 인접지역이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 조성되었던 곳이었다.⁴⁸⁾

1980년대가 넘어서야 도봉구의 도시계획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도시 인프라와 주거지역이 만들어졌으며 공장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위의 표처럼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섰다. 1985년에는 지하철 상계동에서 사당동까지 이어지는 4호선이 개통되어 도봉구에서 강남까지 이어지는 교통체계가 완성되었다.⁴⁹⁾ 1986년 7월 건설부는 창동지구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선정하고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인구에 기반한 주거와 공공시설 전체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지와 공장이 도시의 주요 요소였던 도봉구에 선형유보공원과 근린공원을 계획하게 되었다.⁵⁰⁾

4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210쪽

46) 「우리구(구) 새해설계(설계) (13) 道峰區(도봉구)」, 『동아일보』, 1979.01.27

47) 「首都圏 정비기본계획 確定 서울등 人口집중 施設 적극分散」, 『경향신문』, 1984.06.23

48) 유환중, 「서울시 탈공업화의 공간적 특성과 공장이적지의 토지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66쪽

49) 「서울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18일 전면 개통됨으로써 서울은 본격적인 지하철시대를 맞았다」, 『조선일보』, 1985.10.19.

50) 대한주택공사, 『창동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 대한주택공사, 1987.

이후 2000년대까지 도봉구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8년부터 시작한 도봉 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993년부터 시작한 도봉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998년부터 시작한 도봉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이전의 무허가주택과 공장이 있었던 곳들에 공동주택(아파트)이 다수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도로, 학교,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 또한 확충되었다.⁵¹⁾ 다만, 쌍문동과 도봉구 일대의 몇몇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도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하는 ‘주택지역’으로 남아있다.

<그림 5> 아파트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신문기사 사진



「서울의 뉴타운(13) 수유지역」, 『매일경제』, 1976.07.16.

현재까지도 경원선 철도 연변 일부지역은 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준공업지역으로 용지설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고층아파트로 개발됨으로써 실제 공업용도로 이용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이다. 다만, 기타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10개 자치구 중 산업기반 약한 지역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⁵²⁾

그리고 도봉구는 1960~70년대의 과도한 개발로 인해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향후 개발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현재 노후화된 주거지의 개발현안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친환경개발,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도시,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다.⁵³⁾

5. 맺음말

도봉구의 역사는 해방 이후 서울의 인구증가, 도시개발사와 한국경제사의 한 지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도봉구는 해방 직후~1950년대까지 서울의 외곽지

51) 정요근·나종현·은기수, 『서울 동역사-도봉구 1(개관 도봉동)』, 서울역사편찬원, 2022, 161쪽

52)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409쪽

53)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1999, 411쪽

역으로써 서울에 자리잡지 못한 인구들이 밀려난 공간이었다가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 개발과 서울의 확장·개발을 통해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시작된 공간이었다. 이후 1980년대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면서 주거지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각종 기반시설과 인프라의 확충으로 인해 부동산 붐의 중심이 되기도 하였다.⁵⁴⁾

1990년대 이후 개발제한으로 인한 주택의 노후화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되지만,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많은 녹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기도로 이어지는 광역권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 도봉구의 향후 발전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60-80년대까지의 내용을 다루다보니 개발과 개발의 이면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지만, 도봉구는 일제시기부터 서울 근교의 휴양지 이자 대표적 관광지였다. 또한 1980년대 아기공룡둘리, 영심이 등의 배경지로 시작하여 최근 작품인 응답하라 1988, 오징어게임 등 많은 대중매체의 배경이 되어온 곳이다. 그만큼 1980년대부터 서울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래도시계획의 전망을 살펴보면 친환경과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모순적이지만, 1960-80년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의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서 소외되었던 도봉지역은 현재 녹지지역이 많고 수도권으로의 연결성이 좋다는 이유에서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개발이 가지는 의미와 개발제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54) 「땅값」택지·업무용」이상과열」, 『경향신문』, 1990.08.18.

「서울 동북부의 개발과 도봉구의 변화상 (1960-1990)」 토론문

서준석 (서울역사편찬원)

2000년대 이후 한국 도시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면서, 도시사 연구논문이 꾸준히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모든 물자와 사람이 집중되는 거대 도시로서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집중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1950년대 초 전쟁으로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으나, 겨우 30~4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의 재건과 개발 나아가 세계 거대도시의 반열에 오를 만큼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기에 그 변화의 동인과 양상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주로 종로와 중구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심지역이나 새로운 신시가지로 건설되어 이른바 ‘강남스타일’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강남 개발에 집중된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의 주제인 서울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2010년대 중반에 몇몇 연구들이 제기된 이후로는 별다른 성과가 제출되고 못하고 있음은 한국 도시사 연구의 주된 대상지인 서울에서조차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처럼 도시사 연구의 대상이 매우 선택적이고 편중되어 이루어지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교적 연구 대상으로부터 소외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개발과정에 주목하였다. 이에 서울 동북부 지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간 소외된 이 같은 필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필자는 글에서 도봉구의 개발과정은 인구배후지 및 준공업지대로서 개발되다가, 공해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문제로 제한되면서 정체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강남을 제외한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특징일 수도 있다. 한 예로 구로/금천구의 경우 역시 이른바 구로공단이라는 대표적인 공업지대로 개발되었지만, 관악산 자락이 이어지는 금천구의 상당 지역과 안양천을 경계로 한 구로구 서부 지역은 적잖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0년대까지 도봉구와 마찬가지로 개발이 제한된 특징을 갖는다. 이는 산이 많고, 아울러 분단의 위험성 등으로 군사시설이 많은 서울의 특성상 서울 외곽지역의 개발이 제한된 특성에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봉구의 도시개발이 갖는 특성은 과연 강남을 제외한 다른 서울 외곽지역의 변화와 어떠한 차이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둘째, 저자의 논의에 따르면 도봉구에서는 1950년대에 이미 정착촌이 건설되고, 1960년대에는 준공업지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도로 등 도시 인프라와 주택지 건설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산업재배치 정책에 따른 공장이전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된 주거지역과 공장지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고, 공장이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 또한 1990년대

이후였다. 게다가 도봉구 지역은 1963년 서울 편입 이래 3차례나 구가 신설되고 분구될 만큼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도로, 주거환경 정비 등의 도시개발이 상기 제시한 근거에 의해 제한되었다기에는 충분히 동의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다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원고의 서술 중 일부 부분에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1. 필자는 서문에서 도봉구의 도시개발 과정을 설명하면서 “얼마 못가 환경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공업지역이 탈공업화되었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되면서”라고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런데 탈공업화 과정은 1970년대에 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1990년대까지 30여 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1970년대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 작업이 실제로는 앞서고, 탈공업화 과정은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필자는 6쪽에서 “이렇게 도봉구에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입지 했던 이유는 1966년 도봉구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 앞 절에서는 이미 1950년대 말에 창동 지역에 삼풍제지, 샘표간장 등 대형공장이 들어섰음을 지적하면서 서울 외곽의 대표적인 공장지대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4쪽에서는 “당시 승인지역이었던 도봉구 일대와 영등포 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수유동 일대에 이미 공장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원인과 결과가 혼란스럽게 서술되어 있다. 서술을 명확하게 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뒷절에서 도봉구가 준공업지대로 지정된 입지 조건 등을 살피고 있지만, 이 또한 구체적으로 교통, 공업용수, 대지 등 조건을 따져가며 정리한 것이 아니어서 필자의 논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프랑스혁명 이후 툴루즈의 ‘박물관화’ 과정 : 본보기 또는 경쟁의 대상로서의 수도

김한결 (전남대학교)

I. 들어가며
II. ‘국가유산(Antiquités nationales)’과 지역의 문제
III. 박물관 계획의 ‘전국성’
IV. ‘툴루즈의 르누아르,’ 알렉상드르 뒤 메주
V. 결론

I. 들어가며

본 발표는 프랑스혁명 이후 전국에서 벌어진 ‘박물관화(muséalisation)’ 사업 안에서 비롯된 다양한 조사·연구·보존 정책과 지적 작업들을 당대의 맥락 안에서 확인하고, 그 가운데 툴루즈와 수도 파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여기서 주안점은 당시의 표현대로 ‘보편적(universel)’이므로 ‘전국적(national)’인 것과 ‘지역적(provincial)’인 것의 차이를 단순히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고유의 정치적·역사적·예술적 전통과 연관하여 발생한 일련의 쟁점과 요구를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첫째로는 파리에서 벌어진 유물 분류와 보관 작업의 양상이 다른 지역에서는 질적·양적 차원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지역마다 고유의 의사결정 구조와 집행자들이 있고, 지역 ‘토박이’ 역사가, 고고학자, 그리고 소장가와 ‘호고가(好古家, antiquaire)’들이 있다는 점이다.¹⁾ 이들이 관계 맺는 지역과 역사적 맥락이 다른 만큼이나 유물과 유적 문제에 관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기제 또한 당연하게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풀어내고자 하는 것은 파리에서 우선 결정되고 실행된 지침이 지방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수행되었으며, 여기에 어떠한 특수한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였는가의 문제다.

프랑스 전역의 유물과 유적을 국유재산(biens nationaux)으로서 관리한다는 초유의 대규모 사업이 각 지역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유관 기관(즉, 대부분의 경우 박물관) 간의 세밀한 제도적 협의가 마땅히 뒤따라야 했다. 처음 당면한 이러한 과제 앞에서 지역의 책임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합리와 미숙함이 드러났다. 이들의 지적 역량, 섬세함과 끈기, 그리고 지역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했다. 혁명정부의 새로운 기초를 각 지역이 소화하는 데 어

1) 프랑스어 antiquaire, 영어 antiquarian의 국어 번역 문제에 관해서는 김한결, 「글로 쓴 역사, 그려진 역사 - 베르나르 드 몽포콩의 『프랑스 왕국의 유물』에 관하여 -」, 프랑스사 연구 44(2021): 184, 각주 1번을 참조할 수 있다.

려움을 겪었다면, 수도에서 이것은 나름의 부침은 있었을지언정 상당한 규모와 속도로 현실화되었다. 혁명의 소요 속 국내외 유물과 유적의 잔해는 주로 파리를 거쳐 이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는 파리에 마련된 여러 보관소(dépôt)에 나누어 안치되었다. 당연하게도, 정책적 논의 또한 그 현장, 즉 파리의 상황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반적인 확인에 따르면 유물·유산 분류 및 보존 작업을 수행하는 데 파리와 그 외 지역 간에 어느 정도의 시차와 역량의 차이가 존재했음은 자명해 보인다.²⁾ 지난 8-9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특히 루브르박물관의 역사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같은 내용을 상세히 밝히려는 여러 집단적 시도들이 성과를 낸 바 있다.³⁾ 한편 비슷한 시기 툴루즈를 위시한 프랑스 각지에서의 유물·유산의 관리 및 박물관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여러 편의 연구 또한 빛을 보았는데, 이 중 일부는 18-19세기 유물과 유적의 제도적 편입 과정을 통해 지방 고유의 정체성이 ‘건설’된 과정에 주목했다.⁴⁾ 그러나, 동시대 박물관 사업에 관여한 특정 인물들 간의 상호 연관성에 특별히 초점을 둔 연구들을 제외하면, 파리와 한 지방에서 유물·유적의 박물관화 작업을 동일한 시간과 공간 축 위에 놓고 함께 살핀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상술했듯이 반달리즘의 혼란으로부터 역사적 기념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중심점은 파리에 기반을 둔 알렉상드르 르누아르(Alexandre Lenoir, 1761-1839)와 그의 프티조귀스탱 국립보관소(Dépôt national des Petits-Augustins)에 있었다.⁵⁾ 따라서 수도 밖의 여러 고장은 자연스레 어느 정도 주변적, 보조적이고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다.⁶⁾ 그러나 툴루즈의 경우는 조금 달랐다. 툴루즈에는 1750년부터 왕립회화조각건축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 peinture, sculpture et architecture de Toulouse)가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예술가를 양성하고 이론과 역사를 논할 역량이 마련되어있었으며, 지역의 고고학자와 호고가들은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해석

2) Édouard Pommier, “Naissance des musées de province,” *Les lieux de mémoire*, Pierre Nora ed., II. 2. (Paris: Gallimard, 1986), pp. 451-495.

3) Pommier, “Naissance des musées de province,” *op. cit.*; *Histoire du Louvre*, Geneviève Bresc-Bautier et Guillaume Fonkenell eds., 3 vols., (Paris: Fayard, 2016); Camille Doutremépuich, “L’appropriation du modèle du Louvre par les musées de province au tournant du XIXe siècle,” *Les cahiers de l’École du Louvre* 11(2017): 1-12.

4) *Toulouse et l’Antiquité retrouvée au XVIIIe siècle*, cat. exp. 8 juin-27 août 1989, Musée Saint-Raymond, Daniel Cazes ed. (Toulouse: Musée Saint-Raymond, Musée archéologique de la ville de Toulouse, 1989); François Guillet, *La naissance de la Normandie, Genèse et épanouissement d’une image régionale en France, 1750-1850*(Caen: Annales de Normandie, 2000); Jean Nayrolles, *L’invention de l’art roman à l’époque moderne, XVIIIe-XIXe siècles*(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5). 여기 열거한 저작들은 특히 중세 문화유산의 재발견과 ‘복원’을 지역의 문화 정체성의 탄생과 연관 짓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기도 한다.

5)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와 그의 박물관에 관해서는 우선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김한결, 「프랑스혁명기 역사의 시각적 내러티브 -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와 프랑스유물박물관(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 1795-1816)의 예 -」, *프랑스사 연구* 42(2020): 167-190; *Un musée révolutionnaire: le 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 d’Alexandre Lenoir*. Bresc-Bautier, Geneviève et Béatrice de Chancel-Bardelot eds. (Paris: Hazan, 2016).

6) 지방의 기념물들을 파괴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르누아르가 전국 곳곳에서 개입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지방에서 ‘구출’된 유물들은 파리의 보관소로 즉시 옮겨졌다.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⁷⁾ 또한 혁명기 툴루즈를 위시한 랑그독(Languedoc) 주(州)⁸⁾는 구체제 하에서 상당한 정치적 자율성을 누리고 있었다.⁹⁾ 특히, 굳건히 자리 잡은 시정관 체제(Capitoulat) 덕분에 툴루즈는 ‘지방의 수도’로서 중앙과 거의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는 자치체였으며, 툴루즈 내 왕실 제2 고등법원의 존재는 이러한 위상을 뒷받침했다.¹⁰⁾ 이에 덧붙여, 툴루즈는 프랑스 내 다른 도시에서보다 반달리즘이 더욱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1833년 샤를 드 몽탈랑베르(Charles de Montalembert, 1810-1870)는 “툴루즈는 내게 반달리즘의 수도로 보인다”고 썼을 정도다.¹¹⁾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파리 프랑스기념물박물관(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에 비견할 만한 툴루즈의 고대 유물박물관이 일찍이 설립되어 지역의 유산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데 앞장섰던 사실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만은 아닐 것이다.¹²⁾ 따라서 본 연구는 툴루즈의 경우에 주목하여 ‘국가유산’ 개념의 성립과 박물관화의 과정에서 수도와 지역의 협력 또는 경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피고자 한다.

II. ‘국가유산(Antiquités nationales)’과 지역의 문제

프랑스혁명은 과거 물질 유산에 대한 일련의 폭력 사태와 구체제의 역사를 공화국의 가치에 따라 재해석할 필요를 촉발했으며, 이는 오히려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그 가치를 드높이려는 지역 차원에서 여러 시도로 이어졌다. 또한 역사, 과거, 후세 등의 시간 개념과 관련한 새로운 의식이 자리 잡는 데도 기여했다. 다소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정서를 드러내는 저작들로 주로 각 지역의 축제, 위인과 기념할만한 역사적 사건들을 일종의 향토애의 대상으로 삼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¹³⁾ 이처럼 “역사를 기초로 한 ‘지역 자의식’의

7) *Nouvelles archives de l'art français*, 2ème série, tome II (Paris: Charavay Frères, 1880-81), p. 222.

8) 랑그독은 프랑스 남서부의 역사적 지명으로, 2015년 행정구역재편(Loi relative à la délimitation des régions, aux élections régionales et départementales et modifiant le calendrier électoral) 이후 옥시타니(Occitanie)로 편입되었다. 이는 대략 기존 행정구역상의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주에 해당한다.

9) Stephen Miller, *State and Societ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A Study of Political Power and Social Revolution in Languedoc*(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8); 김대보, 「17-18세기 랑그독(Languedoc)의 공공 토목공사 : 랑그독 신분회와 중앙집중화-분권화 논의」, *역사학연구* 88(2022): 259-286 참조.

10) 양희영, 「프랑스 혁명 초기 새로운 시정부의 수립: 툴루즈 시정(市政)의 연속과 단절」, *서양사론* 84, 0 (2005): 77-8.

11) Charles de Montalembert, “Du vandalisme en France, Lettre à Victor Hugo,” *Revue des deux Mondes* 16(1833): pp. 507-508. Cazes, “Le créateur du Musée des antiques de Toulouse: Alexandre Du Mége(1780-1862),” in *Un musée révolutionnaire, Le 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 d'Alexandre Lenoir*, Geneviève Bresc-Bautier et Béatrice de Chancel-Bardelot eds., cat. exp. Musée du Louvre, du 7 AVRIL AU 4 juillet 2016(Paris: Hazan, 2016), p. 320에서 재인용.

12) 본고에서 말하는 툴루즈박물관 또는 툴루즈 고대유물박물관은 루브르와 브장송미술관에 이어 프랑스 혁명기 세 번째로 건립된 공공박물관으로, 1795년 그 문을 열었다. 오늘날 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소장품은 오늘날 오귀스탱박물관(Musée des Augustins), 생레몽박물관(Musée Saint-Raymond), 폴뒤뤼박물관(Musée Paul Dupuy) 등으로 분산되어 유지되고 있다.

13) Julien Paillet, *Le Panthéon dijonnais, ou Hommage aux grands hommes de la Côte-d'Or*,

부활”은 옛 위인들의 새로운 숭배(culte)를 수반하는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으로 이어졌다.¹⁴⁾ 또 다른 유형의 출판물들은 각 지역의 역사적 경관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글과 그림의 형태로 기록한 것들이다. 이들은 유물, 유산과 기념물의 보존과 관련한 혁명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⁵⁾ 제헌의회 하 1790년부터 공식적으로 활동한 문화재 위원회(Commission des monuments)와 그 후속 기관인 임시예술위원회(Commission temporaire des arts)는 주인을 잃은 과거의 유물과 유적을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이들의 보존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임무를 띠었다. 일견 교양서적으로도 보이는 이들 저작과 이들 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동시대에 빛을 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작가 조제프 라발레(Joseph Lavallée, 1747-1816)와 지리학자와 삽화가 루이 브리옹 부자(Louis Brion de La Tour père, 1743-1803; Louis Brion de La Tour fils, 1763-1823)이 펴낸 『프랑스의 도(道)들로 떠난 여행(Voyage dans les départements de la France)』은 1792년 제1권의 출판 이후 수많은 이들에게 ‘향토애’를 자극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¹⁶⁾ 처음으로 ‘국가유산’과 ‘역사기념물(Monuments historiques)’을 공적 논의의 대상으로 제시한 오뱅루이 밀랭(Aubin-Louis Millin de Grandmaison, 1759-1818)은 1807년에서 1811년 사이 『프랑스의 남부 도(道)들로 떠난 여행(Voyage dans les départements du Midi de la France)』 네 권을 펴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¹⁷⁾ 정치가이자 고고학자이기도 했던 알렉상드르 드 라보르드(Alexandre de Laborde, 1773-1842)는 그 뒤를 이어 『연대기순으로 분류되고 역사적 사건들과 기예 연구의 관점에서 고려된 프랑스의 기념물들 (Les Monumens de la France classés chronologiquement et considérés sous le rapport des faits historiques et de l'étude des arts)』(1816, 1836)을 출간했다.

그 중에서도 학예사이자 사서로서, 그리고 여러 과학 분야의 작가, 언론인로서의 밀랭의 지칠 줄 모르는 집필 활동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프랑스의 고고학 및 미술사의 현황에 대한 귀중한 증언으로 남았다. 『국가 유산, 또는 프랑스 제국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역사에 이바지하기 위한 성당, 수도원, 성, 이제 국유지가 된 기타 장소에서 나온 무덤,

et des départements qui faisaient partie de la ci-devant Bourgogne (Dijon: Carion, 1805). *Le culte des grands hommes au XVIIIe siècle*, Actes du colloque, 3 au 5 octobre 1996(Nantes: Université de Nantes, 1998) 등 참조.

14) Guillet, *op. cit.*, p. 231.

15) 오뱅-루이 밀랭은 혁명 직후 ‘역사기념물’의 개념과 가치를 설파한 그의 저작 『국가 유산...』을 제헌 의회에서 발표했다. Aubin-Louis Millin, *Antiquités nationales ou Recueil de monumens pour servir à l'histoire générale et particulière de l'empire françois, tels que tombeaux, inscriptions, statues... : tirés des abbayes, monastères, châteaux et autres lieux devenus domaines nationaux*, 5 tomes(Paris: Drouhin, 1790-1799). 여기에 관한 매우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Cecilia Hurley, *Monuments for the people: Aubin Louis Millin's Antiquités Nationales*(Turnhout: Brepols, 2013)를 참조하기를 권한다.

16) Joseph Lavallée, Louis Brion père et fils, *Voyage dans les départements de la France, par une société d'artistes et de gens de lettres, enrichi de tableaux géographiques et d'estampes*, 14 vols. (Paris: Brion, 1792-94).

17) Millin, *Voyage dans les départements du midi de la France*, 4 tomes(Paris: Tourneisen, 1807-1811). 여기에 별도로 삽화집(atlas)이 1807년에 발매되었다.

비문, 조각상, 스테인드글라스, 프레스코 등과 같은 유물 모음집 *Antiquités nationales* ou *Recueil de monumens pour servir à l'histoire générale et particulière de l'empire françois, tels que tombeaux, inscriptions, statues, vitraux, fresques, etc. ; tirés des abbayes, monastères, châteaux et autres lieux devenus domaines nationaux*』은 지역 내 위치한 고대 유물이 독자에게 거리상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도 영 멀기만 한 것이 아님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했다.¹⁸⁾ 이로써 지역의 유물·유적은 ‘우리’의 것이 된다. 밀랭의 저작은 빙켈만(Johann Joachim Winckelmann, 1717-1768)과 신고전주의자들이 ‘고대(Antiquité)’라는 낱말에 부여했던 과거의 독점적인 역사적 함의를 지우고 이를 프랑스 자국의 것으로 가까이 당겨오는 데 일조했다.¹⁹⁾ 『국가 유산』의 취지서(Prospectus)는 이에 관한 저자의 의식을 잘 드러낸다. 그 첫 번째 단락에 따르면, “우리의 역사”는 곧 “진정한 시민들이 해내야 할 주요한 연구”다.²⁰⁾ 지역의 역사를 알아내는 것은 공화국의 시민이 덕성을 쌓고 드러내는 한 방법이다.

롤랑 레흐트(Roland Recht, 1941~)가 지적한 바 있듯이, 밀랭은 『국가 유산』 집필을 통해 과거와 현재 모두의 목격자를 자처하고자 했을 뿐 아니라 후대에 대한 책임 또한 의식하고 있었다.²¹⁾ 다시 말해, 이를 펴낼 당시 밀랭은 혁명 이후 고대 기념물(monuments antiques)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국가 역사의 재구성에 ‘유용(utile)’하다는 것을 천명하고자 했다. 요컨대 오늘 유산을 목격하고 설명하는 자의 책무는 이를 과거에 관한 역사적이고 예술적인 지식의 집합체(corpus)로서 후세에 전달하는 데 있는 셈이다.

한편 제도적 측면에서 이른바 중앙 아카데미와 지역 학회(société savante)들 간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1804년 설립된 켈트학아카데미(Académie celtique)를 들 수 있다. 고대뿐만 아니라 중세에 대한 관심 또한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는 1814년에 프랑스고고학회(Société des Antiquaires de France)로 이름을 바꾸었다. 여기에 전국의 호고가 내지 호고학자들이 집결했음은 물론이다. 호고학에 이어 고고학 연구를 통해 지역과 수도의 소통의 물꼬를 튼 이는 아르시스 드 코몽(Arcisse de Caumont, 1801-1873)이다. 그는 캉(Caen)에서 태어나 노르망디를 기반으로 활발한 유물·유적 조사 및 연구 작업을 벌였으며, 중세가 프랑스 역사에서 재평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24년 노르망디고고학회와 노르망디린네학회(Société linnéenne de Normandie)에 이어 그가 1834년에 설립한 전국 규모의 고고학회인 프랑스고고학회(Société française de l'archéologie)는 과거의 물질 유산에 대한 연구를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 간의 학술적 교류를 활성화했다.²²⁾

18) 위 각주 13 참조.

19) Emmanuelle Hénin, “Le modèle antique et la transformation de l'idée de patrimoine sous la Révolution française,” *Lumen* 26(2007): 159-189, 특히 161-174 참조.

20) Millin, *Antiquités nationales, op. cit.*, tome I, Prospectus, 2.

21) Roland Recht, in Hurley, *Monuments for the People: Aubin-Louis Millin's Antiquités nationales, op. cit.*, Preface, p. 15.

22) Nayrolles, *op. cit.*, “Le succès national d'Arcisse de Caumont et le rôle de la province.”

지방에서 출발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된 경우와 달리, 수도를 기반으로 한 기관에서 지방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금석학문예아카데미(Académie des inscriptions et des belles-lettres)를 비롯한 중앙의 여러 한림원들은 때마다 일종의 연구 과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그 결과를 논문 또는 보고서의 형태로 돌려받았다. 여기에 지방의 여러 문필가와 학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금석학문예아카데미가 1817년 내놓은 고대부터 16세기까지의 유물과 유적들을 조사하고 설명하여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지역사를 서술한다는 취지의 연구 과제에 툴루즈의 고고학자 알렉상드르 뒤 메주 역시 응답하였다.²³⁾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이처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난 학술적 생태계는 유물과 유산에 대한 고고학적 실천과 지역사 연구의 결합을 이끌어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물질문명과 그 유산에 관한 관심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러한 지적 배경은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특화된 새로운 공간인 박물관의 설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III. 박물관 계획의 ‘전국성’

루브르박물관과 베르사유박물관, 그리고 수도에 프랑스기념물박물관(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이 건립된 후, 다른 프랑스 도시들도 비슷한 계획을 세워 자신들의 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국민을 교육하기 위해 관내에 박물관을 짓고자 했다 [1]. 이들 박물관의 설립은 서로 완전히 동떨어진 계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도와 지방 사이에서 실제로 매우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두아르 포미에는 각 지역의 박물관 설치 작업이 각각 개별적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²⁴⁾ 프랑스 여러 도시에 ‘지역 박물관(musées de province)’이 설립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된 1801년 8월 31일(혁명력 9년 실월 13일) 공포된 샵탈령(Décret 또는 Arrêté Chaptal)은 그 전국적 성격을 증언한다.²⁵⁾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반포한 ‘법’이 여러 기점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까닭은 무엇일까? 기실 지역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은 이미 전부터 제기되었다[1]²⁶⁾. 18세기 중반부터 혁명기 사이, 루앙(Rouen)을 시작으로 여러 주요 도시에 무상 소묘아카데미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민간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러한 시설은 실용적이고 고전적인 미술 수업을 제공함으로써 견습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담당했다[2]. 그러나 지방의 이러한 교육 기관에는 ‘접근 가능한’ 예술 컬렉션이 부족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예술적 본보기가 될 작품을 전시하거나 보여줄 수가 없었다. 반면 파리의 회화조각아카데미는 진본과 석고본 갤러리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보관소나 갤러리들이 근접해 있었으므로, 18세기 말부터

pp. 231-41 참조.

23) Durliat, “Alexandre Du Mège ou les mythes archéologiques à Toulouse dans le premier tiers du XIXe siècle,” p. 34.

24) Pommier, “Naissance des musées de province,” p. 451.

25) 송기형, 「문화의 지방화를 위한 프랑스의 박물관정책에 대한 연구(I) - 지방박물관 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24(2008): 57.

26) Pommier, “Naissance des musées de province,” p. 451.

는 수도와 기타 도시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짓자는 요구가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수도의 공간 부족이었다. 파리, 특히 루브르에서 박물관 설립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을 때 이미 정부는 왕실, 교회, 그리고 망명 귀족에게서 압수한 미술품 컬렉션을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것들을 ‘전송’하는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²⁷⁾ 또, 총재정부부터 제정에 이르는 기간 해외에서 압수한 예술작품들이 파리에 도착하자 실용적이고 “도덕적”인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었다.²⁸⁾ 요컨대, 해외에서 약탈한 예술작품과 기념물을 한 도시, 그것도 한 박물관에 집중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것이다. 피에르-루이 뢰드레(Pierre-Louis Roederer, 1754-1835)는 압수된 예술작품의 분배의 문제에서 총재정부의 과실을 비난했다. “프랑스군이 얻은 전리품은 오직 파리에 집결되어야 하는가? 공화국의 또 다른 도시들에는 권리가 없는가?”²⁹⁾

중앙에 대한 각 지역의 ‘문화적 요구,’ 다시 말해 문화유산에 대한 각 지자체의 본질적인 각성은 유물·유산과 그 외 문화적 산물들의 분배 및 분산 원칙을 늦게나마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³⁰⁾ 그럼에도, 파리에서 다른 도(都)로 모든 작품을, 또는 아무 작품이나 이전할 수는 없었다. 즉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기념물박물관 및 베르사유박물관이 우선적으로 보유한 작품들을 제외한 나머지만 이전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므로, 그 운영이 여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³¹⁾ 그럼에도 샹탈령에 따른 정부의 시도는 완전한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이는 ‘학문 및 예술 기념물’의 보호, 전시를 통한 무상 및 공교육, 그리고 여가 생활 증진의 지원이라는 ‘전국적’ 목표에 대해 수도와 각 지자체 간에 합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정하기 때문이다.³²⁾ 또한 지역 박물관의 목표는 수도의 기관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애초에 이는 공교육의 터전, 지역 정체성의 방파제, 현지인과 외지인 모두를 위한 여가의 장소, 그리고 예술 및 문화유산의 전시장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수도의 중앙박물관은 ‘지역 정체성’에 더해 타국과 구별되는 ‘국민적’ 정체성까지도 수호한다는 이중의 의무를 진다.

샹탈법에 이은 지역 박물관 설립 운동에서 또 한 가지 특기할 것은 바로 (과거) 사적 재산의 국유화 또는 공유화라는 문제다. 수도의 박물관들은 과거 특권층의 압수된 재산과 해외 원정에 따라 국외에서 이전된 작품들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장고를 채울 수가 있었다. 후술할 툴루즈의 오귀스탱박물관 역시 툴루즈 왕립회화조각건축아카데미의 과거 컬렉션을 상당수 인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박물관이 한 도시의 역사를 증언하기

27) “Rapport du ministre de l’intérieur Chaptal au premier consul,” in Louis Clément de Ris, *Les musées de province, histoire et description*, seconde édition(Paris: Renouard, 1872), pp. 441-510.

28) David Gilks, “Attitudes to the displacement of cultural property in the war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Napoléon.” *The Historical Journal* 56/1(2013): 113-114.

29) Pommier, *L’art de la liberté. Doctrines et débat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Gallimard, 1991), pp. 407-408에서 재인용.

30) Pommier, “Naissance des musées de province,” p. 451.

31) *Ibid.*, p. 488.

32) *Ibid.*, p. 466.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이관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 외에도 새로운,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소장품들이 필요했다.

IV. ‘툴루즈의 르누아르,’ 알렉상드르 뒤 메주³³⁾

혁명 이후 반달리즘의 피해를 저지하고 ‘국가적 재산’으로서 유물·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서 펼쳐진 조사 및 분류 작업은 수도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했다.³⁴⁾ 파리의 프티조귀스탱보관소를 박물관으로 자리 잡게 하고 스스로 그 관리자(administrateur)이자 보호자(garde)를 자처했으며, 수많은 중세와 르네상스 조각품을 비롯한 유물·유산을 파리로 이전, 보존하고 도록 출판에도 힘썼던 알렉상드르 르누아르는 당시의 이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한편, 툴루즈를 중심으로 오트가론(Haute-Garonne)과 제르스(Gers) 도에서 가장 크게 활약하여 르누아르와 자주 비견되는 이는 알렉상드르 뒤 메주(Alexandre du Mège, 1780-1862)다. 그의 부모는 유럽 곳곳을 다니며 취미삼아 메달, 주화 등을 수집했다. 그 덕분에 뒤 메주는 어릴 적부터 고대 유물에 친숙했으며, 혁명의 여파 속에 사실상 독학으로 역사와 고고학 지식을 쌓고 나서는 툴루즈 지역에서의 프리메이슨(franc-maçonnerie) 활동을 통해 켈트와 이집트 유물 연구에 심취했다.³⁵⁾ 이후 그의 커리어 내내 자연스럽게 이어진 실제 고고학 탐구와 유물 연구 및 보존 활동은 결과적으로 “역사적 탐구가 신비적 계시와 결합”한 독특한 성격을 지녔다.³⁶⁾ 그는 1811년에는 툴루즈박물관의 사무국장으로서, 1831년 남프랑스고고학회(Société archéologique du Midi de la France)의 공동설립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오늘날 “툴루즈 최초의 고고학자”로 기억된다.³⁷⁾

‘현장’에서의 유적 조사의 중요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 프랑스혁명 직후 전국적 차원에서 대두하였다. 이는 1802년 뒤 메주가 툴루즈 인근 도시 생-베르트랑 드 코맹주(Saint-Bertrand de Comminges)의 고대 유산 현황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위원(commisnaire)으로서 첫 고고학적 임무를 맡게 되는 데 유익한 토양이 되었다.³⁸⁾ 그는 1810년에는 오트가론도의 고대 유물 조사관(inspecteur des antiquités de la Haute-Garonne)으로 임명되어 지역의 유물·유적 조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게 된다. 그가 일련의 현장 발굴 및 조사 작업에서 손에 넣은 유물들은 고스란히 툴루즈박물관으로 보내졌다. 이 시기 그가 오트가론, 타른, 오드, 제르와 바스피레네도 등지에서 수집한 유물들은 수레 마흔 대에 실어도 모자랄 양이었다고 한다.³⁹⁾ 이렇게 모인 유물과 유적의 잔해들

33) Daniel Cazes, “Alexandre Du Mège et le Musée des antiques de Toulouse,” *De las ánforas al museo. Estudios dedicados a Miguel Beltrán Lloris*, pp. 265-277 (<https://ifc.dpz.es/recursos/publicaciones/35/21/17cazes.pdf>, 2024년 4월 15일 검색)

34) 김민철·김한결, 「분류하고 저장하고 기억하기: 프랑스혁명과 아카이브」, *역사학보* 245(2020): 386-390 참조.

35) Marcel Durliat, “Alexandre Du Mège, ou les mythes archéologiques à Toulouse dans le premier tiers du XIX^e siècle,” *Revue de l’Art* 23(1974): 31.

36) *Ibid.*, p. 32.

37) *Ibid.*, p. 30.

38) *Ibid.*, pp. 33-4.

은 뒤 메주의 노력에 의해 오늘날 오귀스탱박물관에 해당하는 오귀스탱수도원(Couvent des Augustins de Toulouse, 1310년 건립)에 안치되었다.⁴⁰⁾

뒤 메주는 1815년 10월 25일 툴루즈의 시장에게 “지방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대 유물 갤러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다.⁴¹⁾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유물을 수용해야 했고, 또 이를 위해 기존의 건물을 크게 변형하고 용도 역시 바꾸어야 했다는 데 있다. 수집된 유물의 상당부분을 차지한 고대, 중세의 석관이나 장례 기념물 등은 각각 크기도 컸거니와, 이들을 역사적 시대구분에 따라 배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수도원 내부 공간의 재편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뒤 메주와 시 당국의 갈등이 따랐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파리에서도 기록된 바 있다. 르누아르는 프티조귀스탱보관소 즉 과거의 프티조귀스탱수도원 건물을 그가 구상한 ‘세기의 전진(marche des siècles)’을 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무대로 만들기 위해 수도원 내부 공간을 임의로 변경, 재건축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르누아르가 “역사를 만들기 위해 예술을 죽였다”고 비난했다.⁴²⁾ 초기 박물관 관리자들과 이처럼 다소 무모해보이는 행동은 혁명 이후 유물·유산 보호에 관해 이들이 느낀 시급성과 절박함에 기인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무엇보다도 역사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할 무대 공간처럼 인식되었던 것 역시도 이 시기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르누아르는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각 세기마다 별도의 전시실을 부여했다. 르누아르의 박물관이 1816년 결국 문을 닫은 후, 뒤 메주는 이것을 ‘고대유물,’ ‘중세,’ ‘근대’로 나누고 ‘갈로로만(monuments galois et romains) 기념물’ 관을 따로 설치하는 등 조금 더 유기적인 역사의 흐름을 반영한 전시 기획을 구상, 실천하였다.⁴³⁾ 다만 르누아르의 시대뿐만 아니라 뒤 메주의 시기에든 이러한 역사적 인식이 당시 다수에게 이해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다. 과거의 유물들을 토대로 역사를 구성한다는 취지는 프랑스에서 일찍이 18세기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개념화된 바 있으나, 이것이 박물관을 관장하는 시 운영의 틀에서 즉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 뒤 메주의 툴루즈박물관은 나름의 변형과 가공을 거쳤지만, 이를 협상하고 최종 허가하는 것은 언제나 시였다.⁴⁴⁾

파리의 프랑스기념물박물관과 툴루즈박물관은 그 중심인물들이 직접 작성한 도록에서도

39) Cazes, “Alexandre Du Mège,” p. 267.

40) « Toulouse : Notice des tableaux exposés dans le musée de Toulouse », in *Dictionnaire des musées ou Description des principaux musées d'Europe et de leurs collections de tableaux, de statues, de bas-reliefs et d'objets curieux* (Paris: Jacques-Paul Migne, 1855) col. 1301.

41) Cazes, “Alexandre Du Mège et le Musée des Antiques de Toulouse,” p. 268.

42) 이는 르누아르의 가장 강경한 반대자였던 카트르메르 드 캥시(Antoine Quatremère de Quincy, 1755-1849)의 말로 알려졌다. Alexandra Stara, *The Museum of French Monuments 1795-1816 Killing art to make history*(Farnham: Ashgate, 2013), pp. 1-2에서 재인용.

43) Cazes, “Alexandre Du Mège,” p. 268 참조. 그러나 뒤 메주가 1828년 작성한 박물관 소장품 목록을 보면 이것이 이집트, 켈트-로마(Celto-romain), 로마(romain) 등 문명권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되어 전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u Mège, *Notice des monumens antiques et des objets de sculpture moderne conservés dans le musée de Toulouse*(Toulouse: Douladoure, 1828), pp. 1-48 참조.

44) Cazes, *ibid.*

유사성을 보인다. 뒤 메주의 1835년 저작 『톨루즈 고대유물박물관 설명 Description du Musée des antiquités de Toulouse』은 툴루즈라는 도시가 지닌 유구한 역사와 그 ‘전국적’ 의미를 강조하며 시작된다.⁴⁵⁾ 그 역사적 스케치에 따르면 툴루즈는 로마와 갈리아의 발자취가 교차하는 한 주요한 지점이며, 이는 당시 프랑스에서 널리 유통되던 보편적 국사 서사에 입각한다.⁴⁶⁾ 그러나 뒤 메주의 역사 서술은 곧바로 ‘기념물(monument)’의 잔존 여부와 그 원인에 관한 분석으로 방향을 튼다.⁴⁷⁾ 이 고장에 한시적, 순차적으로 존재했던 서고트족, 메로베우스 왕조, 아키텐 왕국의 기념물은 뒤 메주의 시대까지 살아남지 못했다.⁴⁸⁾ 툴루즈가 “기념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은 11세기부터다. 앞서도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툴루즈의 박물관은 그 존재이유를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연속성을 증언한 다는 데서 찾았다. 고대와 근대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 따라서 박물관의 가장 큰 효용은 바로 중세의 재현에 있었다. 뒤 메주가 남긴 다음과 같은 구절은 당시 중세 유물이 처한 새로운 상황을 꿰뚫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구하시오. 중세의 기념물은 반달리즘과 국유지를 입수한 이들의 무지 덕분에 특별히 희귀해졌다오.”⁴⁹⁾ 역사에 대한 중세의 ‘정당한’ 편입은 크게 보아 프랑스혁명의 주요한 사상적 토대로서 역사의 개선가능성-또는 완벽 추구(perfectibilité)에 결과적으로 부합하는 유의미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V. 결론

통령정부 당시 프랑스 영토 내 샹탈링에 이어 설립된 적어도 열 다섯 곳의 박물관은 역사와 물질 유산에 관한 저마다의 쟁점들과 새로이 직면한 과제들을 안고 있었을 것이며, 급변하는 민심의 분위기와 기념물들의 이동 속에서 수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였을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그 가운데 툴루즈에서 일어난 박물관화 과정은 파리에서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여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이 두 도시에서 주요 역사 박물관이 형

45) Alexandre Du Mège, *Description du Musée des antiquités de Toulouse*(Toulouse: Imprimerie de Jean-Matthieu Douladoure, 1835), p. 5.

46) 마르셀 뒤를리아는 그가 역사가로서는 “형편없었다”고 판단했다. Durliat, *op. cit.*, p. 30.

47) 당시 기념물(monument)과 고대 유물(antiquités) 각각의 개념의 차이에 관해서는 Nakayama, *Genèse d'une conscience et d'une politique patrimoniales à Toulouse (1789-1913) de la "cité palladienne" à la "ville ros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Toulouse 2 Le Mirail, p. 13; 그리고 같은 저자의 “Alexandre Du Mège et l'enrichissement des collections archéologiques du Musée de Toulouse dans les premières décennies du XIXe siècle.” *Annales du Midi* 127/289(2015): 66에서 오늘날 해석상 유용할 만한 문제의식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다. 1806년 밀랭에 따르면 기념물이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매우 오래된 예술이나 문학 작품”을 뜻한다. Millin, *Dictionnaire des Beaux-Arts*, tome II(Paris: Crapelet, 1806), p. 479. Nakayama, *Genèse d'une conscience...*, p. 13 에서 재인용.

48) Du Mège. *op. cit.*, pp. 5-6.

49) Maurice Caillet, “Un rite maçonnique inédit à Toulouse et à Auch en 1806.” *Bulletin de la Société archéologique, historique, littéraire et scientifique du Gers* 50(1959): 40. “Mais surtout sauvez-les: les monuments du Moyen Âge deviennent, grâce au vandalisme révolutionnaire et à l'ignorance des acquéreurs des domaines nationaux, d'une rareté extraordinaire.”

성된 과정은 시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여기엔 알렉상드르 르 누아르와 알렉상드르 뒤 메주라는 두 선구자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들이 단순 애호가에서 고고학자로, 또 박물관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당시 유물·유적이 한 고장의 역사 쓰기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은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며, 역사의 새로운 인식을 매개로 한 당대의 지적 흐름을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각자의 박물관에서 보여준 ‘의도적’인 오류들마저도 유물과 유적의 전시가 역사의 한 ‘방법’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과정 초기 종사자들의 이른바 ‘나이브’함을 공통적으로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툴루즈가 구체제 하 누렸던 정치적·문화적 자율성은 혁명 후 지역사의 재구축 작업 안에서도 고유한 요소로 드러난다. 이처럼 툴루즈-파리의 사례는 과거 물질 유산의 보존을 통해 박물관이 도모한 ‘눈에 보이는 역사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도와 지역이 겪은 새로운 긴장과 상호 의존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 유물과 유산의 보존 작업에서 ‘국가적’ 또는 ‘전국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경계를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 한 국가의 역사를 전부 다루거나, 또는 한 지역의 역사만을 다루는 고대 유물 박물관은 애초에 가능한 것이었던가?

한편 밀랭의 저서를 중심으로 위에서 다룬 ‘국가유산’ 개념은 2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 다소간 다른 맥락에서 국내에서도 다시금 대두했다. 혁명기의 저자들은 일종의 기행문 형식을 빌린 유물·유적의 묘사를 통해 과거를 우리에게 거리상, 그리고 심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보이게 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과거 유산을 통해 역사를 이해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오늘날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이다. 그 책무는 시민 모두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적 사유와 실천이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는 본 연구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문제다. 따라서 혁명기 프랑스에서 ‘국가유산’ 및 여러 유사한 개념을 만들어 낸 여러 저서와 보고서들이 박물관 및 유물·유적의 행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후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연 지역사와 국사는 ‘국가’라는 한 틀 안에서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는 지, 그리고 지역의 유산의 가치는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생각해볼 만하다.

참고문헌

김대보. 「17-18세기 랑그독(Languedoc)의 공공 토목공사 : 랑그독 신분회와 중앙집중화-분권화 논의.」 역사학연구 88(2022): 259-286.

김민철·김한결. 「분류하고 저장하고 기억하기: 프랑스혁명과 아카이브.」 역사학보 245(2020): 373-407.

김한결. 「프랑스혁명기 역사의 시각적 내러티브 - 알렉상드르 르누아르와 프랑스유물박물관(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 1795-1816)의 예 -」 프랑스사 연구 42(2020): 167-190.

———. 「글로 쓴 역사, 그려진 역사 - 베르나르 드 몽포콩의 『프랑스 왕국의 유물』에 관하여 -」, 프랑스사 연구 44(2021): 183-208.

송기형. 「문화의 지방화를 위한 프랑스의 박물관정책에 대한 연구(I) - 지방박물관 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24(2008) : 51-73.

양희영. 「프랑스 혁명 초기 새로운 시정부의 수립: 툴루즈 시정(市政)의 연속과 단절.」 서양사론 84(2005): 75-107.

Bruand, Yves. “Les rapports Paris-Province: l’Hôtel du comte Jean Dubarry à Toulouse,” Le progrès des arts réunis 1763-1815 : Mythe culturel, des origines de la Révolution à la fin de l’Empire?.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d’histoire de l’art, Bordeaux-Toulouse, 22-26 mai 1989, Rabreau, Daniel et Bruno Toulon eds. Talence: Cercam, 1992. 281-89.

Caillet, Maurice. “Un rite maçonnique inédit à Toulouse et à Auch en 1806,” Bulletin de la Société archéologique, historique, littéraire et scientifique du Gers 50(1959), 25-57.

Cazes, Daniel. “Alexandre Du Mège et le Musée des antiques de Toulouse.” De las ánforas al museo. Estudios dedicados a Miguel Beltrán Lloris. Isidro Aguilera Aragón, Francisco Beltrán Lloris, Ma Jesús Dueñas Jiménez, Concepción Lomba Serrano, Juan Á. Paz Peralta eds. Zaragoza: Institución Fernando el Católico, 2015. 265-277 (<https://ifc.dpz.es/recursos/publicaciones/35/21/17cazes.pdf>, 2024년 4월 15일 검

책)

Clément de Ris, Louis. Les musées de province, histoire et description, seconde édition. Paris: Renouard, 1872.

Doutremépuich, Camille. "L'appropriation du modèle du Louvre par les musées de province au tournant du XIXe siècle." *Les cahiers de l'École du Louvre* 11(2017): 1-12.

Durliat, Marcel. "Alexandre Du Mège, ou les mythes archéologiques à Toulouse dans le premier tiers du XIXe siècle," *Revue de l'Art* 23(1974): 30-41.

Gilks, David. "Attitudes to the displacement of cultural property in the wars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Napoléon." *The Historical Journal* 56/1(2013): 113-143.

Guillet, François. *La naissance de la Normandie, Genèse et épanouissement d'une image régionale en France, 1750-1850*. Caen: Annales de Normandie, 2000.

Hénin, Emmanuelle. "Le modèle antique et la transformation de l'idée de patrimoine sous la Révolution française," *Lumen* 26(2007): 159-189.

Histoire du Louvre. Geneviève Bresc-Bautier et Guillaume Fonkenell eds., 3 vols., Paris: Fayard, 2016.

Laborde, Alexandre de. *Les monuments de la France, classés chronologiquement et considérés sous le rapport des faits historiques et de l'étude des arts*, Paris: Didot l'Aîné, 1816: 1836. 2 vols.

Miller, Stephen. *State and Society in Eighteenth-Century France. A Study of Political Power and Social Revolution in Languedoc*.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8.

Millin, Aubin-Louis. *Antiquités nationales ou Recueil de monumens pour servir à l'histoire générale et particulière de l'empire françois, tels que tombeaux, inscriptions, statues... : tirés des abbayes, monastères, châteaux et autres lieux*

devenus domaines nationaux. 5 tomes. Paris: Drouhin, 1790-1799.

———. Dictionnaire des Beaux-Arts, 3 tomes. Paris: Crapelet, 1806.

Nakayama, Shun. Genèse d'une conscience et d'une politique patrimoniales à Toulouse (1789-1913) de la "cité palladienne" à la "ville rose", Thèse de Doctorat. Université Toulouse 2 Le Mirail, 2014.

———. "Alexandre Du Mège et l'enrichissement des collections archéologiques du Musée de Toulouse dans les premières décennies du XIXe siècle." *Annales du Midi* 127/289(2015): 65-82.

Nayrolles, Jean. L'invention de l'art roman à l'époque moderne, XVIIIe-XIXe siècles.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5.

Nouvelles archives de l'art français, 2ème série, tome II (Paris: Charavay Frères, 1880-81)

Pommier, Édouard. "Naissance des musées de province," *Les lieux de mémoire*, Pierre Nora ed., II. 2. Paris: Gallimard, 1986, 451-495.

---. *L'art de la liberté. Doctrines et débats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Paris: Gallimard, 1991.

Stara, Alexandra. *The Museum of French Monuments 1795-1816 'Killing art to make history.'* Farnham: Ashgate, 2013.

Un musée révolutionnaire: le musée des monuments français d'Alexandre Lenoir. Bresc-Bautier, Geneviève et Béatrice de Chancel-Bardelot eds. Paris: Hazan, 2016.

「프랑스혁명 이후 툴루즈의 ‘박물관화’ 과정 : 본보기 또는 경쟁의 대상으로서의 수도」 토론문

김대보 (원광대학교)

이 발표문은 발표자가 서론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듯이 파리의 결정이 지방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알아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전국적(national) 수준의 박물관 계획과 지역적 맥락에서 그에 준하는 역동성이 상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프랑스혁명기의 파리-지방 관계에 대한 연구의 외연을 넓혀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파리와 지방의 상호작용이라는 큰 맥락을 고려하여 이 발표문에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위주로 일종의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토론문을 구성했다.

이 발표문에서 밝힌 주된 목적은 최근 프랑스혁명사 연구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 알린 부샤르(Aline Bouchard)가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 『파리의 텍스트와 지방의 현실 사이에서』(Entre textes parisiens et réalités locales)와 같이, 프랑스혁명기 지방사는 단순히 지방 자체의 맥락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혁명의 중심지인 파리와 지방 행정가들의 상호작용을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파리의 입법권력이 만든 법이 과연 지방에서 파리의 바람대로 엄격하게 집행되었을까? 행정가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더불어 지방의 현실에 대해 이들이 내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정보에 따라 파리가 정한 규정에 예외 사항이 추가되거나, 규정이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나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서 지방의 요구가 관철되기도 했다. 선출직이었고, 또 매년 정원의 절반이 선거를 통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의 행정가들은 지방 주민들의 입김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와 동시에 파리의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파리와 지방의 현실 사이에서 자신들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고, 또 내무부 장관과 법 집행의 엄격성을 두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법의 제정 이후 집행권력에서 결정하는 시행령(instructions)은 이렇게 파리와 지방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프랑스혁명 초기, 1790-92년에는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 및 행정질서 속에서 끝없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고, 행정적 연속성을 추구하여 민생과 관련된 영역의 공백을 피하기 위해 지방행정 당국과 내무부 장관 사이에는 수많은 편지가 오갔고, 그에 따라 법의 엄격한 집행이 유보되기도 했다.

이렇게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툴루즈 및 랑그독은 다른 여러 지방보다 더욱 독특한 경험을 했다. 발표문 2~3쪽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체제 하에서 랑그독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자율성을 프랑스혁명 초기에 행정의 일부 영역에서 유지하려고 했다. (사실 툴루즈 및 랑그독의 자율성 부분을 발표문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룬다면 발표문의 주제인 파리-지방 관계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율성은 ‘랑그독 신분회’(les Etats de Languedoc)가 중심이 되어 누릴 수 있었고, 그 원천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징수 및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었다. 즉, 정치·행정적 자율성은 재정적 자

울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랑그독 신분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또 이 자율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랑그독은 13세기에 알비 십자군을 거치면서 프랑스에 편입되었고(물론, 브르타뉴 등 랑그독보다 늦게 프랑스에 통합된 지방도 있었다). 지방 신분회 중 가장 먼저 구성되었는데(14세기), 그에 따라 랑그독 신분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이 지방에서 왕권과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왕권의 개입이 강화될 때, 끊임없이 왕권의 확대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거나 확대시키려고 했다. 실제로 루이13세 치세에 절대주의 논리가 발달하고 리슐리외가 각 지방에 대한 왕권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을 때, 랑그독은 몽모랑시 공작을 중심으로 강하게 저항했고, 반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 반란이 진압되면서 징벌적 조치, 즉 재정적 자율성의 축소로 이어졌지만, 이후 100여 년에 걸친 투쟁을 통해 재정적 자율성을 다시 확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를레트 파르주(Arlette Farge) 등 현대 역사가들은 이러한 랑그독에 대해 ‘절대왕정의 예외’라고 부른다.

특히, 랑그독 신분회가 이 자율성을 잘 드러낸 분야는 바로 공공 토목공사(travaux publics)이었고, 이 분야를 스스로 “랑그독의 장엄함”(la magnificence languedocienne)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따라서 프랑스혁명 초기에 모든 행정제도가 전복되고 새롭게 조직되는 과정에서, 과거 랑그독에 속했던 도(Haute-Garonne, Tarn, Ariège, Aude, Hérault, Gard, Lozère, Ardèche, Haute-Loire)⁵⁰에서는 구체제 당시부터 파리-베르사유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행정조직을 새 행정질서에 이식하려 했다. 그 결과 지방에서 독립적으로 양성된 기술진은 신체제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이 때 각 도에서 내세운 논리는 바로 ‘행정적 연속성’과 ‘지방에 대한 특수한 지식’이었다. 비록 프랑스혁명이 구체제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면서 지방권력을 재편하고 지방색 또는 지방의 자율성을 없애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질서가 유지되기도 했고 또 기존 지방의 유력자들이 다시 지방권력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지방의 특색들은 단번에 사라질 수 없었다.

이러한 지방(province, 또는 pays) 단위의 자율성은 물론 툴루즈 시가 가지는 자율성과 그 수준이 다르다. 랑그독 지방신분회(하위단계로 세네쇼세 회의, 디오세즈 회의가 있음)의 자율성은 앞서 언급했듯이 재정적 독립성에 기초한 것이지만, 툴루즈 시, 정확히는 툴루즈 시정관이 가지는 자율성은 우선 관직보유와 관련된 것이었다. 즉, 툴루즈 시정을 구성하는 8명의 시정관들 중 일부를 국왕이 직접 임명했지만, 18세기 들어 툴루즈 시는 국왕이 소유한 시정관직을 사들였고, 그로써 국왕의 영향력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조금이나마’라고 부연한 이유는 툴루즈가 고등법원(parlement)의 소재지였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지방에서 왕권을 대표하는 기관이었고, 툴루즈 시정관들은 고등법원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시정관들은 단순히 행정가들이 아니라 툴루즈 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형사상 사건의 재판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고등법원이 18세기에는 왕권

50) 1808년에 오토가론느 등 일부 도의 지역을 합해 Tarn-et-Garonne 도가 형성됨.

에 저항하는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기도 하지만, 형식적으로 국왕의 사법권을 지방에서 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렇더라도 툴루즈 고등법원은 랑그독 신분회 덕분에 다른 여러 고등법원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고등법원은 지속적으로 툴루즈 시정관들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고, 그럼으로써 툴루즈 시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18세기에 툴루즈는 시정관직을 왕으로부터 사들인 것을 제외하면 이전 시대에 가졌던 자율성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랑그독에도 왕권이 임명한 지방관인 지사(intendant)가 파견되었더라도 몽펠리에(Montpellier)에 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지대 랑그독(Bas-Languedoc)만 담당했고, 따라서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내륙 랑그독(Haut-Languedoc)은 지방신분회와 함께 고등법원이 행정 및 사법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툴루즈는 랑그독 내에서도 여러 권력(고등법원, 지방신분회, 툴루즈 시정, 왕권)이 충돌하는 공간이었고, 프랑스혁명으로 기존의 지방권력들 및 지방의 자체적인 행정 제도가 일소되고 전국에 획일적인 새로운 권력 체제가 구성이 되었더라도, (당시 선거의 특성상*) '구성원'의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많은 정치적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 공간이기도 했다. 그에 따라 지방의 이익을 당시의 특수한 시대적 맥락을 이용하여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율성을 '지방색'의 형태로 유지하려는 시도를 찾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자율성의 보존, 지방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의 강조, 그리고 국가적인 맥락의 정책 집행 사이에서 툴루즈 및 툴루즈를 중심으로 한 오프가론느 도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당대인들의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républicanisme), 그리고 국민(nation)과 국가의 형성이라는 18세기 말~19세기 초의 맥락이 발표문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의 특수성을 없애고 프랑스라는 국가의 소속으로서 모두가 같은 제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프랑스혁명 및 나폴레옹 시대였다. 그렇기에 국민의회(제헌의회)/입법의회/국민공회/500인위원회 등 당시의 입법기관 대표들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일지라도 스스로를 '국민의 대표'(représentant de la nation)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같은 이유로 기존의 행정 구역들을 모두 없애고 83개 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로마 공화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프랑스 공화국은 아직 그 기반이 허약했고, 수많은 반대자들을 억누르기 위한 정치·사회·문화적 작업이 줄곧 이어졌다.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를 문화 및 학문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은 특히 총재정부기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되었고, 박물관이라는 문화기관의 탄생과 발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결국 이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박물관의 국가적 맥락과 지역적 맥락이 어떻게 상호 협조하고 또 갈등했는지 여부를 더욱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왜 파리에서 국가적인 논리를 강조했는지, 그리고 지방은 왜 이러한 논리에 자신들만의 논리를 없으려고 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이 발표문에 이러한 당대의 역사적 맥락이 추가된다면 더욱 완성도가 높은 글이 될 것으로 본다.

독일제국에서 중앙과 지역의 형성 과정 1806-1866 :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형성과 작센의 지역화

박상욱 (경상국립대학교)

1. 서: 독일제국의 ‘중앙과 지역’ 1810-1871
2. 본: 경계 국에서 ‘중앙 대 지역’으로
 - 1) 프로이센과 작센
 - 2) 이웃국가에서 갈등관계로
 - 3) 수평적 갈등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로
 - 4) 관세정책을 통한 중앙 대 지역의 형성
3. 결: 관세동맹을 통한 중앙과 지역의 구도

1. 서: 독일제국의 ‘중앙과 지역’ 1810-1871

19세기는 민족국가로 상징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북독일연방(1866)과 독일제국(1871)이 탄생하면서 독일의 수많은 지역 국가들을 통합하는 시기였다. 따라서 19세기 초는 이미 독일지역에서 중앙과 지역(zentral und regional)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다. 특히 프로이센은 독일연방과 독일제국이라는 보편적인 민족국가의 탄생을 주도하였고, 반면 독일지역의 바이에른, 작센, 바덴, 뷔르템베르그 등의 수많은 지역 국가들은 중세 이후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들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 두 진영 사이의 간극이 단순한 차이를 넘어서 갈등과 불화가 노정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19세기 독일의 중앙과 지역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시기 독일의 영방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특성이 중앙과 지역으로 치환하여 연구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지역 중앙화에 근간이 되었던 관세동맹이나 관세정책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동시대부터 다수가 존재한다. 이 중 눈에 띄는 원사료는 관세동맹국의 통계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1842년에서 1859년의 기록이다.¹⁾ 또한 1848년-1849년 국민의회(Nationalversammlung)의원과 오스트리아 재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구스타프 회프켄(Johann Wilhelm Gustav Höfken)이 1842년에 작성한 독일 관세동맹의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 역시 원사료의 가치가 있다.²⁾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스 베르너 한(Hans-Werner Hahn)은 프로이센의 관점에서 관세동맹에 대한 논문은 당시 오스트리아

1) Central-Bureau des Zoll-Vereins (nach den amtlichen Mittheilungen der Zollvereins-Staaten),『Statistische Uebersichten über Waaren-Verkehr und Zoll-Ertrag im Deutschen Zoll-Vereine』, Berlin 1842.

2) Gustav Höfken, Der deutsche Zollverein in seiner Fortbildung. Cotta, Stuttgart und Tübingen, Berlin 1842.

와 독일의 관세동맹에 대한 관계를 프로이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³⁾ 또한 유르겐 앙겔로프(Jürgen Angelow)는 연방의 특징이 강한 독일연방에 대한 체계적인 집필을 했다.⁴⁾ 작센지역에서의 관세문제 및 관세동맹에 관한 연구는 원사료는 아니지만 원사료에 가까운 2차 사료가 1884년에 이미 출판되었다. 관세동맹의 간접세 문제를 주로 다룬 이 저서는 작센왕국의 1850년대 관세기관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독일 지역의 중앙과 지역을 프로이센과 작센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프로이센과 작센의 관세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간접적, 즉 프로이센의 주도로 이루어진 관세정책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지역으로서의 작센의 관점과 입장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주요 분석의 대상은 1806년에서 1871년의 시기에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관된 두 지역 간의 전쟁과 외교의 문제점, 지역 간의 동화정책 그리고 특히 관세문제가 분석의 대상이다. 관세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첨예한 경제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북독일 연방의 성립과 독일제국의 성립이전의 수많은 전쟁과 이러한 배경 하에서 특히 관세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프로이센과 작센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이 지역의 중앙과 지역의 형성과정에 있어서 관세를 둘러싼 문제와 결과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하여 프로이센이 이 시기에 ‘중앙화’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과 준비과정 그리고 작센은 하나의 영방국가에서 프로이센의 ‘지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프로이센은 관세정책을 어떻게 활용했을까? 이 관세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이러한 프로이센의 시도에 대하여 작센이라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으며, 그 결과는 독일 전체의 구도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19세기는 독일 미래의 운명을 결정했던 산업화가 급진전되었던 시기였다. 19세기 프로이센은 북독일연방의 중앙 그리고 독일제국의 중앙으로서 역사적 입지가 자명하다. 수많은 독일의 지역 중에 작센을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작센이 독일에서 산업화가 가장 진전되었던 지역으로서 산업화의 ‘메카’로 불리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 산업화라는 중요한 시대흐름은 두 개의 진영 프로이센과 작센을 중앙과 지방으로 설정하고 비교분석할 수 있는 분명하고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이센과 작센은 19세기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지리적 영토적 경계를 마주하면서 다양한 길항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국 간의 이러한 ‘과거의 관계’는 이후 19세기 후반의 ‘중앙과 지역’으로서의 양자의 관계에 불가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3) Hans-Werner Hahn, "Der Zollverein von 1834 aus preußischer Perspektive". Michael Gehler (ed.), 『Ungleiche Partner? Österreich und Deutschland in ihrer gegenseitigen Wahrnehmung: Historische Analysen und Vergleiche aus dem 19. und 20. Jahrhundert』, Studien Verlag, 2009, Hans-Werner Hahn, 『Geschichte des deutschen Zollvereins』, Göttingen, 1984.

4) Jürgen Angelow, Der Deutsche Bund. Wiss. Buchgesellschaft, Darmstadt 2003.

5) Das Indirecte Abgabenwesen Im Königreiche Sachsen Seit Der Begründung Des Deutschen Zollvereins. Denkschrift Der Königlich Sächsischen Zoll- Und Steuer-Direction Aus Anlaß Ihres Fünfzigjährigen Bestehens』, Berlin 1884.

주제의 시간적 범위인 1806년은 프로이센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 패배하며, 근본적인 국가 개혁에 들어간 시기이고, 1871년은 독일제국의 성립으로 프로이센이 독일의 실질적인 ‘중앙’으로 자리매김했던 시기이다.

2. 본: 경계 국가에서 ‘중앙 대 지역’으로

1) 프로이센과 작센

중세이후 존속되어왔던 유럽의 ‘중앙’이 신성로마 제국이라면, 주변의 수많은 제후국들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이러한 기존의 ‘중앙과 지역’의 관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19세기 중부유럽의 독일지역에서도 하나의 강력한 군주국이 다른 독일지역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중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이 군주국이 프로이센(Preussen)이다.

19세기까지 독일지역은 중세로부터 프로이센을 비롯하여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작센 등의 수많은 영방국가들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통일된 민족국가의 형성이 유럽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어졌다.

프로이센은 1807년 이후에 착수된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국내적으로는 1806년의 패전으로 이어진 국내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프랑스 패권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개혁을 통하여 프로이센에서는 1807년에 농노제가 폐지되었고, 1808년에 지방 자치제가 도입되었으며, 1810년에는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교육의 개혁 부분에서는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는 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1809년에 오늘날 그의 이름을 딴 최초의 베를린 대학을 설립했다.⁶⁾ 근대 개혁은 1813년 일반 징병제가 도입되면서 완료되었다.⁷⁾ 프로이센의 개혁은 개혁주체의 기득권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다양한 영역의 제도를 근대화하고, 이를 통하여 프로이센이 이전보다 강력한 국가로서 거듭났으며, 이후 북독일연방의 ‘중앙’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북독일 연방의 성립이후의 독일 지역의 중앙과 지역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중앙집권국가에서 중앙이 행정, 사법, 입법, 외교, 군사들의 모든 지위를 독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독일의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 바덴, 작센 등의 수많은 개별지역들이 주권국가와 유사한 독립된 기능과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은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시도했다. 특히 본 고의 ‘지역’으로 지정한 작센(Sachsen)지역은 프로이센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프로이센과의 전쟁 및 영토문제로 복잡다단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작센은 마르틴 루터와 토머스 뮌처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뿌리였고, 또한 독일 산업화의 요람이었으며, 초기 독일 노동운동의 중심지이자, 독일사민당(SPD)이 탄생 할 정도로 차별성과 특성화가 두드러졌던 지역이었다.⁸⁾ 작센 왕국은 1806년의 작센 선제후 영방국

6) Georg Kotowski, "Wilhelm von Humboldt und die deutsche Universität", 1981, p. 134.

7) Gordon A. Craig, "Stein, Scharnhorst und die Preußischen Reformen", Gordon A. Craig (eds.), Die preußisch-deutsche Armee 1640-1945. Staat im Staate. Düsseldorf 1960, p. 56-72.

(Kursachsen)으로부터 탄생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종전되었던 1918년까지 존재했다.⁹⁾ 작센의 선제후는 17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의 개신교 공국들의 두 번째로 중요한 영토이자 보호 세력이었다.¹⁰⁾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센의 지역적 특징은 작센이 독일 최초의 산업화 지역이었으며 독일에서 공업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있던 공업 선진 지역이었다는 점이다.¹¹⁾ 작센은 시민 세력(사민당) 결집의 본고장으로 알려질 정도로 독일 제국 의회에서 산업화 세력의 이익대변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동시에 생활 조건이 매우 열악한 산업 프롤레타리아가 일찍 등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작센은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노동운동과 사회민주당과 같은 급진적 정치세력의 요람이 되었다.

2) 이웃국가에서 갈등관계로

작센과 프로이센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기반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프로이센과 작센 지역인들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던 서로에 대한 ‘반감’이었다.¹²⁾ 작센과 프로이센은 오랫동안 국경을 마주하면서 역사적으로 쉘레지엔 전쟁(1740- 1763), 7년 전쟁(1756-1759), 예나 아우어슈타트 전쟁(1806)과 독일해방 전쟁(1813-14), 비인체제(1814-15)등으로 지속적인 적대관계를 가져왔다. 이 관계에서 승전국이었던 프로이센에 반해 작센은 예나 아우어슈타트 전쟁(1806)을 제외한 전쟁에서 열등한 입지에 서게 되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것은 예나 아우어슈타트 전쟁 이후 프로이센과 작센 연합군의 패배 그리고 이후 라이프치히에서 발생한 독일해방전쟁 및 그 처리 과정이었던 비인회의(1814/15)였다.

예나 아우어슈타트 전쟁은 프로이센과 작센이 군사협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벌어졌다. 프로이센이 1806년 프랑스에 전쟁을 선포했으며, 작센은 프로이센과의 군사동맹 체결직전이었으나 전쟁에 개입을 결정했다.¹³⁾ 작센이 이 전쟁의 개입을 결정 한 것은 이후 작센과 프로이센간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행사했으며, 역사가들에게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

8) Manfred Görtemaker, *Deutschland im 19. Jahrhundert*, Opladen, 1994, p. 199-206, Siegfried Gerlach, *Sachsen*, Stuttgart, 1993, p. 106-125, Otto Kaemmel, *Sächsische Geschichte*, Dresden 1999, p. 126-134.

9) 중부유럽의 선 제후국이었던 작센은 1806년 10월 프로이센과 동맹을 맺고 예나전투에서 나폴레옹에게 패배했다. 이후 10월 16일 중립을 선포하고, 12월 11일에는 작센왕국 (Königreich Sachsen)을 설립했다.

10) 작센은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선제후로 남아 있었고, 그 후 나폴레옹과의 동맹을 통해 작센의 왕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1807년(왕국이 된 지 1년 후)의 가장 큰 영토 확장을 했던 당시 작센의 인구는 201만 명이였다. 1806년부터 1815년까지는 독일의 ‘라인 연방’에 속했고, 1815년부터 1866년까지는 ‘독일 연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1867년부터 북독일연방의 일원이었으며, 1871년에서 1918년까지 하나의 지방(Land), 즉 연방국가(Bundesstaat)로서 독일 제국으로 편입되었다. Otto Kaemmel, *Ibid*, pp. 126-134.

11) 독일의 산업 발전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차별화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특히 철도 연결망, 항해 가능한 수로 연결망, 원자재, 노동 또는 자본의 가용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Manfred Goertemaker, *Ibid.*, p. 199-206.

12) Karsten Rudolph, "Das "rote Koenigreich": Die Saechsische Sozialdemokratie im wilhelmnschen Deutschland", Laessig/Karl Heinlich Pohl(eds.), *Sachsen im Kaiserreich, Politik,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m Umbruch*, Saesch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Dresden 1997, p. 92.

13)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Preußen und Sachsen - Szenen einer Nachbarschaft*. Sandstein Verlag, 2014, p 378

건이었다. 작센역사 분야의 전문가인 역사학자 칼하인츠 블라슈케(Karlheinz Blaschke)는 작센의 결정에 대해 “1806년 9월에 수행되었던 프로이센에 대한 군사적 합류결정은 거의 자살에 가까운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위였다. 이는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필요성 없이, 협정에 대한 강제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작센의 이해득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해졌기 때문이다”,¹⁴⁾라고 당시 작센의 책임자들에 대하여 비판했다.

이 전쟁은 결국 프로이센의 패배로 종식되면서, 프로이센은 영토를 부분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문제는 공동으로 군사동맹을 맺고 전쟁에 패배한 작센이 나폴레옹의 지원에 의해서 작센왕국이 되었고,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작센왕국은 프로이센의 영토 에어푸르트, 마그데부르크, 코트부스에 대한 합병을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작센은 프로이센의 소유였던 폴란드 점령지역 코트부스지역과 바르샤바 공국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했다. 작센은 프랑스의 지원 하에서 진행했었던 이러한 합병이 프로이센의 본토유지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프로이센 인에게는 작센의 이러한 행위가 “저속함”으로 비난되었다.¹⁵⁾ 왜냐하면 작센의 폴란드 지역 합병이 궁극적으로 프로이센에게는 견제와 부담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작센의 영토획득 행위와 프로이센의 ‘반감’은 이후 독일해방전쟁과 비인체제에서 작센에 대한 프로이센의 보복 심리로 재생되었다.

독일해방전쟁과 비인체제는 프로이센의 우위를 가능하게 했다. 내부개혁을 통하여 기반을 다진 프로이센은 이 독일해방전쟁에서 나폴레옹에 맞서 막대한 저력을 발휘하며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프로이센의 기병대 장군 블뤼허(Blücher)는 작센인을 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나폴레옹에 대항하는 민족 해방 투쟁이라는 민족 감정에 호소하는 선전 전략을 실행했다. 그 결과 일부 해당지역 작센 거주민의 공감과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작센 민병대 반군의 지원도 받았다.¹⁶⁾

작센은 라이프치히 전투(1813)에서 프랑스와 나폴레옹의 동맹으로 참가하여 패전했다. 패전 직후 작센에 프로이센 총독부가 설립되었으며, 작센의 프로이센 병합이 명백해졌다. ‘민족해방전쟁’이라는 프로이센의 구실이 무색하게 점령군의 행위와 공격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격성은 작센주민에게 이전의 ‘7년 전쟁’의 ‘부정적인 기억’으로 이어졌다. 작센의 왕이 포로로 잡히면서 작센의 독립에 대한 지지 여론을 증가시켰고, 친 프로이센 세력은 점점 더 지지를 잃었다.¹⁷⁾ 1813년 패전직후 작센 지역인 들에게 이미 “베를린에서 전쟁법(Kriegsrechte)을 통하여 작센의 병합이 결정되었다.”¹⁸⁾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로서 간주되었다.¹⁹⁾ 이는 작센 주민의 프로이센에 대한 감정을 더 악화시켰다.

14) Martin Hofbauer, Martin Rink, Die Völkerschlacht bei Leipzig: Verläufe, Folgen, Bedeutungen 1813-1913-2013. Berlin / Boston 2017, p 233.

15)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Ibid., p 379.

16) Marcus von Salisch, "Das Beispiel Sachsen. Militärreformen in deutschen Mittelstaaten". Karl-Heinz Lutz (eds.): Reform - Reorganisation - Transformation: zum Wandel in deutschen Streitkräften von den preußischen Heeresreformen bis zur Transformation der Bundeswehr. Oldenbourg, München 2010, p105.

17)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ibid., p. 415.

18) Wilhelm Mommsen, Geschichte des Abendlandes von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bis zur Gegenwart 1789 - 1945 (Weltgeschichte in Einzeldarstellungen), Göttingen 1951, p. 177.

19) 전쟁법은 국제법의 일부이다. 이는 서로 전쟁을 벌이는 모든 사람이 전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1815년 비인회의에서 작센은 패전국으로서 협상에 참관인으로만 참여했다. 프로이센과 러시아는 이미 합의된 대로 비인회의에서 작센과 점령국의 합병, 즉 작센왕국의 해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러시아와 프로이센을 견제하려던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다. 따라서 작센 문제와 폴란드 문제는 비인회의의 주요 갈등의 대상이었다.²⁰⁾ 작센이 궁극적으로 프로이센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작센을 오스트리아 제국과 프로이센 사이의 완충 장치로 유지하기를 원했던 오스트리아 외무 장관 메테르니히의 완고한 저항 때문이었다. 하나의 타협책으로 작센의 부분합병이 협상되었다. 작센 왕국의 부분합병은 1815년 5월 18일 프로이센과 작센 사이의 프레스부르크 조약이 체결되고 작센 왕이 이를 비준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해졌다. 그 결과 작센은 작센 영토의 58.2%, 총 20,841.86km²를 프로이센에게 합병되었다. 작센 인구의 39.4%인 총 767,441명의 작센 거주자가 프로이센의 거주자가 되었다.²¹⁾

이 전쟁에서의 패전과 부분합병은 프로이센과 작센 모두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작센은 북부 이웃과의 경쟁에서 패배했고 영토를 상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지원을 받은 왕국의 이미지에서 프로이센의 '지역'으로 전락했다. 분할되어 합병된 작센의 영토와 인구도 있었으나, 이외의 다른 작센지역, 즉 작센왕국은 그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센은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었고, 유럽의 외교구조상 약소국으로 간주되었다.²²⁾ 전쟁을 통해 라인 강을 따라 강력하게 확장된 프로이센도 원래의 브란덴부르크 성격을 잃었고, 그 이후 프로이센은 라인 강의 영향을 받은 성격을 갖게 되었다.²³⁾ 이를 통하여 영토 복합체로서의 브란덴부르크(Mark Brandenburg)는 해체되고, 대신 전체에서 하나의 브란덴부르크 지방(Brandenburg Province)로 자리매김했다.

비인회의에서 프로이센은 작센을 완전히 합병하기 위해서 이미 획득한 폴란드 지역을 대부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²⁴⁾ 프로이센 측은 이미 비인회의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작센을 완전히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이센이 작센 병합을 원했는지 정확한 원인에 대한 원자료나 문헌은 부족하지만, 당시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본다면, 그 이유를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이미 언급한 대로 작센은 프로이센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이었다. 19세기까지 작센의 인구증가, 무역수지, 공업화 등의 경제지

지를 정확히 명시하는 조약이다. 과거에는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일지 여부를 결정했다. 전쟁법은 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신을 방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방어 전쟁").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전쟁으로 위협하면 위협을 받는 국가는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예방 전쟁"이라고 한다. 전쟁은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침략전쟁과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Gerd Schneider / Christiane Toyka-Seid, Das junge Politik-Lexikon von www.hanisauland.de,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24.

20)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Ibid., p. 381.

21)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Ibid., p. 473.

22) 프로이센은 작센을 독립국으로 존속시키는 것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비인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센의 존속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작센은 합병지역과 존속지역으로 분단되었다.

23) Martin Hofbauer, Martin Rink (eds.), Die Völkerschlacht bei Leipzig: Verläufe, Folgen, Bedeutungen 1813-1913-2013. Berlin / Boston 2017, p. 469.

24) Michael Erbe, Revolutionäre Erschütterung und erneutes Gleichgewicht. Internationale Beziehungen 1785-1830. Paderborn 2004, p. 166.

표를 분석하여 보면, 작센이 중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역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하다.²⁵⁾ 작센의 인구 밀도는 1800년을 기준으로 평방킬로미터 당(pro Quadratkilometer) 50명으로 당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기록되었다.²⁶⁾ 당시 작센은 뷔르템베르크와 함께 독일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였으며, 국외는 네덜란드와 비슷했다. 1700년 경 네덜란드가 평방마일 당 2150, 작센이 2017이었지만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에는 평방 마일(Pro Quadratmeile) 당 주민이 919명에 불과했다. 또한 작센은 근대 초기부터 다른 제국 영토에 비해 고도로 발전된 2차 산업을 보유했다. 길드로 조직된 공예품 외에 주로 수출용으로 생산되는 제조업도 있었다. 특히 보그트란트(Vogtland)와 에르츠게비르게(Erzgebirge)지역의 직물생산에서 생산력의 발전을 통해 작센은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독일의 선도 국가가 되었다.²⁷⁾

작센의 주요 도시인 드레스덴과 무역 박람회 도시인 라이프치히는 1800년을 전후하여 현재까지도 여전히 독일에서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간주된다.²⁸⁾ 작센의 재무비서관 요한 고트프리트 흥어(Johann Gottfried Hunger)는 무역 박람회 기간 동안 상업 거래 규모를 1790년 작센 내 무역에서 1,200만 제국탈러(Reichstaler) 판매를 기록했다.²⁹⁾ 같은 해 독일지역 전체 연간 박람회 무역은 총 1,800만 제국탈러였다.³⁰⁾ 이 중 800 만 제국탈러는 작센 내 박람회 거래에서 나왔다. 작센 내 무역 거래 3건 중 2건이 라이프치히 무역 박람회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³¹⁾ 1800년에 작센은 모직 제품을 400,000 제국탈러(Reichstaler), 린넨을 3,500,000 제국탈러, 가공되지 않은 양모를 300,000 제국탈러, 금속제품(은, 주석 및 판금)을 1,500,000 제국탈러, 도자기를 163,000제국탈러 수출했다. 수입품으로는 면화 300,000 제국탈러, 실크, 아마 및 대마, 설탕, 커피, 차, 담배 308,000 제국탈러, 구리 200,000 제국탈러, 소금 160,000 제국탈러, 향신료 및 패션 제품이 있다. 전체적으로 1768개의 상품은 5,600,000 제국탈러 상품이 수입되었고, 6,350,000개의 제국탈러에 해당하는 상품이 수출되었으며, 약 750,000 제국탈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³²⁾

반면 프로이센은 인구 밀도와 경제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이센이 고도로 산업화된 작센을 프로이센의 경제 지역으로 병합계획을 확립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프로이센의 작센 합병 계획이 경제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몸젠도 역시 프로이

25) Ibid.

26) Karl Czok, August der Starke und Kursachsen, Leipzig 1987, p. 59.

27) Ibid.

28) Der Brockhaus in fünfzehn Bänden, Band acht, Rheda-Wiedenbrück 1998, p. 290.

29) Johann Gottfried Hunger, Denkwürdigkeiten zur Finanzgeschichte von Sachsen Oder neubearbeitete Geschichte der Abgaben in den Chursächsischen Staaten. Weygand, Leipzig 1790, p 187.

30) Ibid., p. 187. 190.

31) Johann Gottfried Hunger, Denkwürdigkeiten zur Finanzgeschichte von Sachsen Oder neubearbeitete Geschichte der Abgaben in den Chursächsischen Staaten. Weygand, Leipzig 1790, p 187.

32) Georg Hassel, Statistischer Umriß der sämtlichen Europäischen Staaten in Hinsicht ihrer Größe, Bevölkerung, Kulturverhältnisse, Handlung, Finanz- und Militärverfassung und ihrer außereuropäischen Besitzungen. Heft 2. Vieweg, Braunschweig 1805, p. 27

센의 작센 병합 계획에 대하여 "프로이센 정치인들은 프로이센 국토를 훌륭하게 마무리할 작센 전체를 획득할 것을 요구했다"³³⁾라는 말로 합병의 경제적인 요인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비독일인 인구부분의 큰 증가는 이전 폴란드 영토의 분할과정에서 발생했던 폴란드인의 붕괴로 인하여 프로이센 내부적으로 불안의 위험을 증가시켰던 것도 프로이센의 작센병합 원인으로 작용했다.³⁴⁾ 프로이센의 인종 다양성은 폴란드 영토의 분할점령으로 인해 더욱 증가했으며, 폴란드 인구는 프로이센에서 결코 소수가 아니었다. 폴란드 보다는 작센 병합에 대한 이유가 프로이센이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양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이외에도 이러한 작센의 경제적 입지와 폴란드 분할점령에 대한 불안요인이 프로이센이 폴란드 영토를 대부분 포기한 이유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종교적 차이에 있었다. 프로이센과 작센에는 개신교 기독교인이 다수 거주했다. 반면에 프로이센의 폴란드 분할점령지역의 주민들은 로마 가톨릭 신앙이 다수였다. 또한 또 다른 대안도 문제였다. "라인란트에 있는 이전 프랑스 지방에 대한 가능한 보상이 프로이센에게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 프랑스 점령지역은 프랑스 점령지역 또한 프로이센 중심부에서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주민들이 주로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았다."³⁵⁾ 따라서 프로이센 폴란드나 프랑스 분할점령지역보다는 작센의 분할점령에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센은 라인란트(Rhineland), 베스트팔렌(Westphalia)등의 다른 지역도 합병함으로써 독일 지역의 영토를 확장했다.³⁶⁾ 이를 통하여 프로이센은 실질적으로 독일의 '중앙'으로서의 입지를 갖추었고, 분할 합병된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 국가들은 '지역'으로 전락했다.

3) 수평적 갈등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로

1815년의 프로이센의 국경의 확장과 작센지역의 분할은 합병된 작센지역과 존속했던 작센왕국의 양 지역에서 오랫동안 프로이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반감과 불신, 지역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³⁷⁾

당시 합병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프로이센인', 즉 이전의 작센 주민들을 위해 소위 "강제 프로이센인"³⁸⁾이라는 용어가 유행했다. 이 용어는 합병지역의 작센 주민들이 프로이센

33) Wilhelm Mommsen, Geschichte des Abendlandes von der Französischen Revolution bis zur Gegenwart 1789 - 1945 (Weltgeschichte in Einzeldarstellungen), Göttingen 1951, p. 177.

34) Chronik der Deutschen, Gütersloh/München - Autorisierte Sonderausgabe für Reader's Digest Deutschland, Schweiz, Österreich 2009, p. 438.

35) Henry Kissinger, Das Gleichgewicht der Grossmächte: Metternich, Castlereagh und die Neuordnung Europas 1812 - 1822, 1986, p. 301.

36) 1866년 독일 전쟁 이후, 프로이센은 전쟁 반대국인 하노버 왕국, 나소 공국, 프랑크푸르트 자유시, 헤센, 그리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역을 라우엔 부르크와 완전히 합병했다. 헤센 대공국은 헤센 배후지를 양도해야 했고, 바이에른 왕국은 카울스도르프뿐만 아니라 오브와 게르스펠트 양도해야 했다.

37) Hans-Heinrich Gisevius, Zur Vorgeschichte des preußisch-sächsischen Eisenbahnkrieges: Verkehrspolitische Differenzen zwischen Preußen und Sachsen Im Deutschen Bund, Berlin 1971, p. 19.

38) 1815년에 엘베 강과 엘스터 강 사이의 땅은 새로운 프로이센 영토가 되었다. 이전 작센 사무소를

주인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강제로 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의 유행은 그들이 프로이센의 주민보다는 작센인으로 남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변화는 종교적 측면에서 감지되었는데, 본당 분리로 피해를 입은 목회자들도 이런 억울함을 전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작센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다. 도시에서도 프로이센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무역과 상업 분야에서 경제적 기회가 부족하고, 세금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예를 들어, 수공업자의 전통적인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관료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라우지츠와 같이 이전에 경제적으로 하나였던 지역은 이제 분할되어 상품 교환이 통제되는 관세국경이 형성되었으며, 그 결과 부가가치가 큰 상품과 재화를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대신 멀리서 수입해야 했다.³⁹⁾

프로이센은 합병된 지역들의 '새로운 시민'을 프로이센에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⁴⁰⁾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지역은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를 해체해야 했다. 따라서 합병지역에서 기존의 오래된 상황, 전통, 제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귀족사회의 낡은 구조는 파괴되었고, 해당지역의 상위집단들의 인사 구조와 그들의 전통적인 정치성향은 점차 소멸되었다.

이러한 프로이센으로의 통합과정은 작센지역에서 불만과 갈등으로 부상되었다. 작센지역에서는 하층 및 노동자 계층에도 프로이센에 대한 적대감이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이와 더불어 작센의 교육 시민계층 및 소시민 일부에도 '반(反) 프로이센' 정서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향했던 '대독일 민주주의' 소망이 좌절되었고, 이러한 이상실현에 대한 좌절감이 결국 이들을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계층국가 및 군사국가(kleindeutsch-preußischen Klassen- und Militärstaat)에 대항하는 반대세력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었다.⁴¹⁾ 이러한 프로이센에 대한 적대감은 작센의 노동운동을 '국제주의'라는 추상적인 이념을 지양하고, 오히려 실질적이고 급진적 노동운동으로 촉진하는 정치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시민적(브르조아적) 민주주의가 분열되었을 때, 많은 시민적 민주주의자들이 급진적 민주주의 노동자당이었던 사회민주당에 보다 쉽게 가입하게 만들었다. 독일에서 선구적인 산업지역이었던 작센에 존재했던 이러한 반 프로이센적 성향은 시민적(브르조아적) 민주주의와 급진 민주주의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다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유효한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이센에 대한 반감은 작센 국민당(Sächsische Volkspartei)이 '사회민주주의'를 당령으로 채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행사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이센에 대한

통합하여 프로이센 지역인 토르가우, 슈바이니츠 및 리벤베르다(프로이센 왕국 작센 지방의 메르제부르크 행정 구역)가 설립되었다. 그때부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프로이센의 필수'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Hans-Heinrich Gisevius, Ibid., p. 20.

39)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Ibid., p. 402

40) 1815년 5월부터 1816년 3월까지 양도된 모든 영토는 처음에는 "작센 공국"으로 통합되었으며, 계속해서 프로이센 작센 총독의 관리를 받았다. 국가 상징의 교환은 새로운 프로이센 통치자가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였다. 행정 재편의 일환으로 작센 영토는 새로 설립된 프로이센 지방 3개로 분할되었다. 이들은 작센 지방, 브란덴부르크 지방, 슐레지엔 지방이었다.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p 394

41) Laessig/Karl Heinrich Pohl (eds.), ibid., p. 92-93.

반감은 작센에서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에게 보다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당시 작센 사회민주당은 작센 내의 ‘보수적 특수주의자(konservativen Partikularisten)’들이 프로이센 독일의 권위주의적 국가세력과 타협하는 소위 "관계의 프로이센화(Verpreußung der Verhältnisse)"에 맞서 투쟁하고 있었다. 작센의 사회민주당은 친(親) 프로이센 경제 시민계층(경제 부르주아지)과 그 민족 자유당(nationalliberaler Partei)에 맞서는 최전선에 있었다.⁴²⁾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사이의 경계가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시기의 갑작스러운 합병은 작센지역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센과 합병 지역의 작센 관리들은 합병지역의 주민 집단들이 프로이센에 동화되도록 노력했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⁴³⁾

4) 관세정책을 통한 중앙 대 지역의 형성

프로이센의 관세정책과 오스트리아의 관세문제

프로이센의 작센 동화정책의 실패와 작센에서의 프로이센에 대한 ‘반감’은 프로이센과 대척점에 있던 오스트리아의 독일 연방정책에 호감과 공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 시기 작센의 외교정책은 지속적이고 완고하게 프로이센의 중앙화를 거부하며, 오스트리아라는 중앙으로 경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한 것이 프로이센의 관세정책이었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북독일 지역에 관세 없는 내부 시장의 형성이 시작했고, 이를 통한 영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외교정치가들에게 프로이센이 주창하는 독일 민족협회(Deutsche Nationalverein)의 동참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었다.

1790년 독일 전 지역은 ‘1800여개의 관세 국경’으로 나뉘어져 난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의 장애요인이었다. 이러한 독일 지역의 관세 국경의 난립은 1800년 이후의 라인 동맹(Rheinbund)의 성립과 남독일 국가, 예를 들어 바이에른(Bayern)과 뷔르템베르크(Wuerttemberg)에서 관세법이 제정되면서 관세가 통합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다.⁴⁴⁾ 그러나 1815년 나폴레옹의 몰락과 더불어 성립된 비인체제에서 이루어진 독일연방(Deutscher Bund)은 독일의 무역 및 운송

42) 그러나 이후 독일 노동운동의 강력한 뿌리였던 작센의 노동운동은 그 정치 강령(politischen Programmatik)의 하나의 이념에 대한 집착과 당 조직의 민족적 특성(nationale Charakter)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을 상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 민주적 특성도 한동안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작센지방 의회(sächsische Landtag)에는 사회민주당이 단 한 석도 없었지만, 1903년에는 작센의 사회민주당이 제국의회(Reichstagswahl) 선거구의 23석 중 22석을 차지했다.¹⁾ 당시 독일 제국의회의 전체 사회민주주의 의원 중 5분의 1은 독일 제국 인구의 8%에 불과한 작센 출신이었다. 이후 이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고 작센은 독일제국에서 ‘붉은 왕국 작센’으로 호칭되었다. 작센의 사회민주주의의 재강화는 무엇보다도 특히 산업화의 진전을 통하여 더욱 다른 독일의 지역과 차별화되며 발전되었다. Laessig/Karl Heinlich Pohl(eds.), *ibid.*, p. 94.

43) Frank Göse, Winfried Müller, Kurt Winkler, Anne-Katrin Ziesak (eds.), p. 408.

44) Hans-Ulrich Wehler, *Deutsche Gesellschaftsgeschichte. Band 1: Vom Feudalismus des Alten Reiches bis zur defensiven Modernisierung der Reformära 1700-1815.* München 1989, p. 380.

문제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데 실패하였다.⁴⁵⁾ 결과적으로 비인 체제와 독일연방은 독일의 관세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면서, 독일의 영내 무역을 저해하고,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또한 영국에 대한 대륙봉쇄령(Continental Blockade)이 해체됨에 따라 대륙의 독일 상인들은 영국의 산업과 직접적인 경쟁에 마주하게 되면서, 외부에 대한 독일 산업의 보호 및 독일 내부의 관세장벽 폐지가 보다 강력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다.⁴⁶⁾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관세정책의 모범으로써 등장한 것은 프로이센과 독일 남부지역의 근대화된 관세정책이었다. 1818년 이후 프로이센에서는 모든 프로이센 영내 관세장벽이 철폐되었다. 실질적으로 원산지과 목적지에 관계없이 프로이센 외부지역으로의 수입과 수출 그리고 경유의 경우에만 관세가 부과되었다. 프로이센의 관세정책은 단순했지만 매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이후 반세기 이상 독일 관세 자유화를 위한 관세정책의 모범적인 선례가 되었다.⁴⁷⁾

1818년 프로이센은 관세 제도를 현대화하고 나머지 국내 관세와 향로세를 대부분 폐지했으며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 및 통과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이센의 관세정책이 작센에게는 초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로이센의 이 새로운 수입관세 제정은 작센 공업 지역과 1815년 프로이센으로 합병되었던 농업 지역 사이의 이 새로운 수출입 부과세가 적용되었다.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납품했던 기존의 무역관행이 수출입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작센의 관세부담이 새롭게 부가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프로이센이 제정했던 통과관세였다.⁴⁸⁾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던 작센의 산업 입장에서는 북부 독일 시장에 접근과 비 프로이센 독일, 기타 유럽 국가 및 해외로의 운송이 중요했다. 이를 위해서 작센의 수출품들이 프로이센의 육로나 항구를 통과하여 수출되는 경로가 다수였다. 그러나 1815년의 영토변경이 결국은 이러한 통로를 프로이센의 육로나 수로 또는 항구를 통과하도록 형성되었다. 프로이센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효과일 뿐만이 아니라, 경제외적 영향력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경제외적 영향력은 이후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북독일 연맹의 건설로 연결 되었다. 반면 작센을 비롯한 수많은 독일의 지역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프로이센 통과 관세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통과관세로 특히 작센의 제조 상품 수출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또한 이 관세정책의 부작용은 작센의 라이프치히 박람회와 관련된 작센의 산업에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치히 박람회는 작센 산업의 젖줄과도 같은 주요한 기반이었다. 그러나 프로이센 관세법은 라이프치히 박람회보다 프로이센 박람회에서의 무역을 촉진하는 결

45) Hans-Werner Hahn: Geschichte des deutschen Zollvereins. Göttingen, 1984, p 15.

46) Wolfram Fischer, "Der deutsche Zollverein. Fallstudie einer Zollunion". Wolfram Fisch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im Zeitalter der Industrialisierung. Göttingen, 1972, p. 113; Thomas Nipperdey: Deutsche Geschichte 1800-1866. Bürgerwelt und starker Staat. München, 1998, p. 358.

47) Helmut Berding, "Die Reform des Zollwesens in Deutschland unter dem Einfluss der napoleonischen Herrschaft". Geschichte und Gesellschaft. Heft 4, 1980, p. 535.

48) Rainer Karlsch, Michael Schäfer, Wirtschaftsgeschichte Sachsens im Industriezeitalter. Edition Leipzig, Leipzig 2006, p. 56.

과를 가져왔다. 프로이센은 라이프치히 박람회로의 상업적인 여행 및 운송경로를 차단하거나 방해함으로써 프로이센의 나움 부르크 박람회를 홍보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이다. 작센지역의 내부 시장은 라이프치히 무역 박람회의 중요성은 물론 작센 산업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라이프치히 상인들의 생존을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 및 함부르크 수입업체와의 비밀 계약을 통한 불법 수출, 즉 밀수였다. 라이프치히 상인들은 프로이센으로의 밀수만을 위한 소위 앵글 박람회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라이프치히 상인들은 밀수 갱단을 이용해 국경을 넘어 가져오기가 더 쉬운 작은 화물에 도자기 공급 품을 포장함으로써 증가하는 국경 통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임시방편일 뿐 매출 감소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⁴⁹⁾ 또 다른 라이프치히 상인들의 생존 전략은 면세 판매 지역의 확대였다. 이를 위해 1828년 중부 독일 무역 협회(Mitteldeutschen Handelsverein)를 설립했다. 그러나 이 무역 협회는 작센 제품의 수출을 가능하게 했지만 운송 경로와 이를 개발할 수단이 부족했다. 프로이센의 통과관세에 대항하여 압박할 수 있는 대중교통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철도 시대에 프로이센 주 정부가 베를린-작센 철도 회사에 대한 사전 허가를 철회하면서 프로이센과 작센간의 갈등이 부가되기 시작했다.⁵⁰⁾ 그 후 작센과 프로이센의 수송 이익이 충돌하는 곳마다 철도 노선의 경로나 작센 국경의 연결 노선 승인을 놓고 수십 년 동안 투쟁이 벌어졌다. 프로이센-오스트리아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작센과 프로이센 간의 교통 정책 갈등과 경쟁도 증가했다. 그들은 라이프치히-뉘른베르크 철도, 괴를리츠-라이헨베르크 철도(자이덴베르크 경유 우회) 및 라우지츠 철도 갈등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작센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은 비인회의의 최종 법안이었던 제108조부터 제117조까지 국제 내륙 항해법 규정을 바탕으로 작센 수출 로를 확보하는 방법이었다. 프로이센과 작센을 포함한 10개의 경계 지역들은 운송을 더 쉽게 만들고 무역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규제해야 했다. 작센 무역계는 엘베 강의 항로개통을 통과관세의 부과 없이 작센 산업에 필수적인 항구와 해외 시장으로의 항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⁵¹⁾ 1819년 드레스덴에서 엘베 강과 접경한 주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엘베 강 선박 조직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다. 2년이 넘는 협상 끝에 관련자들은 합의에 이르렀고, 1821년 6월 23일 엘베 해운 법을 비준했으며, 그 이후로 작센의 물품 운송이 부담이 현격하게 감소되었다.⁵²⁾ 작센 입장에서는 이러한 협상의 타결은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부분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프로이센의 관세정책에 순응하고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이센의 관세정책은 독일지역을 압박하고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831년 헤세-카셀이 프로이센-헤센 관세동맹에 가입한 후 작센 정부도 기존의 유보조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833년 작센은 대부분의 다른 독일 주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독일 관세동맹에 가입했다.⁵³⁾

49) Hans-Heinrich Gisevius, *ibid.*, p. 46.

50) *Ibid.*, p. 284

51) *Ibid.*, p. 47.

52) Rainer Karlsch, Michael Schäfer *ibid.*, p. 57.

53) Rainer Karlsch, Michael Schäfer: *Wirtschaftsgeschichte Sachsens im Industriezeitalter.*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관세장벽 철폐 움직임이 대부분의 다른 독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남부 독일지역과 독일 대부분을 아우르는 관세동맹이 1833년 3월 22일에 조인되어 1834년부터 8년을 시효로 발효되었다.⁵⁴⁾ 관세동맹은 독일 영내의 지역 국가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면서, 결과적으로 독일 지역 영방국가 내부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⁵⁵⁾ 관세동맹(Deutscher Zollverein)으로 인한 영내의 실질적인 관세폐지는 수출지향적인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던 작센에게 독일영내에서 보다 넓은 시장 확보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1834년부터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던 작센지역으로 인구유입이 본격화되면서 1910년까지 인구수는 거의 3배로 증가했다.⁵⁶⁾ 이러한 대규모의 급속한 인구유입은 작센지역에서 노동력 확보로 이어지면서, 산업 및 경제의 발전에 주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⁵⁷⁾ 이는 작센 지역의 산업화가 독일에서 가장 급진전되는데 중요한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인 단면도 존재했다. 왜냐하면 완제품 제조와 같은 몇몇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 독일의 다른 지역 간에 특정한 상품의 수출입 부가세 및 통관세(예를 들어 프로이센의 통관세)와 다른 유럽 지역의 보호무역 관세는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특수한 분야에서는 보호관세가 없거나 또는 유럽 이외의 해외 지역에서 생존 로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동맹은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일부 작센 지역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부정적 단면도 존재했다.

프로이센의 독일 영내 주도권 확보와 작센의 지역화

1848년 혁명 동안 독일 지역의 군주들은 자유 민주주의자들의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특히 작센지역에는 프로이센 군대가 대규모로 배치됨으로써 작센의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다.⁵⁸⁾ 이 혁명 후 작센 외무장관이 된 프리드리히 페르디난트 폰 보이스트(Friedrich Ferdinand von Beust)시대에 작센의 외교 정책은 처음으로 다시 방향을 잡았다. 혁명 이후 몇 년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각각 경쟁적으로 독일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의 시기였다. 이러한 경쟁적 구도에서 작센은 오스트리아가 이끄는 독일 연방을 선택했다.⁵⁹⁾ 왜냐하면 1850년대와 1860년대 작센의 핵심적인 외교정책의 지향점

Edition Leipzig, Leipzig 2006, p. 58.

54) 독일 연방 국가 중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홀스타인, 메클렌부르크-스트렐리츠, 메클렌부르크-슈페린 은 관세동맹에 소속되지 않았다 Wolfram Fischer, *ibid.*, p. 120.

55) 수입의 상당 부분은 식민지 재화에 대한 부과금에서 나왔다. 1835 년에 이 식민지 관세는 모든 관세의 55%를 차지했다. : Hermann Aubin, Wolfgang Zorn (eds.), *Handbuch der deutschen Wirtschafts- und Sozialgeschichte*. 2 Bde. Stuttgart 1971-1976. p. 150.

56) *Ibid.*

57) 1차 대전 직전까지 작센 지역에서는 관세 기구들(명목상으로 제국의 입법 기관에 직권 하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센 지역 정부가 감독하고 있었다.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간접세와 철도 기관, 화물 선박기관, 금융기관, 재판과 법원 조직들, 그리고 노동자를 위한 조직들 역시 작센 지역 정부(작센왕국: Königreich Sachsen)가 직접 통제하고 있었다.

58) 5월 3일부터 9일까지 드레스덴 5월 봉기 반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프로이센군 2,200명이 참가했다. 5월 봉기의 군사적 진압 이후 작센에서는 "베우스트 시대(Beust Era)"로 알려진 반동 기간이 시작되었다.

59) Reiner Groß, *Geschichte Sachsens*. Edition Leipzig, Sonderausgabe der Sächsischen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Dresden/Leipzig 2012, p 229.

이 프로이센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지역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는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스트리아는 중규모 국가의 독립을 지원하는 연방제를 지향했던 반면, 프로이센의 독일 민족협회(Deutsche Nationalverein)는 소규모 독일 국가를 모아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계획에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작센과 기타 중소 국가는 연방주의를 선호했기 때문에 작센 정치는 계속해서 오스트리아를 자연스러운 동맹국으로 상정함으로써 프로이센의 반대쪽에 서게 되었다.⁶⁰⁾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독일연방을 관세 동맹으로 통합하는 데에 실패했다. 반면 프로이센은 관세 동맹을 서유럽 자유 무역 경로에 맞추기 위한 무역 협정을 프랑스와 체결함으로써 자국의 행동반경의 폭을 확장 할 수 있었다.⁶¹⁾ 오스트리아는 영내에서 자유 무역 과정을 시행할 수 없었고, 경쟁관계에 있던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 동맹에 전향적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곤란한 입지에 놓였다.

1862년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총리로 임명되었을 때,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보다는 중앙화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작센은 끝까지 오스트리아의 독일 연방을 지원했다. 이러한 작센의 외교적 노선과는 다르게 작센의 현실 경제적 관계는 이미 프로이센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작센의 모든 관련 정치, 경제 행위자들은 프로이센-프랑스 무역 조약의 수락에 동의한 상태였다. 프로이센은 1863년 프랑크푸르트 뷔르스텐타크에서 승인된 오스트리아의 연방 지향적 개혁계획을 반대했다. 1866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지역 연방제를 주장했을 때, 작센은 다시 한 번 확고히 오스트리아를 지원했다. 작센은 군비를 중단하고 프로이센 중심의 연방 정치 노선에 복종하라는 프로이센의 요구를 거부했다. 프로이센은 1866년 6월 15일 전쟁을 선포했고, 이로 인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간의 독일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이 전쟁에서 작센은 중립을 포기하고 오스트리아의 연방에 참가를 결정했다.⁶²⁾

작센은 6월 15일부터 프로이센에 의해 점령되었다. 1866년 10월 21일 프로이센과 작센 사이의 별도 평화 조약으로 작센은 프로이센이 이끄는 북독일 연방에 합류했다. 작센은 지역 국가로 독립을 유지했으나, 그 대가로 프로이센 중심의 구조에 편입되었다. 이로서 실질적인 중앙과 지역의 구도가 확립되었다.⁶³⁾ 작센 군은 연방군에 부분이 되었고, 프로이센에 전쟁 보상금 1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1867년 4월 17일 발효된 북독일연방 헌법은 핵심 권한을 연방정부에 이양했다. 경찰, 지역 사회, 학교, 대학 및 주 교회 법률만이 작센의 권한으로 남았다. 외교 정책, 관세, 우편, 전신, 철도 등이 연방으로 이관되었다. 전반적으로 작센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주권은 소멸되었다.⁶⁴⁾

60) Reiner Groß, *ibid.*, p. 231.

61) Winfried Müller, Martina Schattkowsky, *Zwischen Tradition und Modernität: König Johann von Sachsen 1801-1873*. Leipzig 2004, p 157.

62) Reiner Groß, *ibid.*, p. 232.

63) Reiner Groß, *ibid.*, p. 233.

64) 1867년 2월 7일에 체결된 프로이센과 작센 간의 군사 협약은 작센 군을 XII로 나누었다. (Royal Saxon) 육군 군단이 제국군 에 편입되어 전쟁 발생 시 프로이센 왕과 1871년 이후 독일 황제가 지휘권을 행사했다. 1870년부터 1871년까지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로이센군으로서 작센군은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Reiner Groß, *ibid.*, p 234.

3. 결:

19세기 초반 독일지역에서는 수많은 지역 국가가 존립했다. 이 지역 국가들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와는 다르게 중세 영방국가의 특성들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독일지역에서는 근대화의 과정이나 정책 그리고 성과는 다양하게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특히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어지는 19세기 초의 유럽의 전쟁은 독일 지역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나폴레옹에 의하여 촉발되었던 1806년의 예나 아우어슈타트 전쟁과 1813/14년의 독일해방전쟁은 프로이센과 작센에게 각각 승패가 반전되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전쟁들은 독일지역의 근대화에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전쟁은 또한 분석의 대상으로 잡은 두 개의 지역 국가 프로이센과 작센간의 갈등관계를 이전 보다 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전쟁을 통하여 이 두 개의 국가는 이웃국가의 관계에서 상호간의 영토와 주민을 점령하고 통치하는 적대관계로 악화되었으며, 이후의 중앙과 지역의 관계 형성에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이센은 1803년 전쟁에서 패배하고 절치부심하며 근대화 개혁을 추진했다. 프로이센의 근대화에는 다양한 개혁과 성과가 존재했다. 이 시기 작센은 독일 산업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고, 그 결과 비약적인 경제적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센의 경제적 성과는 프로이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충분한 근거였다. 특히 국경을 마주하는 양 국가의 산업화 및 경제적 관계는 이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 중에도 관세문제는 이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의 중요한 경제적 관계와 교류의 핵심사항이었다. 특히 관세문제는 독일 지역의 영방국가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역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했다.

이 중요한 관세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근대화 개혁을 성공리에 수행하고,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프로이센이었다.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쟁취한 전쟁의 승리는 관세문제의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영토의 확장과 주요 무역 로의 확보를 가져왔다. 1818년 관세장벽 철폐정책을 통하여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독일지역의 새로운 중앙으로서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었다. 통과관세를 무기화한 프로이센의 주도권 팽창은 작센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북독일 지역 국가들의 산업화와 경제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비록 프로이센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작센에게도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관세동맹의 참여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1834년의 관세동맹은 결과적으로 작센에게 빛과 그림자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교류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성과는 작센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긍정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그와 함께 수반된 부정적인 결과 또한 주로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부과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작센의 완제품 수출의 관세부담의 증가, 통과관세의 문제, 라이프치히 무역 박람회 문 제등에서 다양하게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수출 지향적 국가였던 작센은 프로이센의 관세정책을 통하여 경제규모가 증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었지만 프로이센 중심의 경제구조에 종속과 의존을 피할 수 없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했다. 독일 관세동맹이 창설된 이후 프로이센은 작센을 비롯한 중소 지역 국가의 경제적, 재정적 의존성을 이용하여 독일지역의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센의 외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오스트리아의 독일연방에서 찾으려 했다. 여기에는 작센이 프로이센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 그리고 프로이센의 지역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관계 속에서 작센의 오스트리아 독일연방에 대한 지지와 지원 결정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작센은 이미 프로이센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서 현실적으로 프로이센과의 경제적 협착관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862년 작센 정부가 드레스트너 저널을 통해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관세 동맹 문제는 순전히 상업 정책의 문제이며 독일 연방을 개혁하려는 작센의 노력과 모순되지 않는다."⁶⁵⁾고 이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는 원치 않았던 상황에 대한 자기합리화였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독일연방의 관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작센의 외교적 선택은 작센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추락시켜서 프로이센에 대한 작센의 의존과 종속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1866년 북독일연방(Norddeutscher Bund)의 성립은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정책 강화를 의미했다. 1867년 6월 관세동맹 회의의 결과 익년 1868년 1월 1일 발효되었던 새로운 관세계약은 이 북독일연방의 모든 국가들에게 처음으로 관세장벽이 완전히 철폐되었고, 연방세관위원회(Zoll-Bundesrat)와 세관의회(Zollparlament)라는 입법기관을 통하여 하나의 통합된 세관(Zollverein)을 형성하였다.⁶⁶⁾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868년 39개의 영역으로 나뉘어 있었던 독일 지역에서 관세는 모두 폐지되었다.

결과적으로 관세동맹이라는 사건은 프로이센에게 독일 지역의 중앙으로서 이후 1871년의 독일제국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또한 독일 영내의 다른 지역들에게 무역장벽을 해체하고 시장을 확대하였으며, 산업발전과 기업 활동을 위한 중요한 토대였다. 관세동맹은 독일 지역에 이전에 없었던 중앙으로서의 프로이센과 지역으로서 작센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확립하는 의미를 가진다.

65) Winfried Müller, Martina Schattkowsky: Zwischen Tradition und Modernität, König Johann von Sachsen 1801-1873. Leipzig 2004, p 158.

66) Wolfram Siemann, Gesellschaft im Aufbruch. Deutschland 1848-1871. Frankfurt 1990. p 289-291.

「독일제국에서 중앙과 지역의 형성 과정 1806-1866: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형성과 작센의 지역화」 토론문

정용숙(춘천교대)

한국의 서양사 연구자들에게 기회이며 동시에 난관이라고 할만한 것 중 하나는 한국 사회의 현재적 요구에 응하고 참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반복해서 이야기되지만 답은 없는 시대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이번 학술대회의 문제의식인 듯하고, 박상욱 선생님은 독일의 사례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십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은 19세기 중부유럽에서 독일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중심’으로 작센이 ‘지방’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탐구합니다. 토론자가 독일사 전공이기는 합니다만 연구 시기나 대상, 방법 모든 면에서 선생님의 분야에 대한 이해가 일천합니다. 이런 모자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신다면 몇 가지 논평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의 연구는 중세부터 근대까지 많게는 수백 개, 적을 때에도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로 존재했던 오늘날의 독일이 19세기에 프로이센 주도로 근대적 민족국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특히 작센의 사례를 이용해 ‘중앙’과 ‘지역’ 구도 형성 과정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추출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서문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이런 관점의 연구가 독일에서 거의 행해지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독일의 역사적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전통,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와 ‘지역’이 곧바로 ‘중심’과 ‘주변’으로 환원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출발한 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놀랍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독일에서 ‘지역사’(Landesgeschichte) 또는 ‘역사적 지방지’(Historische Landeskunde)가 역사학 하위분과로 출현한 것이 프로이센 주도 통일이 완료된 1870년대였고, 그 내용은 정치적으로 통합되지 않는 (국민국가 단위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지리적 단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Land’는 ‘중앙’에 종속되는 ‘지방’/‘지역’의 뉘앙스는 아니었다고 여겨집니다. 요컨대 프로이센 주도로 성립된 독일 국민국가에서 이외의 지역들이 ‘지방화’되었다는 논지 자체의 설득력이 살짝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제국 성립의 주도 세력인 프로이센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하위 배치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지방화’로 논할 수 있을지? 특히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측면에서 ‘수도’와 ‘지방’의 구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문의 3절과 4절은 작센이 프로이센과의 관계에서 대등한 영방국가에서 종속적 ‘지역’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특히 영토와 경제를 통해 보여주므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관세동맹이었다고 보고 계십니다. 1834년 관세동맹 설립은 독립된 영방국가들이 정치적 연방이나 연합을 창설하지 않고 완전한 경제 연합을 완성한 최초의 역사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것을 통해 프로이센이 향후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얻었음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관세동맹’의 독일어 단어 ‘졸페라인’(Zollverein)을 구글 검색하면 두 개의 결과가 뜹니다. 하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관세동맹, 또 하나는 2001년 세계유산 등재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연방주 에센시의 폐탄광 출페라인입니다. 그

소유주인 두이스부르크의 기업가 프란츠 하니엘은 1834년 이후 루르 지역에서 현대적인 탄광을 개척했고, 출페라인 탄광은 1847년 채광을 시작했습니다. 관세동맹 덕분에 석탄과 코크스를 초지역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이 소유한 탄광을 '관세동맹'으로 명명함으로써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관세동맹의 경제효과는 작센에서도 마찬가지로였던 것 같습니다. 초기의 저항을 포기하고 관세동맹 가입 후 작센의 산업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12쪽). 1848년 이후 작센의 딜레마는 경제적으로는 프로이센 지향(소독일), 정치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지향(대독일)이라는 부조화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관세동맹의 경제적 구속력이 대독일 지향보다 강했고, 프로이센은 스스로가 주도하는 통일만을 고집하였으므로(이것을 '중앙화'로 표현), 작센은 결국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제국에서 '지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지로 이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지방화'의 의미를 여쭙고 싶습니다. 작센이 독립적인 지위를 잃고 독일제국의 구성원이 되었고 그 주도권은 프로이센이 가졌으므로 작센은 '지방'이 되었다는 것이 라면, 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통찰에 관해 선생님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